

# 언론중재

2004년 가을호



2004년도 정기세미나

## ‘언론피해구제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과 발전 방향
- 기고논문 / 의견 면책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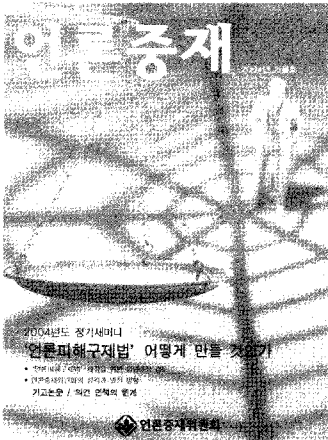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

2004. 가을

차 례



계간/2004년 가을호 • 제24권 • 제3호/통권92호  
 인쇄/2004년 9월 25일 • 발행/2004년 9월 30일  
 등록/1981년10월14일 등록번호/바-832  
 발행인/박영식 • 편집인/최정인  
 인쇄인/이병석  
 발행/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화:397-3114, 3000, 3100  
 FAX:397-3029, 3049, 3069  
 www.pac.or.kr  
 전자조판, 편집/태성인쇄기획  
 인쇄/(주)제이디씨텍  
 표지디자인/현춘수

<b>정기시비</b>	<b>‘언론폐해구제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b>
	5 • ‘언론폐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 양경승
	20 •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과 발전 방향 • 류지태
	35 • 종합토론
<b>기고/연재</b>	48 • 의견면책의 한계 ⑤ • 민성철
<b>연구논문</b>	62 • 프라이버시 침해와 출판 사전금지 • 한영학
<b>지방토론회</b>	72 • 인터넷 시대의 언론 영역과 언론중재 • 박기성
<b>언론보도와 인권</b>	80 • 피랍 보도와 인권권 : ‘김선일 씨 피살’ 과 언론보도 • 이진로
<b>위원칼럼</b>	86 • 튀는 기자가 없다 • 이종욱
<b>해외동향</b>	88
<b>자료</b>	94 • 언론중재신청사례 118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140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156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b>언론과</b>	160
<b>위원회소식</b>	166
<b>언론법서관련법</b>	168
<b>지상중재</b>	170 • On-Line 중재상담실

\* 본지는 집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당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04년도 정기세미나**

대 : 2004. 8. 26(목)~8. 27(금)

곳 : 대전 유성호텔

- 발표자 (2)
- 양경승 (변호사)
- 류지태 (고려대 법학대학 교수)

- 사회자 (1)
- 김상균 (서울 제3중재부장)

- 언론사 (22)
- 강덕원 (대전MBC 보도국 부장)
- 강무성 (SBS 콘텐츠운영팀 차장)
- 강상구 (KBS 법무관리부 부장)
- 김미영 (강원일보 사회부 차장)
- 김시현 (대전일보 사회부 차장)
- 김택한 (중앙일보 미디어전문기자)
- 김현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박래부 (한국일보 논설위원)
- 박병선 (매일신문 사회1부 차장)
- 박광욱 (MBC 법무저작권 부장)
- 방석준 (대전KBS 제작국장)
- 육삼무 (충청일보 대전취재본부장)
- 이만홍 (경기일보 사회부 부장)

- 이홍렬 (MTN 사회부 부장)
- 정진건 (매일경제 사회부 차장)
- 조명식 (문화일보 편집국 부국장)
- 조상진 (전북일보 사회부 부장)
- 진성호 (조선일보 미디어담당팀장)
- 차정인 (한국기자협회 기자)
- 최인진 (중부일보 사회부 부장)
- 최진훈 (MBC 법무저작권부)
- 허 엄 (동아일보 문화부 차장)

- 중재위원 (21)
- 박영식 (위원장)
- 이병훈 (부위원장)
- 송정제 (부위원장)
- 송영천 (서울 중재부장)
- 이종욱 (서울 중재위원)
- 최광일 (서울 중재위원)
- 노형기 (서울 중재위원)
- 신찬균 (서울 중재위원)
- 박봉간 (서울 중재위원)
- 김재덕 (서울 중재위원)

- 이용근 (대구 중재위원)
- 박충선 (대구 중재위원)
- 허광욱 (광주 중재위원)
- 이연수 (광주 중재위원)
- 한상곤 (대전 중재부장)
- 조균상 (대전 중재위원)
- 이문옥 (대전 중재위원)
- 김광욱 (경기 중재위원)
- 오두범 (충북 중재위원)
- 김영복 (전북 중재위원)
- 임경숙 (경남 중재위원)

- 국정홍보처 (1)
- 윤문환 (사회문화홍보과장)

- 사무처 (9)
- 임병국 (상당센터실장)
- 오정국 (전문위원)
- 김일경 (조사연구팀 팀장)
- 임득삼 (대전사무소 소장)
- 조남태 (조사연구팀 차장)
- 손장배 (기획팀 차장) 외 3인

<제1주제>

##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 I. 우리나라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개관

#### 1.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변천

가. 우리나라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점은 1980. 12. 31.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이다. 언론기본법은 정정보도청구권이라 하여 오늘날의 반론보도청구권을 도입하였는데, 그것은 종래 민법에서 인정되어온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과 그 목적과 지향점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반론보도청구권은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 만큼 완전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었고, 그 행사요건이 매우 간단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혁명적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언론기본법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를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하도록 하면서, 그 전치절차로서 언론중재절차를 도입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조정)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함으로써, 절차적인 면에서도 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언론피해를 신속·간편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반론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는 그 이후 언론의 책임영역에 있어 중추적 지위를 점하게 되었고, 다양한 중재사례와 판례의 집적, 언론계와 법조계의 활발한 연구를 통하여 체계를 잡아가고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인권의식과 책임언론에 대한 기대 욕구 역시 1980년대 후반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언론의 양적 성장과 함께 크게 고양되었는데, 초기 언론계의 저항과 불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

양 경 승  
변호사

☐ 송문관대 법학과 출  
☐ 환경부 사무관  
☐ 제3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민사지법,  
광주고법 판사

내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역설적으로, 반론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예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정정보도청구권, 사죄광고청구권 등의 행사로부터 언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한창 피어나기 시작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 언론으로서의 보다 책임이 무거운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로써 국민들의 불만을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6월 민주화를 거치면서 1987년 말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과 방송법 등이 새로 제정되었으나 반론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는 그대로 존치되었고, 오히려 언론사가 2회 연속 중재절차에 불출석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 추후보도청구권이 도입되는 등으로 강화되었다. 1991. 12. 말에는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서도 위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다가 1995. 12. 말 정기간행물법 등의 개정을 통해 위 제도에 상당한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전까지의 기간을 언론중재제도의 제1기로 구획지울 수 있겠다. 이 기간중에 대법원은, 위 '정정보도청구권'을 당해 보도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그와 대립되는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응답권으로 정의하고, 그 행사에 있어 보도내용의 허위성이나 언론사의 고의·과실,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제도의 본질을 정립하였고(대법원 1986. 1. 28. 85다카1973 판결), 헌법재판소는 위 제도가 언론의 자유에 배치되지 않는 합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5 결정) 위헌시비를 종식시켰다.

나. 그러나 언론기본법과 이를 대체한 정기간행물법 등의 언론피해구제 제도 관련 규정은 매우 빈

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절차적인 면에 있어 공히 그 폭이 좁아, 폭증하는 국민의 기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계속적으로 위 제도에 대한 개선과 법령의 정비가 법조계와 학계에서 논의되었는데, 피해구제의 폭을 넓히고 그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강화하고 불명료한 법령 규정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2년 여름 양삼승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관사에 의해 간단한 형태의 "반론보도청구등에관한법률(안)"이 제안되고, 이어서 1993. 3.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의뢰에 의해 박용상 서울고등법원 부장관사와 양삼승 부장관사에 의해 "언론침해의구제에관한법률(안)"이 성안되었으며, 1993. 11.에는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주최로 언론중재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같은 논의가 축적된 결과 1995. 12. 말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 등이 개정되었는데, ① 종래 그 실질이 반론보도청구권임에도 법령상 정정보도청구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이 있었던 것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용어를 정리하였고, ②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본래 의미의 정정보도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임의적 중재(조정)를 인정하였으며,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조정)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중재결정(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개편은 사실상 단일법 제정 논의에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개정이라는 다소 소극적인 방법으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기존의 반론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약간의 기능 강화를 꾀한 것으로 여러 면에서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이나나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폭증하는 국민적 수요에 어느 정도나마

정기간행물법상의 언론피해구제관련조항은  
국민의 기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부응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었다. 언론중재 신청 건수가 1989년에 100건을 넘어서고 1991년에는 200건을 넘어서더니, 1994년에는 500건을 훌쩍 넘어선 데 이어 1998년에는 600건을 넘어서는 등으로 그 양적 신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경쟁적으로 신규 언론사의 창립과 신문·잡지의 증면, 인터넷 언론이 등장하는 등 언론환경이 매우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하였는데, 기존의 제도로는 이 같은 증가된 수요와 변화된 환경에 도저히 대처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도입된 직권중재결정은 본질적인 제약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용한 장치로써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때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언론중재제도 제2기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중 1997. 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통해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이 도입되었고, 2000. 1.에는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등이 통합되어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되었으며, 2003. 5.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기존에 정기간행물법의 적용을 받던 통신을 새로 규율하게 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2. 현행 언론피해구제의 법적 장치

현행 우리나라 언론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법적 장치를 민사적인 것과 형사적인 것으로 나뉘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언론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법적 장치

	구 제 수 단	근 거 법 령	절 차/기 관	비 고
민 사 적 구 제 수 단	손해배상	민법(제750조, 제751조)	소송절차/법원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포함
	정정보도	민법(제764조)	중재절차/언론중재위원회 소송절차/법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는 임의적임
	반론보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 방송법, 뉴스통신 진흥에관한법률, 공직 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재절차/언론중재위원회 소송절차/법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는 필수적임
	사전금지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내지 310조)	소송절차/법원	
형 사 적 구 제 수 단	명예훼손죄, 모욕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소송절차/법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 II. 현행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 1.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 가. 관련 법령의 분산

손해배상은 민법, 반론보도청구는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 정정보도청구는 민법 등으로 구제수단에 따라 근거 법령이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 통신, 방송 등 매체별로 다시 분산되어 있는 데에다 공직선거법에도 특별규정이 있어 국민들이 쉽게 법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법 기술적으로도 관련 영역에 대하여는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규율이 바람직하나 법령의 분산다기화로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규율이 곤란한 실정이다. 과거 언론기본법은 매체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 입법을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피해구제 제도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었다. 또한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반론보도는 하나의 언론사고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구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하나의 중재절차와 소송절차 내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분쟁 당사자 쌍방의 만족도를 높이고, 분쟁의 유기적·통일적 해결을 통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꾀하여야 함에도, 현행과 같은 분리규율 방식에 의하여서는 종합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언론법제는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성질을 띠고 있는데, 피해구제 관련 규정이 다른 민감한 사안과 함께 같은 법령에 규정됨으로써, 보다 정치성이 열은 피해구제제도의 개편 역시 정치논쟁에 휘말려 시의적절한 개편을 피할 수 없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 나. 제도에 대한 충분한 규율 미흡

사전금지처분에 대하여는 그 유일한 근거법인 민사집행법에 언론피해 구제의 특수성을 감안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대부분 사항을 개별 법원의 판단과 재량에 의할 수밖에 없어 절차의 확실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다.

또한 선거 관련 보도의 구제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은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실효성 있는 구제를 기하기 어려우며, 그밖에도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간단하고, 아예 중요한 규정이 법령에 빠져 있는 등의 결함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

#### 다. 자유로운 언론활동과 존립기반에 대한 배려 부족

국민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언론의 양적 성장으로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폭발적 증가와 배상액의 무제한적인 상향이 예상되며, 이미 그러한 징후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언론사고는 피해규모가 크고 때로는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파급효과가 광범위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언론피해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에 못 이겨 언론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언론활동으로부터 파생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수준의 배상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그 존립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일정 수준에서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그 같은 안전장치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언론의 자율적 책임 확보를 위한 사내 옴부즈맨 제도와 같은 장치도 결여되어 있다.

### 현행 중재절차는 유용하나 전심절차의 한계상 종국적·일회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어

#### 라. 소송외 분쟁해결장치 및 전심절차로서의 언론중재절차의 기능 미흡

그 동안의 운용 결과 중재절차의 유용성이 증명되었지만, 전심절차의 한계상 모든 분쟁의 중재절차 내에서의 종국적·일회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음은 부득이하다.

그러나 증거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진상을 밝혀 주고 고유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할 경우 분쟁 해결의 가능성과 일회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가 단순히 소극적인 합의권유 기능에서 벗어나 분쟁 당사자들에게 실무력과 권위를 높여 줄 수 있을 때도, 현재 증거조사 기능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고유 의미의 중재제도도 도입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도 중재(조정)의 대상에서 전면적 또는 일정 부분 제외되어 있어 분쟁 해결의 일회성·신속성·간이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또한 중재절차는 공표적으로 소송의 전심절차 기능을 가지므로 소송절차와 유기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나, 현행법상으로는 직권중재결정이 있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만 하면 직권중재결정이 효력을 잃고 피해자가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하므로, 절차의 번잡과 제소기간의 보화로 피해구제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재절차의 효용을 떨어뜨리게 되는 결함이 있다.

#### 2.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이 같은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논의

가 진행되어 왔다. 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1998. 1. 필자에게 단일 법률안의 성안을 의뢰하여 필자가 전문 15개조의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안)”을 제출하였던바, 중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과 양삼승 판사(대법원장 비서실장)의 자문 및 5인 축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을 한 후 2002. 10. 국회와 각 정당에 배포하였다. 또 ② 2002. 2에는 제16대 국회의원 27인이 장기간행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③ 2004. 6에는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관련 시민단체가 “언론피해구제법(안)”을 성안하여 입법청원을 하였다.

그래서 현재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개편은 위 3가지 안을 토대로 논의되고 장차 국회의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론중재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안은 단일법제를 택한 반면 국회의 발의안은 기존 법률의 개정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안과 국회 발의안 모두 그 기본 취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안과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언론피해구제 제도 개선 논의가 급증한 것은, 언론의 불리적 기반이 확대되고 언론활동이 증대되면서 반사적으로 정치권과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 계층으로부터 언론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기존의 반론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만으로는 이를 수용하기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언론중재제도 밖의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 수단을 선택하여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현상이 빚어졌고, 손해배상의 경우 단일 사건 청구액이 20억, 50억, 70억, 심지어는 190억 원에 육박하는 등 가히 언론계는 전면전 상태에 몰입한 형국이 되었다.

### Ⅲ. 새로운 제도 개편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 1. 입법론의 방향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개편과 언론의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한껏 고양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제 우리는 냉정한 시각으로 가장 바람직한 지향점을 모색해야만 하게 되었다. 본 필자는 그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두고 싶다.

##### 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균형

우리가 언론의 책임을 논하는 출발점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출발점과 같은 곳에 자리한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자 제도적 보장으로서, 그 헌법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의 책임이라는 굴레가 과중하여 자칫 언론의 자유 위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되며, 양자의 조화로운 균형이야말로 민주사회의 이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① 언론사 내부의 자율적 규제장치를 최대한 모색하고, ② 가능하면 권리행사시간을 단축하여 언론이 과거 활동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도록 하며, ③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언론의 기본적 준립 토대를 보장하고, 한편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기금 내지는 공제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도모하는 장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기존 법 제도와의 조화·통일

우리의 언론환경 역시 사회적 산물이며 오랜 역사적 전통 위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개선되어

온 만큼, 언론법제만이 그 틀을 벗어나 특별한 모습을 갖출 수는 없으며, 기존의 법 제도와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관습 및 규범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급진적 개혁을 지향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반작용으로써 커다란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부과나 공인에 관하여 그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실정법적 특별한 규율 등은 다른 법 제도와의 균형과 판례이론의 발전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다. 피해구제 제도의 유기적 통합을 통한 피해구제의 통일성, 신속성, 편의성 도모

언론환경은 크게 자유영역과 책임영역으로 나뉘는 만큼 책임영역에 관한 피해구제 제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가 구제되도록 하여야 하고,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①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구제장치를 통합하여 단일법을 제정하고, ② 피해구제 제도의 조정자, 교육자, 감시자 기능을 맡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며, ③ 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와 법원의 소송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 요구된다.

#### 2. 입법론의 세부적 검토

##### 가. 관련 법률의 통합(단일법 제정)

언론피해구제 제도에 관하여 현재 산발적으로 나누어진 법률을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단일법으로 통합,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 사전금지청구권 등 제반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하나의 법률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단일법을 제정하면  
분쟁의 해결가능성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어

에 흡수하여 통일적·종합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이로써 여러 가지 피해구제 수단에 대한 소멸시효와 제소기간 등 절차를 간명하고 통일성 있게 규율할 수 있고, 유사한 구제수단 상호간의 유기적 연결과 상호변환을 통해 분쟁의 해결가능성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다만, 전문 언론기관으로서의 계속성과 어느 정도의 규모 및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하여 야기된 소규모 분쟁에 대하여는 통합법을 적용하기가 부적절하므로, 민법 규정을 존치하여 통합법의 규율 밖의 분쟁을 보충적으로 규율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언론 등을 비롯한 새로운 언론매체에 대하여도 이를 제도 내로 적극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 법률의 열거는, 현행과 같은 조문나 열식을 지양하고 절차의 흐름에 따라 각 분야별로 장, 절, 관으로 나누어 규율함으로써 법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법 운용의 편리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다.

중재위원회 안과 시민단체 안은 모두 단일법 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국회 발의안은 종래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 안은 중재위원회 안과 달리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 중재절차와 소송절차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장에 나열하고 있어 이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절차의 흐름이 유연하게 연결되지 못한 채 여러 규정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결함을 안고 있다.

나. 자유로운 언론활동의 보장

(1) 자율적 책임확보를 위한 사내 옴부즈맨의 설치

언론사고 역시 사전 검색을 통한 예방이 가장 효율적이며, 사전 검색 기능은 그 성질상 언론사의 자율적 기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언론사에 예속되지 않은 반독립적 기관으로서 사내 옴부즈맨을 필요적으로 둘 것이 요청된다.

사내 옴부즈맨은 언론현상과 법률제도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져야 하므로, 일정한 기간 판사, 검사, 변호사, 조교수 이상 법과대학 교수직에 있었거나 언론 현업에 종사한 자로 자격을 제한하되, 그 직무상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당해 언론사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옴부즈맨에 대한 언론사의 부당한 간섭과 변칙적인 운용을 막기 위하여 그 자격과 신분을 법률로써 규정함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언론사로 하여금 그 성명, 자격, 지위, 대우에 관한 사항 등을 중재위원회에 신고하게 하여 허위신고의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거나, 이를 대외에 공표토록 의무지우는 것도 고려할 만 한데,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초기에는 언론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응기간을 두기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일정기간 이를 유예함이 좋겠다. 언론사 외부로부터의 옴부즈맨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도 언론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동시 선언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자유없는 책임이란 굴종에 불과하고 책임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귀결된다. 우리 법제상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공히 헌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언론피해구제법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선언함으로써 양자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순해

배상이나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권 등이 이로부터 유래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재위원회 안 제3조와 제4조는 그같은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필자의 사건으로는, 언론의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한 경우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면제하는 형법상의 정당화 사유를 손해배상의 민사적 영역에까지 확장·확인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로써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외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언론활동으로 인하여 언론사나 언론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됨으로써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도내용이 비록 진실이 아닌 경우라도, 보도 당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적법성을 인정해온 판례를 입법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소 제기 전의 범죄사건 보도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여 범죄사건의 보도를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되, 유죄의 확정판결 전까지 당해 피의자와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여 처우하거나 그의 친족 또는 주변인에 관하여 불필요한 보도를 하지 않도록 금지규정을 두고, 향후 발전적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기능을 통해 이를 규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시민단체 안에는 인격권의 정의와 보장규정을 두고 그 위법성 조각사유와 사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규정까지 두고 있으나, 인격권은 그 영역이 매우 넓어 반드시 언론보도로 인해서만 전형적으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특히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등에 관한 부분은 언론보도와 거의 관련이 없으며 그 구제수단도 손해배상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인격권은 아직도 그 개념이 법리적으로 완

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언론피해구제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시기적으로도 빠른 감이 없지 않다.

또한 사자에 대한 인격권의 보호 문제는 실제로는 생존자의 그것에 영향을 미칠 때만이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생존자의 그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때에는 생존자의 명예권의 문제로서 보호대상이 된다. 그러나 오로지 사자의 법익을 위한 보호는 상정할 수 없으며, 사망 후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생존자의 법익과 연관되어 있는 때에는 언론피해구제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자의 인격권 보호 문제는 저작권법 등 관련 개별 법령의 대상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 현행 법제 하에서도 인격권은 보호대상이다.

### (3) 손해배상책임의 완화

#### (가) 소멸시효기간의 단축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당해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지만, 이를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너무 길어서 안정적인 언론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언론보도를 안 날부터 1월, 보도가 있는 날부터 6월로 이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제한하여도 오늘날 발달된 교통통신 환경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권익 구제에 과중한 제한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장차 이 같이 소멸시효를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시민단체 안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있어 현행 법규정보다 더 늘려 안 날로부터 3월 내로 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길고 언론사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

### 언론의 공적 기능을 감안, 손해배상의 범위를 적정한 한도 내로 제한해야

언론은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정정보도청구를 중재위원회의 필수적 전치절차에서 제외하고 있는 데에다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언론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 (나) 손해배상액의 제한 및 감경

불법행위책임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언론의 공적 기능을 감안하여 이를 적정한 한도 내로 제한·감경할 필요가 있다. 중재위원회 안은 시민단체 안과 달리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시민단체 안은 침해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실적인 전보배상에 일종의 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과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고 형사벌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따로 있을 뿐 아니라, 그 정상이 중한 경우 위료를 적정하게 가감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언론사는 그 사업의 성격상 자산 규모가 영세하여 언론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배상액 마련이 쉽지 않아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언론사는 피해자가 가압류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경우 언론활동이 사실상 정지되는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장래의 위협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같은 보험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 잠정적인 보완수단으로서 공제기금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언론사가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기금을 출연할 때에는 방송시설이나 인쇄시설 등 언론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여 언론사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위원회 안이나 시민단체 안에는 이 같은 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장기적 과제로서 연구·검토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 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상대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모두 원래의 보도내용을 부정하고 그와 배치, 반대되는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 보도내용을 수정, 원상회복을 꾀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엄격하게 구별하기보다는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래와 달리 정정보도를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반론보도와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바, 정정보도는 원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피해자가 증명한 때에 언론사의 진술로써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반론보도는 원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기 전에 피해자의 진술로써 이를 수정(반론)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 중재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양자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자유로이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 안은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있어 고의·과실 및 위법성 요건을 배제하면서도, 이를 종래와 같이 중재위원회의 임의적 전치 대상으로 존치하고 중재절차 내에서만 양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에다 양자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도 허용함으로써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상대적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언론사에게 이중의 부담을 과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안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그 대상을 단순히 사실적 주장이라고만 하고 있어 의견광고 등에 대하여도 허용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는 그 행사에 있어 엄격하게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완화 해석해온 관례의 태도를 반영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단체라도 사회 통념상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행사를 허용하도록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한바, 중재위원회 안과 시민단체 안 모두 이를 수용하고 있다.

## 라. 언론중재절차의 강화 및 소송절차의 개선

### (1) 중재위원의 선임과 지위 강화

현행법은 중재위원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의 우려대로 그에 따른 정치적·정파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대통령이 국가원수 자격에서 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와 언론계 인사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관 자격자는 위촉자인 대통령과의 균형

상 현재의 법원행정처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추천권자를 격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필자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작금 언론에 대한 정파간 이해대립이 심하므로 일정 비율은 국회의장이 추천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시민단체 안은 현행대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시민단체에서 각각 5분의 1씩 추천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는 그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 배분에도 문제가 있는 등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중재신청건수의 증가와 중재위원회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위원장의 상임화가 불가피하다. 중재위원회 안과 시민단체 안 모두 위원장의 상임화를 제시하고 있다. 중재위원과 중재위원회사무처 직원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무원의 지위에 선다. 그 권한행사가 국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고, 그 업무의 성질이 국가적 업무이기 때문이다. 중재위원의 제척과 기피는 현행대로 중재위원회의 자율에 맡겨도 충분하며 현재까지 그에 따른 문제는 전혀 없었다.

한편 시민단체 안은 중재위원회 외에 각종 시민단체 등에 언론피해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등록과 문화관광부 장관의 감독 및 비용보조 등을 통한 감시와 지원을 제안하고 있는 바, 이미 중재위원회에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마당에 자칫 부분별한 난립과 혼란으로 언론사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정부가 그 운영에 관여하고 국비를 보조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 (2) 중재 대상의 확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하나의 절차 내에서 한꺼

Copyright © 2012 b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일반화된 현실에서 이를 중재절차에서 다루는 것은 오히려 언론사 부담 줄여

변에 해결하기 위하여 반론보도청구는 물론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까지 모두 중재위원회의 중재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에서 분쟁 당사자간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피해자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받는 대신 손해배상청구를 양보함으로써 언론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상대적인 만큼 피해자는 그 청구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어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중재의 대상으로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촉발시켜 언론사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부여된 고유의 권리로서 막을 방법이 없고 이미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일반화된 현실에서는 차라리 이를 중재 대상에 포섭하여 중재절차를 통한 완충장치를 두는 것이 오히려 언론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 (3) 증거조사 기능의 강화

중재실무나 소송실무상 분쟁 당사자 사이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은 대개 원래의 보도내용과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문의 진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다.

물론 반론권의 경우에 원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는 상관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도내용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있는 언론사로서는 피해자의 반론보도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중재나 직권중재결정이 당사자에게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증거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보도내용의 사실관계 및 그 진실 여부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된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본질과 역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현행 징기간행물법 등은 이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시민단체 안도 마찬가지로) 중재실무상 이제까지는 현장검증이나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의 증거조사를 거의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중재기능의 활성화 및 합의율과 직권중재결정에 대한 수용률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 요청되며,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중재부는 당사자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증거조사에는 민사소송법에서와 같은 까다롭고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조사가 쉽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담당 부서에 전담 직원을 두어 출장조사, 사진촬영, 관계자 면담, 서류나 물건의 수집 등을 통해 조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그 직원을 중재기일에 배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중재부장은 신청이 접수되면 제1회 중재기일 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분쟁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들어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수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4) 고유 의미의 중재제도 도입

현행 법제도상의 언론중재는 법적 의미에서는 중재가 아닌 조정으로서 알선이나 권유와 같은 소극적 기능만을 갖고 있어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라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고유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당사자간에 분쟁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권위와 증거조사 기능을 가진 중재위원회의 판정에는 복종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그 실효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경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당사자 쌍방이 미리 중재결정을 받기로 합의하거나 중재절차 진행 중에 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을 받기로 동의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재위원회 안과 시민단체 안 모두 종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담보한 직권중재결정 제도만을 채택하고 있는바,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5) 중재절차와 소송절차의 연계 강화

##### (가) 조정 전치주의의 확대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 역시 중재절차 내로 흡수 통합하는 이상 이들에 대하여도 법원의 소송절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재위원회가 분쟁 해결의 1차적 전담기구가 되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의 절감 및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일단 이를 중재위원회의 중재 대상으로 편입하되 언론사의 적응기간을 두기 위하여 임의적 전치절차로 완화하고(그러나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제기함과 동시에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는 중재위원회에 분리해서 청구할 경우 절차가 각각 다르게 진행되는 불편을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정정보도의 경우에

는 반론보도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필요적 전치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시민단체 안은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정정보도청구 역시 임의적 전치로 하고 있는바, 그 문제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 (나) 직권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와 소송절차로의 이행

현행 정기간행물법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제기가 있으면 곧바로 직권중재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제18조 제7항 단서) 이는 문제가 있다. 당사자로서는 일단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긴 하였으나 나중에 태도가 변하여 당초의 직권중재결정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개정된 민사조정법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후 법원의 1심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의신청의 취하를 인정하여 직권중재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중재위원회 안은 이에 따라 1심판결 선고시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직권중재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안은 이의신청의 취하를 인정하면서도 이의신청과 동시에 직권중재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어 논리에 맞지 않고,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해결책이 없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그 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는 등으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그 판단을 중재위원회가 1차적 판단을 하더라도 다시 그 적법 여부를 둘러싸고 법원의 판단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차라리 애초부터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케 하여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에도 직권중재결정의 효력을 유지케 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중재위원회 안은 이를 채택하고 있다(다만

위원회가 분쟁해결의 1차적 전담기구가 되도록  
조정 전치주의를 확대해야

안 제26조 제4항에 이의신청이 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의견을 붙여 중재신청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28조 제1항의 각하를 이의신청기간 경과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각하로, 제26조 제1항의 재소기간 경과인 경우에는 소의 각하로 각각 나누어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 안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직권중재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별도의 소제기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하여 사건을 법원의 소송절차로 이행케 함으로써 중재절차의 실효성과 권리구제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중재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더라도 소송 구조상 행정소송 형식을 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원고, 언론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재위원회 안은 이를 채택하되 임의적 전치절차를 취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예외를 두고 있다. 반면에 시민단체 안은 종래의 규정에 따르고 있어 무분별한 이의신청에 따른 폐단과 신청인의 불이익을 시정하기 어렵다.

(다) 소송 대상의 확대

현행법상 중재기일에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불출석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에 기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 중재신청의 취하나 합의 간주의 불이익을 면하게 되는데, 중재부가 기일 속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 불복방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중재위원회 안과 시민단체 안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소송절차로 수

렴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즉시항고로서 하도록 하되, 그 기간은 중재부의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 받은 때로부터 단기간으로 제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현재 사전금지처분에 대한 규율은 없거나 마찬가지로 실정이므로, 언론보도로 인하여 현저히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등 제반 사정을 비교 형량하여 당해 표현물의 제작, 반포, 판매, 방송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처분의 방법으로는 표현물의 봉인이나 집행관에게의 점유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집행의 신속을 위하여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야간과 일요일 등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위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으나, 시민단체 안은 그 대상을 언론보도 이외에 널리 인격권의 침해 일반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집행에 관한 세부적 절차에 소홀한 면이 있다.

(라) 소송절차의 개선

1) 관할의 조정

현행과 같이 모든 소송을 제1심부터 거치게 하는 경우 시간과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고 전심절차인 중재절차의 효용을 반감시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중재위원회의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진 직권중재결정, 기일속행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등에 대하여는 1심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곧바로 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 등을 제기 하도록 하여 심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심리절차의 통합

현행법상으로는 반론보도청구소송은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손해배상청구나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병합하여 한꺼번에 제소하거나 심리할 수 없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의 적정한 해결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모든 절차를 본안소송절차로 통합하여 한꺼번에 병합하여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소송절차의 진행중에도 이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허용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와 같이 소송절차를 통합하는 경우에도,

- ① 각각의 특성에 따라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는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써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게 하고, ②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사건 접수 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며, ③ 필요한 경우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만을 손해배상청구와 분리하여 일부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④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붙이며(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⑤ 상소 또는 재심의 제기, 상소추완신청이 있더라도 강제집행의 정지를 배제하고, ⑥ 소 제기시나 소송절차중에도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처분절차와 마찬가지로의 신속한 구제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위원회 안은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채택하고 있으나(다만 현행법과 달리 상소심에서 피해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보도 비용의 반환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다). 시민단체 안은 종래대로 가처분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소송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병합이나 청구의 변경이 불가능한 문제를

안고 있다.

## (6) 시정권고 기능의 강화

종래 시정권고에 대하여는 당해 언론사에 대한 권고적 효력에 그치게 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통계수치를 공표하여 언론사간 비교를 통한 간접적 제재에 국한하였다.

그러나 시정권고를 통한 일반 예방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당해 언론사로 하여금 그 시정권고 받은 내용을 공표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정도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아닌 만큼 위헌적 요소는 전혀 없다(방송법 제100조 참조).

중재위원회 안이나 시민단체 안 모두 종래대로 권고적 효력을 갖는 데 그치도록 하고 중재위원회가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된다.

## 마. 선거관련 보도의 시정청구제도 개편

선거에 임하여서는 후보자나 정강, 정책 등에 대한 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당해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시간이 촉박하고, 그 파급효과를 신속히 차단할 기회를 피해자에게 주어야 하는 특성상 통상의 구제절차와 다른 예외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상 손해배상청구나 정정보도청구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통상의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권에 한하여 특칙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 특칙으로서는, ① 중재신청 기간을 보다 단기간으로 하고, ② 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며, ③ 피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 단 1회만 불출석한 경우에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언론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해야

의제하며, ④ 중재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언론사로 하여금 곧 반론보도를 하게 하되, 그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과 견해를 동시에 표명할 수 있게 하고, ⑤ 직권중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의 제재를 과하는 것 등이 가능할 것이다. 중재위원회 안과 시민단체 안 공히 이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다만 시민단체 안은 직권중재결정에 대하여 과태료가 아닌 간접강제의 방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직권중재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의신청권이 봉쇄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그와 같은 특칙을 새로 마련하였는데, 방송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직권 또는 후보자 등의 신청에 의해 선거관련 보도를 조사·심의하여 제재조치나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방송·게재를 명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선거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방송사나 언론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케 하고, 위 각 위원회는 48시간 내에 각하·기각·인용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용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중재(조정) 절차 대신 막바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준사법적 판단에 대하여 강제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이의신청이나 법원에의 소송제기절차도 마련함이 없이 곧바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한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가 방송위원회로 분리되어 있어 구제절차의 통일성과 중재절차의 효용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4를 삭제하여 이 역시 중재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제2주제〉

##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과 발전 방향

### I. 머리말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족한지도 20여년이 흘러가고 있다. 시대의 과제나 수요는 언제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는 법이며, 이러한 조직은 다시 새롭게 나타나는 과제나 수요에 부응하여 스스로 진화해가야 한다. 과거에 집착한 조직운영은 퇴보를 의미할 뿐이다.

필자는 20여년전 대학원 석사논문을 우연히 '국민의 알권리'로 작성하면서 언론법제와 인연을 맺었고, 당시에는 말도 많았던 언론기본법이나 또한 새로운 개념이었던 반론권, 언론중재의 개념을 처음 접하였다. 그렇게 생소하였던 언론중재의 개념은 그후 20여년을 지나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른바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첨병으로서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친근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들, 대표적으로 청와대까지 언론중재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도의 변화에서 우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현재 위상을 현실감 있게 느끼게 된다.

그러나 현재 언론기관에 닥치고 있는 변화는 과거 20여년의 역사를 회고하는 데 안주하지만은 못하게 하고 있다. 언론피해로 인한 권리구제가 중점이었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언론매체의 숫적 증가, 언론수단의 다양화, 인터넷매체의 등장, 통신과의 융합문제로 인한 정보제공수단의 변화, 그리고 아직도 그 끝을 모르는 새로운 과학기술적 변화의 준비 등의 상황변화로 인하여 언론기관은 변신을 요구받기에 충분한 외부적 환경조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외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을 반영하도록 구속하는 측면을 갖는다.

류 지 태

고려대 법대 교수

○ 고려대 법과대학 및 대학원 술·법학 석사  
 ○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 법과대학 조(법학 박사)  
 ○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보도로 인한 피해의 사법적 구제는  
독자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난 뒤에야  
해결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하여져왔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언론중재위원회 세미나 주제들을 일별하면, 주로 사후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위강화 내지는 내실화. 그리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법률개정 등이 주된 목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방향은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새로운 언론환경에 직면하여 얼마나 진화하여 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제기한 논의는 유감스럽게도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른 유사한 위원회 등이 자신의 발전방향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이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하여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존 주제를 반복하여 읊조리는 데 만족하고 있는지는 않았는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2004년에도 10여년 전의 논의를 다시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본 발표를 부탁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필자는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언론법학자가 아닌 다른 분야인 행정법학자가 바라본 언론중재위원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중점으로 하고자 한다. 따라서 언론중재의 실상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고, 언론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우도 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위원회 조직의 다른 행정영역과의 비교논의라는 논제에 중점을 두고 작성된 글이라고 이해하여 준다면 어느 정도 의미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II. 현상진단

한 기관의 발전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순서적으로 빠질 수 없는 내용은 아마도 현상진단일 것이다.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여야만 이를 근거로 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가 비교적 단단하게 될 것이다. 다행히 이 부문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년간 매우 풍족하게 축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옮겨보면 아마도 아래와 같을 것이다.

### 1.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위

#### (1) 대안적 분쟁해결수단

언론중재위원회의 가장 큰 특성은 기관의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분쟁해결은 국가에 의한 사법적 해결수단이 정형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측면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정형적인 제도는 정적인 제도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강점을 갖는 것이지만, 시간과 비용 그리고 형식이 경직되어 있어 동적인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단점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최근의 추세는 이러한 사법적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을 마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형식성을 유연화하는 분쟁해결수단을 마련하여, 굳이 사법적 분쟁해결수단을 거치지 않고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sup>1)</sup>

언론분야의 법적 분쟁, 이른바 언론분쟁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의한 최종적인 해결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는 독자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지고 난 뒤에야, 사법부에 의하여 해결되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필요가 다른 영역에서 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굳이 대립적인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여 다투기 보다는 주요한 쟁점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해결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점이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가 차지하는 역할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같은 것으로 보인다: "... 언론중재제도는 우리 법제에 독특한 제도로써 화해에 의한 명예로운 해결의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부에 직업법관 이외에 언론계의 실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언론과 피해자 쌍방을 이해시키는 데 유리하고,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재판절차 이전 단계에서 질충할 기회를 갖게 되는 이점이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재판절차상의 비용과 번잡함을 피하여 피해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sup>2)</sup>..."

## (2) 자율적 분쟁해결수단

분쟁해결의 결과는 법적 안정성만을 고려한다면 강제적인 것이 더 효율적이다. 즉 사법부의 판결내용에 의하여 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분쟁해결을 위

하여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공권력에 의한 해결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승복하기 전까지는 판결이 발령되어도 계속하여 분쟁의 소지를 남겨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스스로 분쟁종식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해결방법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확실한 해결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의 대부분은 이러한 입장에서 자율적 성격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보아 이러한 자율적인 해결수단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 언론의 역기능 해결수단

논의를 규율대상에 한정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실제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개별 위원회들은 위원회의 규율대상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며, 규율영역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된 기능을 다하고 있다. 예컨대 인권, 부패방지, 침해적 행정작용 등의 영역에서 개별 위원회들은 실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도 언론활동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그동안 역점을 두어왔다. 언론은 지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운 의견형성, 여론형성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이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언론만이 여론형성의 주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갖는 이러한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언론기관은 여론형성적 기관으로서의 순기능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취재나 보도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한 피해발생이라는 역기능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명예훼손

1)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줄고, 행정법상 분쟁조정제도의 비교연구, 고려법학 제12호, 2004 참조.

2) 헌법재판소 1999. 7. 22. 96헌바19 전원재판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제18조제5항위헌소원】

위원회는 언론활동으로 인한 역기능을  
시정함으로써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손의 문제나, (의도적이든 비도적이든) 잘못된 내용의 보도문제는 언론을 불신하는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고, 최근에는 정권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언론의 순기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그 역기능의 문제는 해소되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에 언론이 갖는 역기능을 해결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사후적이라도 잘못된 언론활동을 시정함으로써 언론본연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된다.

2. 그간의 활동상황

한 기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활동상황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가 긍정적일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상황은 여러가지 연구성과<sup>3)</sup> 및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들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창립초기보다 그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왔고,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를 보강하였으며, 중립적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택을 모색하여 많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구용역에 의한 설문조사의 결과도 이용자들이 대체로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sup>4)</sup>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인들은 언론분쟁해결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도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1 : 20여년 동안의 언론중재신청처리현황><sup>5)</sup>

( )은 실질적인 피해구제건수

(1981. 3. 31. ~ 2003. 12. 31.)

구 분 연 도	신 청 건 수	처 리 결 과							실질적 피 해 구제율
		합 의	중 재 결 정 동 의 이 의 계 속	중재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1981	44	9		12(5)	1	2	20(2)		
1982	50	19		19(5)		2	10(4)		
1983	71	21		22(7)	1	1	26(8)		
1984	54	12		29(8)	3		10(5)		
1985	59	12		28(5)	4		15(7)		
1986	49	14		10(2)	1		24(11)		
1987	47	10		9(4)	1		27(2)		
1988	55	16		12(5)		1	26(13)		
1989	121	29		35(10)		6	51(21)		
1990	159	42		43(10)	1	2	71(40)		

3) 대표적으로, 2003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연구, 2003.언론중재위원회.

4) 2003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연구, 54면이하 참조.

5)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참고.

연도	구분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실질적 피해 구제율	
		합 의	중 재 결 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동 의	이 의	계 속					
1991	220	52				48(9)	3	1	116(43)	
1992	381	81				79(12)	19		202(107)	
1993	423	132				96(16)	8	2	185(84)	
1994	541	162				127(10)	7		245(128)	
1995	528	111				150(25)	26	3	238(124)	
1996	556	129	2	7(1)		169(21)	9	1	239(137)	
1997	490	161	10	5(1)		79(13)	8	4	223(108)	
1998	602	226	14	10(2)		97(8)	5		250(106)	
1999	641	244	11	18(2)		102(16)	24	5	237(92)	
2000	607	198	10	15(2)		66(10)	14	2	302(156)	
2001	659	229	6	23(3)		132(27)	18	2	249(133)	
2002	511	182	18	17(3)		62(9)	8	1	223(101)	
2003	724	287	15	15(1)		101(11)	27	3	276(158)	
계	7,592 100.0%	2,378 31.3%	86 1.1%	110(15) 1.4%		1,527(248) 20.1%	188 2.5%	38 0.5%	3,265(1,590) 43.0%	58.6%

〈표 2: 2004년도 언론중재신청처리현황〉<sup>6)</sup>

( )은 실질적인 피해구제건수

구분 월 별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실질적 피해 구제율	
		합 의	중 재 결 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동 의	이 의	계 속					
1월~7월	491	165	28	15(1)		91(5)	11		181(92)	60.6%

### III. 발전방향의 기본방향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전방향은 크게 보아 두가지의 방향으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종전에 수행하여 왔던 내용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발전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과제설정의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될 것이다.

#### 1. 종합적 분쟁해결기관으로의 발전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전방향을 종전처럼 분쟁

해결수단의 범주에서 고찰하고, 이러한 성격의 개별 내용들을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간 발표되어 온 많은 연구분헌들의 주된 경향도 이 범주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탄생배경과도 관련되는 이러한 방향은 경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신속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제도가 결국은 본 위원회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언론분쟁 해결기관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사법적 판결을 대체하는 중재결정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극적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제도발전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 분

6)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참고.

위원회는 조정결과에 대한 강한 구속력이 보장되는 분쟁해결기관으로 발전해야

제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강한 구속력이 담보된 분쟁해결기관으로의 지속적 발전

언론중재위원회는 앞으로도 분쟁해결기관으로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강한 구속력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1) 분쟁조정결과의 강한 구속력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쟁해결결과는 다른 대안적 위원회의 경우보다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안적 분쟁해결기관의 분쟁조정결과는 일반화하여 논할 수 없다. 개별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서 조정결과의 효력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인정

일반적으로 조정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정도로 규정되고 있다.<sup>7)</sup> 이때에는 당해 분쟁의 조정결과에 상관없이 당사자에게 소송상 이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고 있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예컨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표현도 같은 취지라고 보이며<sup>8)</sup>,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sup>9)</sup> 및 개별 법령규정에 의하여 조정결과의 효력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0)</sup>

(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그러나 일부 분쟁조정유형에서는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한다.<sup>11)</sup>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조정결과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소송제기를 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 (조정 효력) ④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환경분쟁조정법 제33조 (조정 효력등)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8)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2 (자율적 분쟁조정) ①소비자단체협의체는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 및 불만의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 (조정 효력) ①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0) 예컨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이러한 효력부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5조 (조정 효력) 당사자가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의료법 제51조의7 (조정조서) ③제2항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되게 된다. 이때에는 분쟁조정의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는 입법정책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사안의 특성상 소송제도로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한 자율적 해결의 방안을 더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정제도가 근본적으로 소송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재판상 화해가 인정되면, 당사자에게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헌법 제27조 1항)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 효력인정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일정한 전제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주목할 만한 논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한 바 있다. 즉 현재는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심의회 결정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의 효력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기 위한 헌법적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sup>12)</sup> 이에 따르면, ① 대안적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법관에 의한 사법절차에 준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것 및 ② 대안적 결정과정에서 사법절차에서 예상되는 대립적 심리구조와(변론절차의 존재)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한다. 즉 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경우보다 대안적 결정제도가 더 불이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의한 조정의 결과가 재판상 효력을 갖기 위하여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

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에게 절차적 권리, 즉 증거조사신청권이나 증거제출권, 보충서면제출권등의 권리의 인정 여부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 2)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 (가) 개관

언론중재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대한 중재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재판청구권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분쟁해결기관과는 달리 매우 주목할 만한 일련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반론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20조),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정간법 제18조 7항). 또한 직권중재의 경우에도 중재결정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과는 사법적 판결을 대체하는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와는 상관없이 법원에 그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나) 실정법 규정

언론중재의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은 다른 분쟁해결기관에 비하여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언론중재위원회에만 한

12) 헌법재판소 1995.5.25. 91헌가7.

중재절차를 실질적으로 사법절차에  
준하도록 한 것은 전치절차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

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력인정이 결국은 중재신청인의 재판청구권 제한으로 이어지기에, 앞에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에 비추어 그 인정요건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때에는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사법절차에 준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것 및, 결정과정에서 사법절차에서 예상되는 대심적 심리구조와(변론절차의 존재)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① 중재결정주체의 중립성

이 문제는 중재위원의 자격문제이며, 일견상 이 문제는 이해당사자인 언론계 인사의 비중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현행법은 별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즉 위원중 5분의 1이상의 범위에서 언론계 인사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상도 전직 언론인으로 위촉하고 있다.

② 절차적 권리의 보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에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되어 있다. 중재절차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는 중재신청인의 시각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르면)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중재규칙차원에서 중재기일지정(제8조), 당사자의 진술권보장(제12조), 증거조사(제13조 이하), 중재성립규정(제16조), 기록열람권 보장(제23조) 등이 규정되고 있다.

㉠ 소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 결정과정이 사법절차에 준할 정도의 엄격성이 유지되고 있기에, 사법절차를 대체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통하여 권리구제비율이 상당한 부분까지 도달하였다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제도적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과정을 통하여 보완되리라 전망된다.

(2) 전치주의에 의하여 보장된 분쟁해결  
기관으로의 발전

1) 필수적 전치주의절차

대안적 분쟁해결기관의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의 지위를 갖는가의 문제도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 문제는 신속한 분쟁해결의 필요성과 사법적 절차의 보장이라는 두 이해관계의 갈등문제이기도 하다.

선자를 강조하게 되면 사법적인 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용되며, 신속한 분쟁해결과는 거리가 있다는 논거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언론에 의한 피해는 그 확산속도나 피해의 가시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다른 분쟁보다도 신속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예컨대 환경분쟁조정이나 의료분쟁조정, 사회분쟁조정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신속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에 후자를 강조하게 되면 종국적인 해결은 사법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필수적 전치주의의 채택으로 인하여 오히려 권리구제가 오래 걸리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사이에서 현행 정간법은 일종의 타협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반론보도청구에 한하여 이러한 필수적 전치주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임의적 전치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 2) 평가

현행 정간법이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필수적 전치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행 언론중재절차의 사법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간법은 여러 규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1심재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중재신청기간의 규정(또는 단기), 중재대리인의 자격문제, 절차적 규정의 경시, 불출석시의 효과문제, 중재신청의 양식문제, 중재불성립시의 소송제기기간의 문제 등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으나, 그 입법취지는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보호규정을 통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전치절차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가) 중재신청기간의 문제

우선 중재신청기간을 두고 있는 점은(정간법 제16조 1항, 제20조 1항)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 규정이다.<sup>13)</sup> 즉 처리기간은 비교적 짧게 두어 신속한 분쟁해결을 의도하지만, 신청기간은 통상적으로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두는 경우에도 비교적 여유있는 기간을<sup>14)</sup> 설정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는 언론사에 의한 피해발생시에 당사자가 대응할 것인가의 여부 또는 어떠한 법적 권리구제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 등의 선택을 비교적 신속하게 하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중재대리인의 자격문제

중재대리인의 자격문제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내용이다. 언론중재의 경우에는 이를 위하여 언론중재규칙이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 한정하고,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언론중재규칙 제10조 1항). 동 규정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87조 및 제88조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sup>15)</sup>

## (다) 불출석시의 효과문제

현행 정간법 제18조는 분쟁해결수단으로서는 이례적

13) 예컨대 건설산업기본법 제74조 1항등 참조.

14) 이에 해당하는 규정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이때에도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존재한 날로부터 180일의 기간이 설정되고 있다.

15)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임명, 해임, 권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여러 피해구제법령이나 제도들을 통합,  
위원회를 종합적 분쟁해결기관으로  
발전시켜야

으로 중재기일 불출석시의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민사소송법상의 불출석규정(제268조)을 준용하여 이에 따라 해결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불출석의 효과규정시에 소송 양 당사자사이의 관계를 차별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간법 제18조에 의하면, 중재부의 장이 중재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라 중재절차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규정한 취지는 중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여 중재절차가 신속한 분쟁해결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재부의 장의 출석요구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의 침해나 평등원칙의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sup>16)</sup>

(라) 중재불성립시의 소송제기기간 문제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중재불성립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1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정간법 제19조 1항). 이 기간도 중재신청인의 경우에는 비교적 단기라고 보여진다.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 규정은 마치 소송시의 항소제기기간과 유사해 보인다(민사소송법 제396조).

(3) 중앙과 지방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는  
분쟁해결기관으로의 발전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앙과 지방조직의 협력작업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1) 분쟁해결조직의 문제

분쟁해결조직은 크게 볼 때, 중앙의 조정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하나의 단일 제도를 두는 경우에는 결정과정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방조직을 두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신속한 해결의 장점이 있게 된다. 그러나 지방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분쟁조정시 받게 되는 외부적 영향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별도의 지방조직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로는, 사학분쟁조정법안상의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조정, 공인회계사법상의 분쟁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쟁의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별도의 지방조직을 두고 있는 경우, 즉 조직이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로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분쟁조정, 의료법상의 분쟁조정, <sup>17)</sup>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규정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상의 분쟁조정 등을 들 수 있다.

16) 헌법재판소 1999. 7. 22. 96헌바19 전원재판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8조제5항위헌소원】  
17) 의료법 제51조의2 (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①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이외에도, 중앙조직은 없고 분쟁의 해결조직이 지방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sup>18)</sup> 별도의 중앙조직은 없고 지방조직을 중앙조직으로 하는 경우<sup>19)</sup> 등으로 나누어진다.

## 2)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이러한 조직측면은 조직의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대체로 지방조직이 갖는 부실화의 문제와도 연관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조직이 활성화되어 제대로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비례성의 원칙상 중앙과 지방의 조직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앙조직 외에도 지방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는 그간 지방언론들의 숫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되며, 이로 인한 언론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기 위한 지방언론의 사명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오보등의 피해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지방조직의 필요성도 커지게 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정간법은 중앙조직외에 지방 조직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위원구성을 보면,<sup>20)</sup> 거의 그 구성이 현직 부장판사가 중재부장으로 되어 있고, 필수적으로 변호사 1인이 위원이며, 전직 언론인 또는 대학교수가 구성원이 되고 있다.

## (4) 발전방향의 소결

### 1) 종합적 분쟁해결기관으로의 발전

최근의 입법경향 중 두드러진 것은 유사한 법제의 통합작업이다. 그간의 법령실무를 보면 필요에 의하여 그때 그때 법령이 제정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유사한 법제들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전체적인 내용들이 개관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은 법령 서비스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여 왔고, 이에 대한 개선책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언론피해에 대한 대책도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방안들을 하나의 통일된 법령에서, 통일적인 기관에 의하여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up>21)</sup>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기관으로 탄생한 기관이므로, 언론피해구제에 대하여는 통일적인 업무를 추진할 명분을 갖는다.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여러 언론피해구제 법령이나 제도들을 통합하여 발전하는 방향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기술적 변화에 상응한 발전방향 모색

언론중재위원회가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어떠한 내용을 추가하여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

18) 건축법 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 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유통산업기본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유통에 관한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19)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의2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시장재개발·재건축 등 시장활성화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입점상인 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입점상인간의 분쟁 3. 그 밖에 시장재개발·재건축 등 시장활성화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분쟁.

20) 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1)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본 세미나의 다른 주제 발표자의 내용을 참고할 것.

위원회는 사후적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옴부즈맨 제도'로 거듭나야

간의 많은 연구성과가 있으므로 중복하여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서만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언론분야를 둘러 싸고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적 측면의 도전들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전방향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인다.

(가) 중재신청방식의 개선

중재를 신청하는 방식에 대해 정간법은 문서형식을 유지하고 있다(정간법 제16조 1항). 이러한 문서형식은 법적으로는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에는 장점을 갖는 신청방식이지만, 이는 다른 기술적 대안이 없었던 시기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위원회에서 시행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대안적 수단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팩스나 인터넷 등의 수단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중재신청대상의 확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적 사항 중 가장 큰 이슈는 온라인매체의 활성화와 방송과 통신의 융합문제 등이다. 신문이나 잡지가 온라인으로 구독가능한 시대적 변화는 기존 활자언론보다 신속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속성여부에 따라서 온라인매체로서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비례하여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보도나 취재로 인한 피해도 양산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언론은 특별한 구독비용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독층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온라인 매체로 인한 언론피해는 그 규모 등에서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통신으로 인한 언론피해도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율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통신을 둘러싼 새로운 변화도 실무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져오는 새로운 변화는 현재 정간법 규정상의 통신개념에도 새로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매체나 방송 통신융합현상이 중재절차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2. 적극적 옴부즈맨제도로서의 발전;

새로운 접근방식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전방향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다른 내용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제도로서의 방향전환이다. 이를 개인적으로는 '옴부즈맨 제도로서의 발전'이라고 칭하고 싶은데, 이는 기존 언론중재가 언론피해의 사후적 권리구제에 치중하고 있는 면에 대한 방향전환으로 볼 수 있다.

(1) 옴부즈맨 제도로의 변화필요

1) 사전적 문제해결수단으로의 변화

현대 사회의 발전방향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점차 강화하는 데서 찾을 필요가 있다. 현행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론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다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나 정치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사회의 구성원 상호간, 사회세력 상호간의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

며, 이러한 건전한 이성적 세력들에 의한 대화에 의하여 사회적 제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정치적 집단인 국가의 기능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에서도 이러한 요청은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보다 진지한 여론형성을 위한 당사자들과의 대화필요성에 대하여 기존의 언론기관들이 얼마나 노력하여 왔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많을 것이다. 왜곡된 정보, 의도된 오류정보, 신중하지 못한 표현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은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운영되어 온 언론기관의 실태를 보면, 여론형성의 상대방인 일반 국민들과의 대화창구는 언제나 사전적으로가 아니라 사후적으로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기관의 특성상 보도를 전제로 한 활동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언론기관들이 사전적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여론형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당사자의 기본권침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은 이러한 사후적인 창구에서 두드러진다. 사후적인 차원에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 대화를 통한 사후적인 여론형성의 역할은 그간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하여 온 과업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른바 사후적인 작업은 아무리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도, 사전적으로 그 피해를 막는 작업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권리구제제도가 별도로 존재하기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사후적인 권리구제에만 치중하는 것은 그 활동영역을 스스로 제한하는 문제점도 갖게 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

제가 발생하지 않게 활동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대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유리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게 어느 정도 그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옴부즈맨 제도는 민원의 처리를 통한 단순한 분쟁해결수단만이 아니라, 위법한 국가작용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시정하게 하는 역할이 중점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즉 보다 큰 관점에서 국가적 또는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점이 두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공론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옴부즈맨의 유형은 다양할수록 좋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문 옴부즈맨 제도가 이미 도입되었고, 새로운 전문 옴부즈맨의 도입 운영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공정거래분야, 소비자분야, 언론분야, 군사분야 및 의료행정분야, 경찰분야 등의 전문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사회영역에서의 문제점을 사전 또는 사후에 해결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도 지금과 같이 사후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사전적 노력과 사후적 해결노력이 서로 결합되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분야의 옴부즈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2) 언론영역에서의 주도권 회복의 필요성

언론영역은 다른 사회영역과 마찬가지로 제도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제도의 결함이나 역기능은 언론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개별 당사자에게는 언론피해를 야기할 수 있게 된다. 따라

22) 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Habermas, Die Einbeziehung des Anderen, 1997, S.278 참조.

위원회는 언론영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수동적 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언론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해야

서 문제가 있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를 공론화하여 법 개정으로 유도할 필요도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언론옴부즈맨이 되어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이러한 문제해결에 대한 주도권은 유감스럽게도 언론개혁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민단체는 그 설립취지로서, 언론개혁을 바라는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왜곡된 언론을 바로잡고, 한국언론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언론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23)</sup> 그리고 이 단체의 그간의 활동상황이나 현재 전개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언론영역의 제도개선의 주도권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라고 보인다. 그러나 언론영역의 전문 위원회로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데,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고 있어도 무방한가에 대해서는 한번쯤 돌아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민원을 해결하는 사후적 기능외에,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법개정에 반영토록 하여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례는 진지하게 참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는 언론영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수동적 논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면에서 나서서 언론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2) 구체적 방안

이러한 언론옴부즈맨으로의 기능수행을 위하여는 몇가지 선행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 1) 조직명칭 및 근거법령 명칭의 변경

우선 언론중재위원회의 명칭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즉 이 이름하에서는 언론중재에 한정된 논의밖에 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언론위원회' 또는 '언론평의회' 정도의 새로운 이름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그 근거법률도 변경될 필요가 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정당성의 미약이다. 다른 공식적 권리구제 유형과는 달리 법적 근거가 약하며, 이로 인하여 다른 유사한 민원해결기관과 같은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따르게 되면, 단순히 언론분쟁 민원사무나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정도의 기구로 평가받게 된다. 이러한 의미정도를 갖는 제도라면 새로운 과제를 수행할 기구로서의 위상은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독자적인 존립근거를 찾아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하여는 근거 법률부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가칭 '언론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따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때의 명칭은 '언론위원회'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예컨대 '언론위원회법' 등의 적극적인 내용이 담겨지는 명칭일 필요가 있다.

23) 언론개혁시민연대 홈페이지 내용 참조.

## 2) 업무범위의 확대

새로운 업무범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개정도 필요한 사항에 해당할 것이다. 즉 전문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후에 다시 만들어질지 모르는 - 우리나라는 특히 각종 위원회가 특별한 여론수렴절차도 없이 즉흥적으로 양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더욱 더 이 점이 중요하다 - 다른 위원회와의 차별성을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3) 소속기관의 문제

또한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언론위원회'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개정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생각건대 '언론위원회'는 의회직속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차선책으로는 대통령직속으로 강화하는 방향선회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외에도 법령개정사항으로, 위원회가 언론중재사건의 접수가 없이도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는 전문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 IV. 맺는말

언론중재위원회는 그동안 언론분쟁해결기관으로서, 그리고 언론중재, 반론권등의 새로운 개념을 우리 사회에 도입한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당시의 시대수요가 언론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에 있었으며, 이러한 수요에 즉응하여 구체적인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기대는 새로운 시대변화하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과학기술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적절한 중재절차의 변화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수동적인 언론분쟁해결에만 지향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언론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제도의 문제점에 존재하는 데, 안일하게 발생되는 언론피해의 구제에만 신경 쓰는 기구라면 이는 시대에 뒤처지는 기관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 언론영역에서의 과제는, 언론의 환경변화에 즉응하여 이에 못 미치는 제도를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여 미리 문제점을 파악하는 논의까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공론화할 수 있다면, 가칭 '언론위원회'가 언론기관이 갖는 근본적인 기능인 진정한 여론형성기관으로서, 그리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여년이라는 언론은 이러한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제 새로운 발전방향에 맞추어 가칭 '언론위원회'가 새로운 방향하에서도 종전과 같은 눈부신 활동을 하기를 감히 기대하여 본다. □

## 종합토론

사회자 · 김 상 균

서울제3중재부 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회자 : 양경승 변호사께서는 중재위원회의 기존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언론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강화 및 역할 확대 등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류지태 교수께서는 중재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대안적이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지위와 언론의 역기능 해결수단으로서의 지위 등에 대해 논한 뒤 위원회가 종합적 분쟁해결기관으로 그리고 적극적 옴부즈맨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미나를 위해 몇 가지 소주제별로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적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기존의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사항들은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 공직선거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국민 편익 도모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감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환(중앙일보 미디어전문기자) : 통합법 제정의 필

요성에 대해 논하기 전에 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언론만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법 자체가 법리상으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언론이 항상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제하고 법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법피해구제법'이나 '정부피해구제법' 또는 '사학피해구제법'과 같은 명칭의 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만을 대상으로 한 언론피해구제법을 만드는 것은 법의 평등주의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론에 관한 법을 만들 때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구의 선진국 내지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에 관한 법을 만든다면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지 그 피해를 주로 다루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기 전에 언론만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법리상 문제는 없는지 또는 위헌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먼저 짚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법 제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곤(대전중재부 중재부장) :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저는 언론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언론에 의한 피해는 그 피해의 성격, 피해의 범위 등에 있어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와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그 피해의 구제 방법이나 절차도 달라야 합니다. 즉, 특수불법행위에 관한 특수한 피해구제 방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입법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이 법안이 마치 언론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법안에 따른 경우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국민의 권리가 제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언론기관 방어 내지 보호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사회자 : 사회자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말한 취지는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외에 추가로 법의 명칭에 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명식(문화일보 편집국 부국장) : 최근들어 정부측으로부터 중재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의견기사인 '기자수첩'의 표현상의 한두 문장에 대해서까지 중재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법이란 법 명칭에는 언론은 가해자이고 신청인은 피해자라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중재회의에 출석해 본 경험에 기초해 생각해 볼 때 애초에 신청인이 왜 중재를 신청했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으며 언론사가 그렇게 보도한 정당한 이유를 신청인이 수긍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언론을 가해자로 먼저 전제하는 것은 적절

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다는 언론중재법 내지 언론분쟁조정법 정도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통합법은 기존의 피해구제방법과 절차를 하나의 법령에 아우르는 것

양경승(발표자) : 언론중사자는 아니지만 앞서 발표한 세 분의 말씀에 많은 공감을 느낍니다. 먼저 과연 통합법이 필요한가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통합법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거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피해구제방법과 절차를 하나의 법령에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는 권익구제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언론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또 특정사안과 관련된 피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이 없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법 명칭에 언론이 가해자라는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법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앞으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언론분쟁조정법'과 같이 가치중립적인 법 명칭도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법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은 아마도 이 법안이 언론과 국민, 국민과 언론간의 조정과 균형, 절제에 주안점을 두고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 명칭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로 접어두고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

요내용인 언론중재절차의 강화, 위원회 위상 강화 및 역할 확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법원절차와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먼저 중재대상의 확대문제 즉, 중재대상을 손해배상에까지 확대할 것인지, 정정보도에 대해 중재절차를 필요적 전치절차로 가져갈 것인지, 이러한 중재대상의 확대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을 상대화할 것인지, 의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 고유 의미의 중재를 도입할 것인지, 또 절차적인 측면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증거조사기능을 강화할 것인지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론보도의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권의 당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정진건(매일경제 사회부 차장) : 사회가 전반적으로 진보적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만 어떤 회사에 관한 기사에 대해 회사 대표가 아닌 노조가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조가 회사에 관한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하는 것을 받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국가기관이나 정치인의 중재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중재신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파원으로 근무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의 경우 브리핑 능력이 미국과 같은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미국의 경우 기자와 대변인간에 일문일답이 가능하며,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하게 답

변해 주며 브리핑 중에 답변이 막히면 시간을 정해 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의 사소한 실수까지 정정이나 반론을 해 주어야 하고 나아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반론보도의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권의 당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회사의 경우 신청권자를 회사대표로 제한하고 국가기관이나 정치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언론의 실수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해 반론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와 관련된 법원의 1심절차를 중재절차로 대신해 중재절차를 거치고도 다시 법원에 가서 1심부터 시작해야하는 경우 언론이 지게 될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훈(문화방송 법무저작권부) : 양경승 변호사 논문에 의하면 기존의 판례를 수용해 당사자능력이 없더라도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를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에서 언급된 적이 없거나 보도 당시에는 없었던 단체가 급조돼 중재신청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단체들은 청구권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을 상대화하는 부분입니다. 정정과 반론은 본질적으로 그 요건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반론보도청구권의 경우 1심에서 인용 판결이 나면 그 집행의 정지가 사실상 배제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정보도청구에도 적용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즉 확정판결 전에 정정보도를 반론보도

청구에서처럼 미리 보도해야 한다면 그 이후 상급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경우 오히려 언론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청구까지 언론중재의 대상에 포함할 경우 언론분쟁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들이 금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자 :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상대화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경승 변호사께서 이 상대화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리상 차이는 있지만 넓게 보아 정정보도와 반론은 두 가지 모두 원보도 내용을 수정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양경승(발표자) : 법적으로 엄격히 보자면 정정보도청구권은 고의, 과실,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이 요구되는 반면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행위가 불법행위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리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사실 그 두 가지가 모두 크든 작든 원보도 내용을 수정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므로 이를 합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정보도청구권도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법문상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처분'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넓게 보면 정정보든 반론이든 그 처분의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상대화를 논한 것입니다.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을 상대화하게 되면 언론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언론에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안에 의하면 위원회와 법원에 정정과 반론 양자 모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언론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더 급진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재덕(서울제5중재부 중재위원) : 중재위원으로서 경험을 말씀드리면 언론사들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자신들이 한 보도에 대해 무언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들은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를 보완 내지 보충 보도요청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언론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론보도의 성격이나 허용범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제적인 측면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미나의 주제논문에서는 청구권의 실제적인 측면보다는 절차적인 면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관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조선일보 미디어담당팀장) : 두 분 발표자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양경승 변호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는 외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언론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언론피해구제법이든 이와 유사한 법이든 언론피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독자나 수용자가 이 자리에 참석했어야 한다는 류지태 교수님의 주제 발표 중 언급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원과 같은 성격을 지니려

면 위원회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보장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류지태 교수께서는 앞부분에서는 수용자의 입장을 강조하신 반면에 뒤에 가서는 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중재위원회의 권한을 얼마나 또 어떻게 강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어떻게 더 공정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구제해 줄 것인가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부나 여당 정치인 일부가 중재위원회를 악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사전에 풀어나가야 효과적으로 분쟁을 줄일 수 있어

류지태(발표자) : 발표자가 논문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직의 발전을 위해 어떤 기능을 부가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논한 의도는 현재의 중재위원회가 갖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중재위원회의 위상과 무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사후적인 분쟁해결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즉, 우리가 조직자체의 혹은 제도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과 기반을 키워서 그런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혹은 조직적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일반인들은 언론중재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언론의 자유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법률가들이 보기에 중재대상을 확대할 것인가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상곤 부장판사께서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상곤(대전중재부 중재부장) : 우선 손해배상청구를 중재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사회통념상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당사자 관련 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비법인사단이나 재단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용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법원 전치절차로 두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소위 판결을 대체하는 ADR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위원회가 과연 손해배상청구를 다룰 만큼의 능력이나 시설 및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즉 위원회가 법원만큼의 중립성, 실무적 능력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실무자료가 축적되어 있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한편, 정정보도청구의 필요적 전치절차화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의 경우 최근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적으로 폐지된 점과 법원이 최근들어 화해나 조정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구성격의 기관이 대국민 서비스강화 차원에서 법원의 역할을 일부 수행해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언론분쟁과 관련해 피해자가 법원을 이용할 것인지 위원회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선택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정과 반론, 손해배상을 한 곳에 묶는 통합법의 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기존에 반론 보도청구에만 있던 소멸시효 내지 제척기간을 정정보도청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에 더하여 이를 필요적 전치절차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대상을 언론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공동불법행위자인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한상곤 부장판사의 지적은 법률가로서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피해구제법이 언론피해에 관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법의 상당부분은 불법행위제도의 근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해서 이 법을 제정할 것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된 정부기관의 중재신청에 관한 논의는 이 법안의 또 다른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피해구제법안은 국민의 권익구제와 함께 언론사의 과중한 소송부담까지 같이 고려해

양경승(발표자) :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재위원회가 앞으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매일 경제의 정진건 차장께서 제기하신 내용 중 회사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노조가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혹은 급조된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등은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아 걸러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기각, 각하 결정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재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언론사가 이를 회피하거나 부담스러워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많이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위원회가 다루게 된다면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재위원회가 실무역량을 얼마나 축적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제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한정 미룬다면 언젠가는 언론사들은 폭증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과중한 부담을 감당해 내기 어려운 시점을 맞을 것입니다. 현재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청구액이 수십억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손해배상청구는 거의 하나의 국민적 풍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원회가 정정과 반론 나아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까지 함께 다루어 위원회를 통한 완충을 시도해 보

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중재대상에 넣어서 함께 다루자는 것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이 법을 만들면서 국민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중재절차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위축을 안 받으면서 피해를 회복시켜 줌과 동시에 언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들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중재부가 소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가져다 줄 것

김광목(경기중재부 중재위원) : 중재를 하다보면 가끔 정치적인 사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중재위원회가 과연 정치적인 사안을 다룰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수 백년간에 걸친 관례나 관습이 쌓여 있어서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정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언론의 액세스권 통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언론의 현실에서는 언론사들이 불가피하게 추론이나 해석기사를 쓰게 되는데 이 때 추론하는 바가 자신의 본 뜻과 다르다고 잘잘못을 논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재를 하다보면 신청인에 따라서는 정정이나 반론보도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보도가 나갔다는 사실 그 자체에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원에서 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청구를 다룰 경우 소액이나 그 청구가 인용된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현재 국민들의 인식이나 기준은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회가 손해배상청구를 다루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중재와 관련하여 중재심리 자체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재위원의 자격요건이나 선임과정을 투명하고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덕(서울제5중재부 중재위원) : 중재위원의 위촉은 현재 문화관광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촉과정에 있어 그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위원 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 받아 위촉기관에 주어서 이를 선임케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 권력자이거나 정치인들이 신청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만한 사안 혹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현재의 비공개원칙을 탈피해 이를 공개심리에 부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재심리에 임하는 당사자들은 보도에 있어서나 중재신청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도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자 : 다음으로 뜨거운 감자이기는 하지만 현재 언론에서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제출한 언론피해구제법안 제26조에 의하면 법원은 언론사의 인격권 침해가 위법한 것으로서 의도적 또는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5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손해의 배상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

는데 먼저 찬성론자들에 의하면 현대사회에서 언론기관이 권력화 되어있다는 점, 보도로 인한 피해의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다는 점, 우리법원이 미국의 '현실적 악의론'을 사실상 수용해서 언론보도에 대해 상대적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현실적 악의론'은 공인의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법리인데 이를 오히려 언론기관의 책임을 엄하게 추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근거로 삼는 것은 '현실적 악의론'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의 부족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여러가지 찬반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엽(동아일보 문화부 차장) : 언론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민단체의 법률안은 시민단체가 언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제도가 얼마나 악용될 위험성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일년전 기자는 정부의 모 부처를 상대로 정책관련 예측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그 기사를 악의적인 오보로 분류하여 문건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악의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재미있는 것은 약 일년 뒤 그 정부부처가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즉 일년 전에는 악의적이었던 기사가 일년 후에는 사실기사로 뒤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악의성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언론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법원은 얼마든지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언론의 악의성을 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합니다.

사회자 :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언론중재위원회는 서비스강화 차원에서 소규모 언론사들을 위한 범무지원 해나가야

김현수(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개인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 자체에 대해 약간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디어오늘 같은 신문은 독특하게도 언론에 대해 때로 가해자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 피해자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미디어오늘은 모 언론사에 의해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 피소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언론사에게 이 정도의 손해배상청구액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등장하는 수많은 이른바 '풀뿌리 언론'이라 불리는 소규모의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기존의 거대 언론사들에 비하면 오히려 약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언론이 일방적으로 가해자라거나 국민만이 피해자라는 인식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의 논의가 기존의 언론 패러다임에 너무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류지태 교수께서 발표하셨듯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강화라는 차원이 아니라 서비스강화 차원에서 앞에서 언급한 소규모 언론사들을 위한 법률지원이 적극적으로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해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위자료의 현실과 국민들이 느끼는 피해인식의 정도 등을 검토, 법학적으로 정리되어야

한상근(대전중재부 중재부장) :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법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원에 언론전담재판부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법원이 인용한 위자료액수는 상당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리다 보니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증액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를 입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면 이러한 시도까지 막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가 받은 손해만 배상해주면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프리미엄을 얹어주자는 정책적 측면이 있음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언론과 같은 매체들이 쏟아내는 검증은 거치지 않은 기사에 대해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점도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말해 법원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강하지만 우리 위자료의 현실과 국민들이 느끼는 피해인식의 정도 그리고 인터넷언론의 현실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법학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강원일보 사회부 차장) :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일선 기자들이 느끼는 위축감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사에게 명백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언론사의 책임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들이 충족된다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청구를 중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논의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임경숙(경남중재부 중재위원) : 중재를 하다보면 격한 감정을 갖고 있던 당사자가 중재과정을 거치면서 감정이 정리되어 정정 대신 반론으로 합의를 하거나 때로는 보도 없이도 당사자간에 화해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재위원 구성이 이러한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히 안배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이런 장점들을 감안해 볼 때 많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회가 적정 범위내의 손해배상청구를 다루는 것은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홍렬(YTN 사회부장) : 중재심리에 참석해 본 경험에 의하면 중재절차가 당사자들의 감정을 순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재대상에 손해배상청구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의 성격을 불문하고 자기 피해에 대해 크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액수가 얼마이든 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들 것입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재신청건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중재대상에 이를 포함시키면 손해배상청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를 상대화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보아도 정정을 청구했지만 반론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피해를 구제 받는 측에서 청구 성격 때문에 혼란이 있거나 중재절차의 진행과정이 방해될 수 있다면 상대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에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가해동기에 의도성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양경승 변호사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부분들에 대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건수와 배상청구액의 급증을 감안할 때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해

양경승(발표자) : 중재대상에 손해배상청구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무래도 언론사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론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까지 중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체

화가 이루어지면 손해배상청구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가하는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주류는 유력 정치인들이나 법조인 등 주로 사회적으로 알 만큼 알고 가질 만큼 가진 힘 있는 계층들입니다. 이들은 사실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든지 법리적인 대응이 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말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손해배상청구를 중재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의 일단이 있습니다. 또 일선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손해배상청구와 청구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구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언론사는 오히려 더 과중한 소송부담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정비를 서둘러 논의하자는 것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언론사들은 그 도입동기의 불순함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같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오직 손해 본 만큼에 대한 배상만을 인정하는 미국적 법체계 하에서 나온 것으로 배상액에 비해 피해 규모가 너무 큰 경우 배상액을 크게 늘려주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굳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가해자 요건 즉, 가해자의 의도, 배상능력이나 재산정도 따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언론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

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이를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내버려두고 언론피해에 대해서만 도입하게 된다면 법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의 말씀에 대해 많은 공감을 표합니다. 중재위원회의 역할에는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분명히 교육적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일반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언론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도 연수기회를 주고 언론법제와 관련된 자료나 편람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향후 이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토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언급된 언론중재위원회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상근(대전중재부 중재부장) : 중재위원회가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중재위원회 사무처의 인적, 물적 기반을 크게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예산상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대국민서비스 향상 차원에서라도 꼭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을 살펴보면 한 가지 참고했으면 하는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그 집단의 성격으로 인해 소송당사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현재 증권거래법에서 최초로 도입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관할은 아무래도 서울중재부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 이외에 특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분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재과정에서 중재위원들의 의견이나 판단은 공정하게 반영되고 있어

최광일(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들어보니 중재위원회가 정치적 혹은 정파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 정부기관의 중재신청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심리를 하면서 단 한번도 누구로부터 어떤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재과정에서 중재위원들의 의견이나 판단은 공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하여 불필요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정부기관들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라는 형식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터뷰 기사를 거절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청인들도 보도의 형식을 너무 고집하지 않는 유연성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 류지태 교수께서 그간의 논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태(발표자) : 분쟁이 생기기 전에 사전 예방 내지 지원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발표자가 관여하고 있는 국무총리산하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이를 교정하기보다는 사전에 조례의 제정 때부터 입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중재위원회도 언론법리에 어둡고 인적 물적 여건이 열악한 인터넷매체의 언론활동을 법무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자임하지 않는다면 머잖아 다른 위원회 조직이 그러한 기능을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듣다보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제도 속에 있는 한 그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덕성이나 인성이 여하한지를 떠나서 그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일정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관건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얼마나 강구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재위원회가 중재위원의 선임과정 등에 있어 보다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다소 미진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위원장께서 오늘 토론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액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완충역할을 통해 먼저 한번 걸러야

위원장 : 먼저 네 시간 가깝게 훌륭한 발표를 해주

시고 좋은 의견을 교환해 주셔서 많은 공부가 된 것에 대해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양경승 변호사께서는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인 검토'라는 논문에서 현행 중재제도가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한 다음 개선방안에 대해 세세한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이나 내부연구에 많은 지침과 시사점을 주셨습니다. 또 류지태 교수께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논문을 통해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시고 특히 중재위원회가 종래의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에 안주하지 말고 언론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분쟁의 구조적 요인들을 찾아내 미연에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좋은 의견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논의과정에서도 좋은 의견들을 발표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것 중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택환 중앙일보 미디어전문기자와 조명식 문화일보 부국장께서는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법 명칭이 언론이 피해만 주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도 약 다섯 차례의 법안 축조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법안의 명칭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언론중재법이나 언론분쟁조정법 등도 좋은 명칭이긴 합니다만 언론피해구제법이 이 법안의 성격과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국가배상법이나 원자력피해배상법이 국가나 원자력에 의해 항상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정하고 법의 명칭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듯이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명칭도 언론이 항상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것을 예정하고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형태의 법 명칭은 언론이나 국가 또는 원자력이 만에 하나라도 피해를

끼치게 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구제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법의 명칭 하나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디어오늘의 김현수 편집국장께서는 위원회가 소규모 언론사를 상대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역할에 대한 요청에 부응해 수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 4월 1일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를 출범시켰으며 이 센터 내 교육홍보팀을 통해 잠재적인 신청인과 잠재적인 피신청인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교육 내지 홍보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 나가서 언론사가 어떻게 하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내지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강의도 합니다. 현재 많은 요청을 받고 있어 나름대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경승 변호사가 발표한 중재대상의 확대 즉, 손해배상청구의 포함분제는 새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이십여 년 간의 역사를 통해 거의 60%를 상회하는 피해구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화해·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통계는 대단히 유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높은 피해구제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위원회가 당사자간의 이견을 조율해 합의에 이르는 데 대단히 효율적인 기구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위원회의 장점을 손해배상청구에도 한번 활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중재대상의 확대를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즉, 너무 고액이거나 쌍방간의 감정이 지극히 대립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중재위원회의 완충 역할을 통해 법원에 가기 전에 먼저 한번 걸러보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양경승 변호사님과 류지태 교수님 그리고 참석자들이 훌륭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신 김상균 부장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여 이 법안을 손질하고 가다듬어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토론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 의견 면책의 한계<sup>1)</sup>

-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부 -

민 성 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목 차

###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판결요지

2.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IED)
3. 공적 인물에 대한 IIED의 문제 (Falwell v. Hustler Magazine, 1988)
4. Falwell 판결 이후의 미국 법원의 판결 태도

### [평 석]

####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논리적 구조
3. 개념의 정리
4. 평석의 범위

#### III. 우리나라의 이론 및 판례 개관

1.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개관
2.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3. 입증책임의 문제
4. 소결

#### II. 미국에서의 의견 표명의 한계에 관한 논의

1. 의견 표명의 한계에 대한 미국 판례의 태도

#### IV. 결 론

1. 대상판결의 의의
2. 우리 법에서의 의견 표명의 'breathing space'

(1) 이 논문은 필자가 2003. 11. 30. 열린 법원 내 '언론법커뮤니티'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다소 수정한 것으로 이번 호에는 [대상판결] 부분과 [평석]부분 중 I. 서론, II. 미국에서의 의견표명의 한계에 관한 논의까지를 게재한다. .... 편집자 주

## [대상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 문화방송은 'MBC 뉴스데스크' 등을 방송하는 언론기관, 피고 권○○은 피고 문화방송 소속의 'MBC 뉴스데스크'의 뉴스진행자, 피고 강○○은 피고 문화방송 소속의 취재기자로써 원고에 대한 보도내용을 취재·보도한 자이다.

나. 피고 문화방송은 1999. 9. 19. 21:00에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약 3분에 걸쳐 범조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피고 권○○(피고 문화방송 소속의 뉴스진행자)은 "이번에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비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인공들은 모두 범조인들입니다. 먼저 김○○ 기자가 아침이슬 같은 두 시골 판사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하고, 김○○ 기자가 '시골로 간 판사'라는 제목 하에 용인시법원의 판사로 임용된 전○○ 변호사의 이야기와 양산시법원의 판사로 임용된 신○○ 변호사에 관하여 그 인터뷰 내용과 함께 매우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를 한 다음, '못 믿을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대한 보도를 시작하였다.

먼저 진행자인 피고 권○○이 "이런 순백의 범조인이 있는가 하면 곧 이어질 어느 변호사의 얘기는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집니다. 돈을 주고 소송을 의뢰한 사람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든 변호사가 있습

니다."라고 설명한 뒤, 피고 강○○이 "증거 일부가 누락된 채 법원에 제출되거나 바뀌어 제출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일부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고, 의뢰인에게 불필요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증거는 제출되었으며 ... 어느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에게 써준 진술서입니다. ... 이하 생략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 2.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피고들이 마치 원고가 중요한 증거를 누락하거나 오히려 불이익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고의에 가까운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이고,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해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하였다.

나. 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 18. 선고 99가합19514)은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01. 11. 29. 선고 2001나11989)도 1심과 같이 '원고가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다'라는 이 사건 보도내용은 진실이라고 볼 수 없고 진실이라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다.<sup>2)</sup>

2) 피고의 상고이유는, 피고의 보도내용은 진실이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 3. 판결요지

TV 뉴스 프로그램에서 특정변호사가 소송수행을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기초하여 소위 '순백의 법조인'과 대비하여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라거나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은, 위 변호사의 잘못의 정도와 판결에 대한 영향을 지나치게 확대, 과장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른 표현으로서 그러한 의견표명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sup>3)</sup>

## [평 석]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가. 지금까지 표현행위 중 '의견'에 대한 사법적 규제는, 사실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즉 표현행위가 어떠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직접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명예훼손적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아 그것이 명예훼손적이라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또한 그 자체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의견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명예훼손적이라면 역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기

존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학설 및 판례에서의 의견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주로 그것에서 사실적 요소(암시되었거나 전제된 사실)를 찾아내어 그 사실관계의 진실성과 상당성에 의하여 판단되어 왔는데,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의견 표현행위 자체의 표현 방식이나 내용은 문제삼지 않고 '의견 면책'이라는 이름으로 면책되어 왔다. 그렇다면 아무리 의견 표현방식이 거칠거나 모욕적이라고 해도 아무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인가?

나. 최근 언론의 보도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가치 판단 및 언론사 자신의 입장을 부가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언론의 자유의 신장으로 인하여 언론 고유의 공적인 인물에 대한 검증 기능이 크게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집단들에 의한 정치적인 이념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인 존재나 사안에 대한 논쟁이 격렬해질수록, 그에 수반되는 의견 표명 또한 거칠고 신랄해지는 - 때로는 악의적이고 인신 공격적이기까지 한 -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격렬한 논쟁의 과정에서 거칠고 신랄한 의견 표명으로 인하여 상대방은 허위의 사실 적시에 못지 않은 인격권의 침해 받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도 '의견 면책'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보호되어야 하는가?

다. 앞서 본 것과 같은 문제 상황. 즉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표현행위에서 그 표현 자

3)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04. 1. 20.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4. 1. 20. 선고 2003나26206 판결 참조)

체를 문제삼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만약 인정한다면 어떠한 요건 하에 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의견은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보고 느낀 바를 표현한 것으로서 같은 대상에 대한 의견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기에 사실의 적시보다 두텁게 보호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칫 의견 표현 자체를 문제삼은 불법행위책임을 널리 인정하게 되면 이는 반대 의견에 대한 억제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어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라는 민주주의 고유의 가치가 현저히 장애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때로는 악의적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각한 수준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인신공격적 표현에 대하여도 의견 면책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소홀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있어서 문제되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요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이는 기본적으로 의견에 대한 평가를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개입할 것인가, 국가가 개입한다면 어느 정도로 개입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대상판결은 이들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 2.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논리적 구조

### 가.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점

(1) 원심은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피고 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순백의 법조인이 있는가 하면 곧 이어질 어느 변호사의 얘기는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집니다.'라고 한 부분은 뒤이어 나오는 피고 강○○의 설명부분을 전제로 하여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도 지극히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의뢰인을 패소케 한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여 나타낸 것으로 보고, 그 진실성을 피고 강○○의 설명부분과 함께 판단한 결과 피고 강○○의 설명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하고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한편 대법원은 피고 권○○이 언급한 부분 이후 피고 강○○이 이후에 설명하는 '원고가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본 점은 같으나, 피고 강○○의 설명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나아가 피고 권○○이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판결 요지와 같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나. 분석

(1) 먼저 이 사건 방송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원심 및 대상판결이 적절하게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 권○○이 진술하고 있는 부분은 이후 피고 강○○의 설명 부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 권○○ 진술 부분은 합리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피고 강○○이 설명한 사실 이외의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순수하게 피고 강○○의 설명부분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므로 이는 The second Restatement의 분류상 '순수의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과 대법원은 피고 권OO 진술 부분을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는 순수의견으로 본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 의견에 대하여 원심이 '단순히 의견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본데 반하여, 대법원은 이를 '원고의 잘못의 정도와 판결에 대한 영향을 지나치게 확대, 과장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른 표현으로서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상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 3. 개념의 정리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사용상 다소간의 혼란이 있는 어휘들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 가. "의견"

본고에서 사용하는 '의견'이라는 개념은 The second Restatement(1977)의 입장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밝혀지지 않은 명예훼손적 사실을 암시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순수의견'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순수의견은 발언자가 이미 진술한 사실, 또는 발언 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사실 적시 없이 순수하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순수의견'은 전제된 사실관계가 있는지에 따른 구별이 아니라 당해 표현 자체를 사실 적시 내지는 암시로 볼 수 있는지에 따른 구별이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적시한 후 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표의자의 의견을 부가한 경우 그 의견은

순수의견인 것이다.

#### 나. "의견 표명형 명예훼손"

한위수 부장판사는 명예훼손을 사실적시형과 의견 표명형으로 나누고 있다.<sup>4)</sup> 그러나 여기에서 명예훼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수의견은 면책이라는 전제 하에, 전제된 사실관계의 진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본 평석에서 논의의 주제인 의견 표현방식 자체에 의한 불법행위와는 다른 것이다.

### 4. 평석의 범위

가.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명예훼손적 사실적시가 없으나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의견 면책과의 관계에 비추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미국의 Falwell v. Hustler 판결을 비롯한 미국의 판결례 및 해석론 등에 비추어 검토하기로 한다.

나. 본 평석은 의견 자체의 표현상의 한계에 관한 논의이므로 대상 판결 및 원심판결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던 전제된 사실관계의 진실성 및 상당성은 평석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II. 미국에서의 의견 표명의 한계에 관한 논의

### 1. 의견 표명의 한계에 대한 미국 판례의 태도

4) 한위수, '논평과 명예훼손', 민사법학 제21호(2002. 3.) 16~18면.

가. Common Law하에서의 공정논평 특권  
(fair comment privilege)

(1) 영미의 Common Law하에서는 명예훼손적인 진술은 그것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허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진실임을 입증해야만 했다(진실항변).<sup>5)</sup> 그 결과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의견은 그것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없었고, 그 결과 공적인 영역에 대한 의견 표명조차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되자, 가치 있는 공적 논쟁이 직실될 우려가 있게 되어 '공정 논평의 특권'이 명예훼손의 소송에서 항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sup>6)</sup>

(2) 공정논평의 특권이란, 일반적으로 당해 논평이 ① 공중의 관심사에 대한 것이고, ②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며, ③ 논평자의 진정한 의견이고, ④ 상대방에 대하여 오로지 손해를 가할 목적이 아닐 것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나, 나아가 그 논평이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정논평특권은, 실제로 공정하지 않은 논평을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sup>7)</sup>

(3) 그러나 이러한 공정논평의 특권은 모든 종류의 의견 표명을 면책시키는 것은 아니었고,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증오, 모욕 또는 조롱에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다.<sup>8)</sup>

나. Restatement of Law of Torts에서의 논의

(1) The first Restatement (1938)

20세기 무렵 전통적인 Common Law상의 명예훼손법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당초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었으나 그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전환시키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명예훼손법의 초점이 적시된 사실의 허위에 맞추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The first Restatement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허위이고 명예훼손적인 진술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전통적인 입장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는데, 의견 표명에 있어서는 진실성(truth)보다는 적정성(propriety)이 더 중요한 고려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적인 진술은, 사실의 적시만이 아니라 모멸적인 언사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여전히 명예훼손의 성립을 사실 적시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의견 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sup>9)</sup>

(2) The second Restatement (Tentative Drafts, 1974)

이러한 The first Restatement의 태도는 1974년에 발간된 The second Restatement (Tentative Drafts, 1974)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명예훼손의 일반적인 한 형태는 조롱(ridicule)인데, 이는 실제로 '원고는 우스꽝스럽다'라는 의견을 표현하여, 그를 모욕, 조소 기타 경멸적인 느낌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동정적이거나 중립적이기보다는 신랄하게 악평을 퍼

5) Robert C. Post,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Public Discourse : Outrageous Opinion, Democratic Deliberation, and Hustler Magazine v. Falwell", Harvard Law Review Vol. 103 (Jan. 1990), 618면.

6) 한위수, 같은 논문 4면.

7) G. Robertson, Robertson & Nicol on Media Law, 4th edition(2002), Sweet & Maxwell, 119면.

8) Post, 같은 논문 616면.

9) Post, 같은 논문 620면.

붓는 우스갯소리, 시, 만평, 캐리커처 등은 명예훼손적(defamative)일 수 있다.”<sup>10)</sup>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1974. 6. 25. 미국 연방대법원이 Gertz v. Robert Welch, Inc.판결에서 “수정헌법 제 1조 아래에서는 틀린 의견(false idea)이란 존재하지 아니한다. 어떤 의견이 아무리 유해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법관과 배심원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의견과의 경쟁에 의존해야한다”라고 선고한 이후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 (3) The second Restatement (1977)

㉠ The second Restatement (1977) §566은, “명예훼손적인 진술은 의견의 형식을 띤 진술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그것이 의견의 기초로서 ‘밝혀지지 아니한 명예훼손적 진술’ (the allegation of undisclosed defamatory facts)을 암시하는 경우에만 제소할 수 있다.”<sup>11)</sup>라고 서술하고 있고, ‘조롱’(ridicul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명예훼손의 일반적인 한 형태는 원고를 모욕, 조소 등에 노출시키는 ‘조롱(ridicule)’이었다. ‘상대방이 우스꽝스럽다’라는 의견을 표현하여, 그를 모욕, 조소 기타 경멸적인 느낌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동정적이거나 중립적이기 보다는 신랄하게 악평을 퍼붓는 우스갯소리, 시, 만평, 캐리커처 등은 명예훼손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comment b에서 본 바와 같은 구별(순수의견과 혼합의견의 구별 : 역

자 주)이 ‘조롱’에 대하여도 적용 가능하다. 만약 그 진술이 이미 알고 있거나 추정되는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칠게 표현한데 그치는 것이라면 그 표현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유지될 수 없고, 그러한 소송을 유지하려면 그 조롱에, 만약 명시적으로 표현되었다면 명예훼손적일 수 있는 사실의 적시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sup>12)</sup>

(내 이 내용을 앞서 본 Common Law에서의 ‘공정논평의 특권’이나, The first Restatement, 또는 The second Restatement (Tentative Drafts, 1974)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즉 Common Law 하에서는 공정논평의 특권도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모욕하거나 기타 경멸하는 의견 표명에 대하여는 이를 면책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나, Gertz 판결에서 의견 일반에 대한 헌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자, 비록 그 의견 표명이 조롱, 경멸 또는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격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다.<sup>13)</sup>

다.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헌법상 의견 면책 특권

### (1) 수정헌법(First Amendment) 제1조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의 근거 규정이다.<sup>14)</sup> 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하여 미국 연방

10) The second Restatement (Tent. Draft No. 20, 1974) §567 A comment a (Post, 같은 논문 621면에서 재인용)

11) American Law Institute, The second Restatement (1977) 170면.

12) American Law Institute, The second Restatement (1977) 175~176면. 주8)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13) American Law Institute, The second Restatement (1977) §566 comment c. ‘effect of constitution’: Common Law 하에서는 순수의견의 표명도 명예훼손 소송의 기초가 될 수 있었으나, 이는 연방대법원의 판결(Gertz v. Robert Welch, Inc. (1974) 418 U.S. 323,339)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된 것(unconstitutional)으로 보인다.

14) 원문은 다음과 같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대법원이 수정 헌법 제1조에 근거한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 Gertz 판결이 처음은 아니었다. 1930년대부터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정한 집단(community)의 경계나 관점을 넘는 '공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헌법적인 보호를 해왔는데, Cantwell v. Connecticut (1940) 310, U.S. 296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카톨릭 신도들에게 매우 공격적인 발언을 하여 평화를 깨는 선동을 한 Common Law상의 범죄를 범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그러한 발언도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종교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에 있어서도 침해한 대립이 발생한다. 두 분야 모두 한 집단의 주의(主義, tenets)는 그의 이웃에게는 심각한 잘못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관점을 설득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다시피, 종종 과장(exaggeration), 종교 집단이나 정치적 공동체에서 저명한 인사에 대한 비방(vilification), 심지어 허위의 사실의 적시가 행해진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국민들이라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나침 또는 남용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유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진보된 의견, 올바른 행동을 위하여 필수적임을 알고 있다.

이러한 자유의 본질적인 특징은, 그러한 보호하에서 다양한 유형의 의견, 의견 또는 믿음이 방해받지 아니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민족과 교의(教義, creeds)가 존재하는 곳보다 이러한 보호

가 더 절실한 곳은 없을 것이다.”<sup>15)16)</sup>

(2) 이렇듯 미 연방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공적 논쟁에서의 의견 표현행위와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상대방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을 금지하였는데, 이러한 공적논쟁에서의 중립적 영역이란 관념(the concept of neutral sphere of public discourse)은 뒤에서 논의할 고의적 감정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torts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에 대하여 강력한 함의를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요건 중 'Outrageousness'는 종종 특정한 집단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나 다른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17)</sup>

## 2.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괴롭힘, 이하 IIED라 한다)

### 가. 개념 및 요건

(1) The second Restatement (1965)은 '§46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참을 수 없는 행위(Outrageous Conduct Causing Severe Emotional Distress)'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주의를 게을리한 채 극단적이고 과도한 행동을 하여 타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람은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고, 만일 그로 인하여 신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신체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해야한다라

15) Cantwell v. Connecticut (1940) 310, U.S. 296 : Post. 같은 논문 629면에서 재인용.

16) 비슷한 취지의 판결로 Cohen v. California 403 U.S. 15(1971)을 들 수 있다. 위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헌법적 권리는 우리 사회와 같이 다양하고 인구가 많은 사회에서 강력한 처방이 된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적인 논쟁에 있어서 정부에 의한 제약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는 그러한 자유가 궁극적으로 보다 유능한 시민과 보다 완벽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17) 이는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판결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정치적으로 이념을 서로 달리하는 집단으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산계릴라식 빨치산 전투’라거나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을 전개한다’라고 한 것은 피고와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집단 내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피고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원고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sup>18)</sup> 과장되거나 또는 하찮은 소송의 촉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거에 대한 불신, 책임한계의 불명확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오직 정신적인 고통만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이 늦어졌고 그 결과 IIED는 비교적 최근에 불법행위에 편입된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이다.<sup>19)</sup>

(2) 요건

IIED는 4가지의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① 피고는 의도적으로 또는 주의를 게을리한 채 행동해야 하고(the defendant must act intentionally or recklessly), ② 그 행동은 극단적이고 과도해야만 하며(the conduct must be extreme and outrageous), ③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해야하고(severe emotional distress), ④ 피고의 행동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it must be the cause of severe emotional distress)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4가지의 요건은 '피고의 과도한 행동(the outrageousness of the defendant's conduct)'의 요건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극단적이고 과도한 피고의 행동은 그 자체로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피고의 극단적이고 과도한 행동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에까지 확장되며<sup>20)</sup> 끝으로 의도성 내지는 과실성의 요건은 피고가 그토록 과도한 행동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

이므로 역시 충족되기 때문이다.<sup>21)</sup>

(3) 'Outrageousness'의 범위

피고의 행동은 극단적이고 과도해야한다. 피고의 의도가 불법적이거나 심지어 범죄적이라고 해도, 또는 그가 상대방의 정신적 괴롭힘을 의도했다거나, 그의 행동이 '악의적'이라고 평가되거나 그 행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분노가 다른 불법행위의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케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Outrageous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없다. IIED에 의하여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동이 본질상 과도하고, 그 정도에 있어서 극단적이어서 분명한 사회에서 가능한 모든 품위(decency)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흉악하며 분명한 사회에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고의 행동을 사회 평균인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것이 듣는 이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분노를 유발하여, 그로 하여금 'Outrageous!'라고 외치게 하는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나. 명예훼손법과의 관계

(1) 대부분의 주에서는 IIED를 명예훼손(defamation)과는 독립된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명예훼손법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sup>23)</sup> IIED는 그 요건이나 적용범위에 있어서 명예훼손법과는 다른 것이 사실이지만, 부러한 행동으로부터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분명사

18) American Law Institute, The second Restatement (1965) §46, 71면.

19) American Law Institute, The second Restatement (1965) §46 comment b.

20) '극심한 정신적 고통'(severe emotional distress)의 요건은, 피고의 행동이 극단적이고 과도하다는 것만 입증된다면, 원고가 당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쉽게 입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1) Daniel Givelber, "The Right to Minimum Social Decency and the Limits of Evenhandedness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by Outrageous Conduct", 1982 Columbia Law Review, 42~49면.

22) American Law Institute, The second Restatement (1965) §46, comment d,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

23) Dwight L. Teeter, Jr, Law of Mass Communications (2001), 419면.

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품위와 도덕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Common Law하에서의 의견 표명에 의한 명예훼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2) IED는 특히 Gertz판결 이후 헌법적 차원에서 의견 면책 특권이 인정되면서 명예훼손법의 초점이 '허위 사실의 적시'로 옮겨짐에 따라 더 이상 명예훼손 소송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게 된 의견 표명에 대한 구제책으로 이용되게 되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alwell v. Hustler 사건에서도 Falwell은 Hustler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Defamation), 사생활의 침해(Invasion of Privacy)와 더불어 IED를 근거로 소를 제기하였다.<sup>25)</sup>

### 3. 공적 인물에 대한 IED의 문제

(Falwell v. Hustler Magazine, 1988)

#### 가. 사실 관계

(1) 피고 Larry Flynt는 피고 Hustler Magazine사의 발행인으로서, 그가 발행하는 잡지 'Hustler'에 노골

적인 포르노그래피와 저급한 유머를 게재함으로써 미국 출판계에서의 '성 혁명(sexual revolution)'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자이고, 원고 Jerry Falwell은 저명한 기독교 원리주의자로서 미국의 대중 사회에 전통적인 가치들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는 자이다. Falwell은 Flynt를 '추잡한 장사꾼(sleaze merchant)'으로서 자신이 제거하고자 하는 도덕적 문란함을 조장하는 자로 여겼으며, Flynt는 Falwell을 '영터리 수다쟁이(phony wind-bag)', '위선자(hypocrite)'로서 그 실체가 폭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2) Flynt는 수년간 Hustler의 지면을 통하여 Falwell을 '사악한 위선자'로 그려오던 중, 1983. 12경 아래 그림과 같이 Hustler 표지 안쪽 면에 "Jerry Falwell이 그의 첫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Jerry Falwell talks about his first time)."<sup>26)</sup>라는 제하에, Falwell이 깊이 생각하는 사진을 실은 후 그 밑에 인터뷰 형식으로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옥외 화장실에서 그의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내용이 담긴 패러디 광고(ad parody, 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게재하였고<sup>27)</sup>

24) Post, 같은 논문 624면.

25) Post, 같은 논문 621면.

26) Campari는 유명한 술 이름으로서, 그들의 광고는 명사들이 자신의 첫경험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바, 이 때 '첫 경험'이란 'Campari와의 첫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첫 경험'까지 의미하는 중의적인 것이다. (Post, 같은 논문 606면)

27) 위 ad-parody에 게재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Post, 같은 논문 607면에서 재인용)

FALWELL : My first time was in an outhouse outside Lynchburg, Virginia.

INTERVIEWER : Wasn't it a little cramped?

FALWELL : Not after I kicked the little goat out.

INTERVIEWER : I see. You must tell me about it.

FALWELL : I never really expected to make it with Mom, but then after she showed all the other guys in town such a good time, I figured, "What the hell!"

INTERVIEWER : But your Mom? Isn't that a bit odd?

FALWELL : I don't think so. Looks don't mean that much to me in a woman.

INTERVIEWER : Go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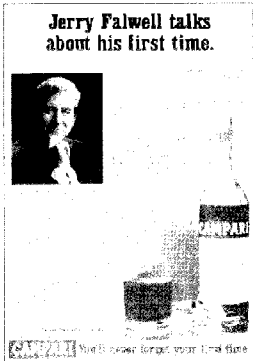
FALWELL : Well, we were drunk off our God-fearing asses on Campari, ginger ale and soda - that's called a fire and Brimstone - at the time. And Mom looked better than a Baptist whore with a \$100 donation.

INTERVIEWER : Campari in the crapper with Mom, . . . how interesting. Well, how was it?

FALWELL : The Campari was great, but Mom passed out before I could come.

## 기고논문

‘지면 하단에 ad parody - not to be taken seriously(패러디 광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오)’라고 기재하였다.



(Hustler의 패러디광고)<sup>28)</sup>

### 나. 소송의 경과

(1) Falwell은 Flynt와 Hustler Magazine을 상대로 Virginia 주법원에, 첫째 명예훼손(defamation), 둘째 사생활의 침해(invasion of privacy), 셋째 고의적인 감정적 괴롭힘(IIED)를 원인으로 제소하였다. 법원은 증거조사를 끝낸 후 사생활 침해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두 청구에 대하여 배심에 회부하였는데, 배심은 위 광고가 “원고 Falwell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합리적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위 광고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으로서 Gertz판결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IIED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는 위 광고의 표현이 과도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100,000의 전보 배상과 더불어 피고 Hustler Magazine과 Flynt에게 각 \$50,000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 (2) 항소심의 판단<sup>29)</sup>

피고 Hustler Magazine과 Flynt가 항소하였는데, 이들은 크게 두 가지의 헌법적인 주장을 하였다.

첫째,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의견의 표명’이므로 명예훼손 소송에서 헌법적으로 보호받는데, IIED란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는 원고를 구제하기 위한 불법행위 유형이므로, 이미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불가하므로, 이미 명예훼손에 대한 헌법적인 면책이 이루어진 이 사건 광고는 IIED에 대하여도 면책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은 표현행위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정도로 과도한가의 여부이지 사실의 적시 유무가 아니며, ‘명예훼손과 IIED는 그 요건이 상이하므로,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IIED에 의한 책임까지 면책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만약 자신들이 절대적인 면책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Falwell은 공적 인물(public figure)로서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가 적용되는바, Falwell은 이 사건 광고에서 피고측의 ‘현실적 악의’와 ‘허위 사실의 적시’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

INTERVIEWER : Did you ever try it again?

FALWELL : Sure, . . . lots of times. But not in the outhouse. Between Mom and the shit, the flies were too much to bear.

INTERVIEWER : We meant the Campari.

FALWELL : Oh, yeah, I always get sloshed before I go out to the pulpit. You don't think I could lay down all that bullshit sober, do you?

28) 위 삽화는 박철 부장판사의 ‘표현의 자유에 의한 명예훼손의 제한과 관용’ 17면에서 재인용하였다.

29) Jerry Falwell v. Larry Flynt 797 F. 2d 1270 (1986); 1986 U.S. App. LEXIS 27744; 13 Media L. Rep. 1145

고들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일단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에 따라, 피고들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IIED 소송에서도 받는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의 취지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는데에 있지 않고, 원고가 입증해야만 하는 귀책사유(culpability)의 수준을 높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sup>30)</sup> 이러한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의 취지를 Virginia 주의 IIED 요건<sup>31)</sup>에 적용해보면, 그 요건 중 'the misconduct must be intentional or reckless'라는 요건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의도적인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New York Times* 판결에서의 헌법적인 요구도 충족한다고 보아 피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sup>32)</sup><sup>33)</sup>

다.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의 판단<sup>34)</sup>

연방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파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IIED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주의 법에 대한 수정헌법상의 한계와 관련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공적인 인물에, 그에게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의 눈에 추잡하고 불쾌해 보이는 패러디 광고에 의하여 초래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연방대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연방대법원은 *Gertz* 판결을 비롯한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견 표명의 자유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러한 비판은 필연적으로 합리적이거나 점잖지는 않고 때로는 공적인 인물들에 대하여 격렬하고, 신랄하며 때로는 유쾌하지 않은 날카로운 공격을 가하게 된다. ... 그러나 이러한 공적인 논쟁에서 허위의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상의 자유 시장을 통한 진실의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한 다음,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에 의하여 때로는 심지어 허위의 사실도 현실적인 악의가 없다면 자유로운 논쟁에서 불가피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헌법적 보호

30) 항소법원은 “허위임을 알거나, 진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with knowledge that it was false or with reckless disregard as to whether or not it was true)”에서 *New York Times* 판결의 주안점은, ‘faulsty’에 있는 것이 아니라, ‘knowledge... or with reckless disregard..’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31) Virginia 주법에서의 IIED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의 행동은 고의적이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The wrongdoer’s conduct was intentional or reckless.) 둘째, 그 행동은 일반적으로 수용된 도덕 및 관습에 반하는 것으로서 과도하고 참기 어려울 정도이어야 한다.(The conduct was outrageous and intolerable in that it offends against the generally accepted standards of decency and morality.) 셋째, 그 행동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There was a causal connection between the wrongdoer’s conduct and the emotional distress.) 넷째, 정신적 고통은 극심해야 한다.(The emotional distress was severe)

32) The first amendment will not shield intentional or reckless misconduct resulting in damage to reputation, and neither will it shield such misconduct which results in severe emotional distress.(수정헌법 제1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잘못된 행동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동 또한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33) 항소심이 위와 같이 *New York Times* 판결에서의 ‘actual malice’를 귀책사유(culpability)로 해석하여, IIED에서의 ‘intentional or reckless’와 동일시한 것에 대하여는 actual malice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 (Post, 같은 논문 612면) 위에서 살핀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actual malice’와 동일시하였던 IIED에서의 ‘intentional’ 요건을 ‘bad motive’로 취급하여, ‘actual malice’와는 엄격히 구별함으로써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을 인정치 않았다.

34) *Hustler Magazine v. Falwell* 485 U.S. 46; 1988 U.S. LEXIS 941; 14 Media L. Rep. 2281

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견 표현의 자유가 숨길 수 있는 공간은 공적인 인물로 하여금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과 더불어 그것이 현실적인 악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 광고는 IED로서 원고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한 악의적인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실제로 극심한 고통을 준 것이므로 명예훼손에서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논쟁에서 존경받지 못할 만한 많은 동기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들도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받아왔으므로, 그러한 불순한 동기가 다른 법 영역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의 목적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으나, 수정 헌법 1조는 공적인 인물에 대한 공적인 논쟁에서 그러한 결과-불순한 동기에 의한 표현행위가 규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인 만평거나 풍자자들은 그들의 작품이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입증되지도 아니한 채 그 손해를 배상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이 없다. ... 정치적인 만평은 조롱 또는 인신공격의 수단으로서, 그것이 정치인의 등을 두드려줄 때 만평으로서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벌칙과 같이 신랄하고 때로는 논쟁적인 것이다. ...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정치적 만평이 없다면 우리의 정치적인 논쟁은 더욱 불행했을 것임을 알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광고는 그 표현의 정도가 너무나 지나쳐서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적 만평과는 구별해야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이 사건 광고는 그 표현에 비추어 볼 때, 기껏해야 전통적인 정치적 만평의 먼 사촌 정도도 안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공적인 논쟁에 별다른 해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적인 논쟁에서의 의견 표명에 그러한(Outrageousness) 제한이 있는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으며, 비록 경멸적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과도함이 그러한 제한을 설정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논쟁에서는 ‘Outrageousness’는 내재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배심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기호나 시각, 또는 특정한 표현에 대한 혐오감에 근거하여 책임 유무를 결정하게끔 만들 것이므로 이러한 기준은 비록 그 표현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부정해온 우리의 전통과 조화될 수 없다.”

이어 연방대법원은 “우리는 이 사건 광고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현실적 악의에 의하여 적시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공적인 인사는 IED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짓는다”라고 한 후, 원고가 공인이고 또한 배심이 이 사건 광고가 합리적으로 사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음을 지적한 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다.”라고 판시하였다.

#### 4. Falwell 판결 이후의 미국 법원의 판결 태도

가.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1990)

(1) Falwell 판결로부터 2년 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법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판결을 하게 되는 데,<sup>35)</sup> 위 판결은 Gertz 판결 이래로 내려온 수정 헌

35) 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판시 내용에 대하여는 전원열, 같은 논문 208~212면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법 1조에 의한 의견 면책 특권을 제한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적인 논쟁에서의 의견 표현 행위가 비록 그 표현이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한 위 Falwell 판결에서의 판단은 달라져야만 하는가?

(2) 그러나 위 Milkovich 판결은, Gertz 판결 이래로 많은 하급 법원들이 '의견'이라는 이름이 붙은 표현에 대하여 모두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서, 수정헌법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 어떤 표현이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허위 또는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가'에 입각한 판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위 판결의 취지는 기존의 의견에 대한 헌법상 보호수단,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는 의견 표명에 대한 보호 및 현실적 악의의 범리에 의한 보호 등에 의하여도 공적인 논쟁을 위한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으므로, 굳이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표현에 대하여 수정 헌법 제1조에 근거한 면책특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6)</sup>

"Greenbelt Cooperative Publishing Assn. Inc v. Bresler (1970)<sup>38)</sup>, Carries v. Austin (1974), Falwell v. Hustler Magazine (1988)의 일련의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개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다'라고 인정된다면 보호를 받을 것이고, 이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공적 논쟁에 크게 더해져 온 상상적 표현이나, 수사적 과장이 없다는 이유로 공적인 논쟁에 장애가 생기지는 않을 것임을 확인해준다."<sup>39)</sup>

#### 나. Milkovich 판결 이후의 판결

Falwell 판결 이후 공적인 대상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행위로 인한 IIED에 대하여 정면으로 판시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Supreme Court of Idaho는 Edgar J. Steele v. The Spokesman Review, Cowles Publishing Co. 판결에서, 원고의 IIED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Falwell 판결을 인용하며 허위 사실의 적시 및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였다.<sup>40)</sup> □

36)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497 U.S. 1 (1990)

37) 위 판결의 번역문은 한기택, "평의의 의견,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 대법원 판례해설(1999 상) 291면 이하에 소개되어 있다.

38) 부동산 개발업자인 원고가 학교 건설을 위해 그의 땅을 매수하려는 시의회에 대하여 그 거래조건으로서 자기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내건 것에 대하여 피고 신문이 원고의 그러한 협상 태도는 공갈(blackmail)이라고 비난하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위 기사에서 자신이 공갈죄를 범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제소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그 문맥상 어느 누구도 원고가 공갈죄를 범했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고, 이는 단지 원고의 협상태도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사용된 과장(hyperbole)이고 강렬한 특성묘사(vigorous epithet)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비난은 헌법상 보호된다고 판시하였다. (판용상, 같은 책 463면)

39)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Bresler-Letter Carriers-Falwell line of cases provide protection for the statements that cannot reasonably be interpreted as stating actual facts. Falwell, 485 U.S., at 50. This provides assurance that public debate will not suffer for lack of 'imaginative expression' or the 'rhetorical hyperbole' which has traditionally added much to the discourse of our Nation." 이에 대하여 "위 판결은 의견의 표현으로서 보호받는 영역은 '상상적인 표현', '수사적인 과장' 또는 '강렬한 특성 묘사'에 국한된다고 판시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박용상, 같은 책 470면)가 있으나, 위 판결 원문에 비추어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위 판시부분은 상상적 표현이거나, 수사적 과장의 경우에만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서 면책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상적 표현이나 수사적 과장으로 볼 수 없더라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면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보인다.

40) Edgar J. Steele v. The Spokesman-Review, Cowles Publishing Co., 61 P. 3d 606; 2002 Ida. LEXIS 194; 31 Media L. Rep. 1412.

# 프라이버시 침해와 출판 사전금지

— 일본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

한 영 학

일본 홋카이가쿠엔(北海学園)대학교 법학부 교수

## I. 머리말

도쿄지방법재판소는 2004년 3월 16일, 거물급 정치인 다나카 마키코(田中真紀子)의 장녀의 사생활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주간지 슈칸분순(週刊文春)에 대해 출판 금지처분(injunction)을 내렸다. 이에 슈칸분순의 발행사인 분게슌슈(文芸春秋)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 재판소는 3월 19일,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을 각하시켰다. 그 후 동 가처분을 둘러싼 보전항고심에서 도쿄 고등재판소는 3월 31일, 가처분을 타당하다고 한 도쿄 지방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하고 장녀측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이 결정에 대해 장녀측이 최고재판소에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도쿄고등재판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일본에 있어서 발매전의 잡지에 대해 출판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번 사태는 공전의 법리공방을 낳는가 하면 최근의 주간지의 보도행태에 적잖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법리공방은 다양한 각도에서 전개되었으나, 그 초점은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한 출판 사

전금지의 타당성문제로 집약된다. 다시말해,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점으로서 출판금지의 허용근거와 범위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이번 사태를 소재로 하여, 일본에 있어서 출판 사전금지의 근거와 요건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명예권에 근거한 사전금지 요건에 비추어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한 사전금지의 실제적 요건성에 주목하기로 한다.

## II. 일련의 재판소의 결정

### 1. 사건의 개요와 도쿄지방법재판소의 가처분결정

슈칸분순은 2004년 3월초, 전 외상이자 현역 국회의원인 다나카 마키코의 장녀(이하, A)가 부모의 맹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인 B와 결혼하여 미국에서 거주하였으나 불과 1년도 경과하기 전에 이혼하여 귀국해 있는 사실을 탐지하고, 취재팀을 구성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당사자를 통한 취재를 계획하였다. 슈칸분순은 A에 대해서는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직접취재에 실패하고, B씨에 대해서도 수차에 걸쳐 취재신청을 하였으나 본인의 거절로

이 또한 실패하게 된다. 이때부터 슈칸분순은 주변 인물로 취재방향을 돌리면서 3월 13일, B의 부모에 대한 취재를 통해 이혼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그 상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접하지 못했다.

14일, 슈칸분순의 일련의 취재활동을 감지한 A는 대리인을 통해 담당기자에게 전화를 해 A는 순수한 사인이므로 A에 대한 취재활동과 기사게재는 A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동일 취지의 항의팩스가 슈칸분순의 편집부로 전달되었다. 이에 대해 슈칸분순은 A의 조부가 전 수상(다나카 가쿠에)이었고, 어머니(다나카 마키코)가 전 외상이었으며, 아버지(다나카 나오키)가 현역 참의원 의원이어서 A를 전혀 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점, A와 그 배우자 B는 다나카 집안의 정치적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인 점 등을 들어 A 본인에 대한 직접취재를 재차 의뢰했다. 그리고 B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사는 취재 취지서를 보내어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15일, A의 대리인과 B의 대리인으로부터 각각 기사를 게재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팩스가 슈칸분순의 편집부에 전달된다. 그러나 이 날 편집부는 그 동안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3월 25일호(3월 17일 발행 예정)에 기사게재를 결정하기에 이른다. 이에 잡지 발매전 날인 16일, A와 B는 각각 도쿄지방법원에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이유로 출판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이하, '분순사건').

도쿄지방법원은 16일, 양 당사자를 불러 즉시 심리를 거쳐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슈칸분순 3월 25일호의 당해 기사를 절제 또는 말소하지 않고 이를 판매하거나 무상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출판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분이 분계순주측에 송달되기 전에 동호 77만부 중 74만부가 유통점 등에 출하된 상태로,

분계순주는 급거 나머지 3만부의 출하를 중지했다. 한편 동 재판소의 결정으로 전국의 각 유통점에서는 슈칸분순 동 호의 판매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도서관에서는 동호의 열람 및 복사 등에 제한을 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 2. 도쿄지방법판소의 가처분 추인결정

분계순주측은 도쿄지방법판소의 출판금지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3월 17일, 도쿄지방법판소에 보전의의(保全異議) 신청을 했다. 이로써 가처분명령을 내린 재판관(1인) 이외의 3인 재판관의 합의체에 의한 심리가 열렸다.

도쿄지방법판소는 19일, 분계순주측의 이의신청을 각하시켜 출판금지를 명한 동 재판소의 가처분명령을 추인했다. 동 재판소는 프라이버시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 침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은 명예보호보다도 한층 높다고 전제하고, 기사의 A가 공무원 또는 선거 입후보자나 이들에 준하는 입장이 아니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공익을 도모하는 목적도 없다고 판단했으며, 보도내용은 순수한 사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출판될 경우 중대하고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하여 사전금지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시했다.

한편 A측이 분계순주가 18일까지도 당해 잡지의 판매를 계속한 것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처분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로서 분계순주측에 제재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동 재판소는 중개점에 출하된 71만부는 판매행위가 완료되었으므로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분계순주측의 가처분에 대한 결정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분계순주측이 차후에 남은 3만부를 판매할 경우에는 A와 B에 대해 각각 하루에 137만엔의 제재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

을 내렸다.

### 3. 도쿄고등재판소의 가처분 취소결정

분게슈슈츄는 3월 20일, 도쿄지방법재판소의 결정(19일)에 대해 이를 당해 기사뿐만 아니라 전 기사에 관련되는 표현의 자유의 압살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는 결과라고 하여, 이에 불복하고 도쿄고등재판소에 보전항고(保全抗告)했다.<sup>1)</sup>

분게슈슈츄는 보전항고 청구서에서, “전 외상(다나카마키코)의 정치적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A는 분명히 공인으로, 공익성의 유무는 기사의 대상이 사인인가 아닌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내용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슈칸분슈의 기사는 공익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도쿄고등재판소 민사 5부는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및 증거제출을 통한 심리를 거쳐 31일, 도쿄지방법재판소의 출판금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슈칸분슈의 역전승소를 결정했다. 동 재판소는 당해 기사는 공익성이 없어 A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사전 출판금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사전금지를 부정했다.

이로써 분게슈슈츄는 슈칸분슈의 3월 25일호의 미출하분 3만부의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고, 간접명령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분게슈슈츄측이 중개점으로부터 추가출하의 요청이 없어 미출하분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밝히자, 당초 도쿄고등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고등재판소

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 헌법위반을 이유로 최고재판소에 불복신청을 하는 절차로, 고등재판소의 결정 또는 명령의 고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를 할 것으로 전해진 A측이 본 가처분에 관한 재판을 계속할 필요성과 실익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특별항고를 단념함으로써, 본 건에 관한 도쿄고등재판소의 보전항고심이 최종 확정되었다.

## Ⅲ. 사전금지의 근거

### 1. 개 관

일본에 있어서 인격권의 침해를 둘러싼 구제와 관련하여 그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구제하는 수단으로서 사전금지청구권은 민법규정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손해배상(민법 제709조, 710조) 및 사죄광고를 포함한 원상회복조치(민법 제723조) 등 사후적인 구제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물권에 대하여 그 방해배제 또는 예방을 위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설상 인격권에 대해서도 그 침해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실제로 판례로서도 이를 인정한 케이스가 존재한다.

금지청구 등 구제방법의 근거로 사용되는 인격권의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인격부시에 대한 반성과 당시 서독의 일반적 인격권의 발전 등 제외국의 인격권 개념의 전개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sup>2)</sup> 실정법상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나, 주로 신체,

1) 보전이의 또는 보전취소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보전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보전법 제41조).

2) 大塚直, “人格權に基づく差止請求-他の構成による差止請求との関係を中心として-”, 『民商法雑誌』, 116卷4・5号, 1997年, pp.506-507.

건강, 자유, 명예 등 인격적 속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제3자에 의한 침해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이익의 총체로 이해되고 있다.<sup>3)</sup>

금지청구는 학설상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등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 방해의 배제와 예방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하에, 배타성을 가지는 물권과 유사한 절대권 내지 지배권으로서의 인격권의 속성에 주목하여 방해배제·예방청구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sup>4)</sup> 그 외 금지청구의 근거로는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이와 같은 청구권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인격권 등의 절대권으로서의 권리구성과 불법행위 구성의 이원설을 채용하는 견해도 있다.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출판 사전금지를 긍정하거나 인정한 판례로는 종래로부터 일부 하급심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모델 케이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홋포저널(北方ジャーナル)사건' 최고재판소 판결<sup>5)</sup>이다. 최고재판소는 판결에서 출판 사전금지의 근거와 관련하여,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가치인 명예권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적으로 발생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생각건대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

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함께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근거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권, 성명권, 초상권 등 타 인격권의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인격권 및 인격적인 이익은 그 명확한 범위가 설정된 것이 아니어서 개별사안별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홋포저널 사건' 최고재판소판결의 취지는 그 후 판례에서도 답습되고 있다.

## 2.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한 사전금지와 '분순사건'

'분순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프라이버시침해를 근거로 출판 사전금지가 허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판례·학설상 프라이버시가 법적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이론이 없으나, 프라이버시의 권리개념은 불명확하고 통일적인 이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sup>6)</sup> 그래서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와 같이 사죄광고 등의 원상회복조치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가 준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갈리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근거로 한 금지청구권은 '연회 후(宴のあと)사건' 판결<sup>7)</sup>의 방론(傍論)에서 긍정된

3) 五十嵐清, 『人格權論』, 一粒社, 1989년, p.7.

4) 山中俊雄, 『債權各論講義(第6版)』, 有斐閣, 1994년, p.509.

5) 이는 홋카이도 지사선거에 입후보를 예정하고 있던 아사히 카와시 전 시장이 명예권의 침해예방을 목적으로 자기를 비방, 중상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월간지 '홋포저널' 1979년 4월호에 대해 인쇄제본 단계에서 동 잡지사 대표자 및 인쇄회사를 체무자로 하여 인쇄, 제본 및 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 등의 가처분을 청구하자, 삿포로지방법판소가 이를 인용하고 가처분을 발령하여 집행한 바, 동 가처분의 신청인 및 재판관과 집행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동 잡지가 가처분의 신청인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 2심에 이어 최고재판소에서도 출판금지가 긍정되었다(最大判 1986.6.11 民集40·4).

6) 판례경향을 보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적 사항을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이익', '사생활의 평온의 이익' 등으로 설명되었다. 그리고 최고재판소는 이들 이익을 프라이버시로 명기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미리(柳美里)사건' 판결(最判 2002.9.24)에서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7) 미사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소설 '연회 후'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하여 아리타 하치로(有田八郎) 전 의상이 작자와 발행사인 신초샤(新潮社)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東京地判 1964.9.28 下民集15·9).

후 보전소송(가처분)의 형태로 제기된 몇몇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주로 소명(疎明)부족으로 신청이 각하되고 있는 추세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근거로 사전금지가 청구된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영화 "에로스+학살(エロス+虐殺)" 상영금지 가처분사건'<sup>8)</sup>을 들 수 있다. 도쿄지방법판소는 인격권의 침해로 간주하면서도, 고도의 위법성이 없는 것을 이유로 상영금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sup>9)</sup>을 내렸고, 이의심(도쿄고등재판소)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금지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본 건은 개별적 비교형량론에 의해 상영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sup>10)</sup> 사전금지의 근거로서 제1심은 인격권설이, 항고심은 불법행위설이 채용되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사전금지가 인정된 최근의 사례로는 '유미리(柳美里)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sup>11)</sup>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최고재판소는 '훗포저널사건' 최고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인용하여 인격권에 근거하여 출판 사전금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프라이버시침해 고유 문제와 금지청구에 대한 면밀한 논의는 특별히 전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순수하게 프라이버시침해만을 이유로 출판이 금지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분순사건'이 도쿄고등재판소의 보전항고심(保全抗告審)에서 각하되긴 하였으나 도쿄지방법판소가 사전 출판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동

재판소의 가처분결정은 근거가 면밀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나, 동 재판소의 이의심(異議審)이 "프라이버시권은 충분히 논의가 성숙된 권리는 아니나, 물론처럼 배타성을 지닌 권리로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점, 도쿄고등재판소의 보전항고심이 프라이버시침해의 내용·태도에 비추어 사전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점 등은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구제에 상당한 이해를 표시한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이 명예권처럼 인격권에 속하는 것으로 그 침해여하에 따라서 사전금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전금지의 요건성에 있어서는 양자의 구별이 요구된다 하겠다.

## IV. 출판 사전금지의 요건

### 1. 개 관

출판 사전금지는 재판소가 인격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표자체를 금지시키는 일종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조치 등 사후구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피해구제 수단이다.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이 일단 사적 사실이 공개된 후에는 사후적 구제로는 완전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므로, 사전금지

8) 부인해방운동가이자 사회주의운동가로 알려진 전 중의원 의원 가미지카 이치코(神近市子)가, 요시다 요시시게(吉田喜重) 감독의 영화 '에로스+학살'이 가미지카와 사회주의자 오스기 사카에(大杉栄)와의 연애관계의 갈등 등을 그려,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프라이버시권)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 상영금지를 청구한 사건.

9) 東京地決 1970.3.14 判時586.

10) 東京高決 1970.1.13 判時587.

11) 원고는 재일교포 유미리의 처녀소설 '石ノ涙<魚(新瀬1994.9 게재)'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을 모델로 하여 자신의 경력, 병력(안면의 추한 종양 등)과 아버지의 경력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유미리와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출판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東京地判 1999.6.22 判時1691)과 2심(東京高判 2001.2.15 判時1741)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 이어, 최고재판소도 원심과는 다른 논법을 취하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월간지에 게재된 소설의 출판을 금지시켰다(最判 2002.9.24 判時1802).

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표현의 공표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상의 자유시장' 원리에 반하며, 검열로 연결되거나 표현행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적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인격권의 헌법적 이념(제13조 행복추구권)과 사법(私法)상의 보호·구제의 요청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는 '우월적 지위(preferred position)'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과, 헌법 제21조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표현행위의 사전억제는 금지되며 검열 또한 명문상 금지(제21조 제2항)된다는 점<sup>12)</sup>을 고려할 때, 표현행위의 사전금지는 명확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점은 '호포저널사건'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다.<sup>13)</sup>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사전금지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은 무엇인가. 그 법률적 요건성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하에서 판례·학설상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판례에서 채용되거나 음미된 주요 학설로는 비교형량설(개별적 비교형량설, 유형별 비교형량설), 현실적 악의설 등을 들 수 있다.<sup>14)</sup>

우선 명예권에 근거한 사전금지에 대해서는 전술한 '호포저널사건' 최고재판소판결에서 중요한 요건이 제시되었다. 최고재판소는 "출판물이 공무

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 비판 등에 관한 것인 경우는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근거하여 가치분에 의해 당해 출판물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 등을 사전에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①그 출판물의 표현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오직 공익을 도모할 목적의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②피해자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속하는 민주제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이 거의 일체의 주의주장 등을 표명함과 동시에 이들 정보를 상호간에 수령할 수 있어서, 그 중에서 자유로운 의견 하에 자기가 정당하다고 믿는 것을 채용하는 것으로 다수의견이 형성되고 관련과정을 통해 국정이 결정되는 것을 그 존립의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공적인 사항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특히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시했다. 여기서 제시된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①과 ②의 요건은 개별적 비교형량설이 아니라, 유형별 비교형량설로 공공적인 사항(공인에 대한 평가, 비판 등의 사항)에 대한 표현행위의 사전금지의 요건으로 평가된다. 한편 본 건에서는 일부 재판관의 견해로서 현실적 악의설과 공정한

12) 다만 사전억제와 검열과의 관계에 대해 종래의 판례·학설은 양자의 관계를 엄밀히 구별하지 않고 거의 동일시하였으나, 오늘날의 다수설에 의하면 사전억제라 함은 '표현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공권력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억제하는 것 및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시 될 수 있는 영향을 표현행위에 끼치는 규제방법'이라 정의하고, 그 근거를 헌법 제21조 제1항(표현의 자유 일반조항)에서 도출하고 있으며, 검열이라 함은 '사전억제 중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제적 효과가 강한 것, 즉 표현행위에 앞서 행정권이 그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제21조 제2항)은 그 주체가 행정권을 지칭하므로, 재판소에 의한 표현행위의 사전금지는 검열이 아니며, 제 21조 제1항의 분제로서 일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비판론도 존재한다. 다수설에 대한 대표적 견해로서, 佐藤幸治, 『憲法(第3版)』, 青林書院, 1995년, p.519 참조.

13) 사전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대해 표현물이 자유시장에 나가기 전에 억제시켜 그 내용을 독자, 시청자에게 도달시키는 길을 막거나 그 도달을 늦추어 그 의의를 잃게 하며, 예측에 의거하므로 광범위하게 미치기 쉽고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실제상 억제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므로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14) 大塚直, "人格権に基づく差止請求-他の構成による差止請求との関係を中心として-", 『民商法雑誌』, 116卷4・5号, 1997년, pp.539-540.

논평설도 주장되었다.

## 2.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한 사전금지의 요건성

다음으로 '훗포저널사건' 최고재판소판결에서 제시된 요건, 즉 명예권에 근거한 사전금지 요건을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한 사전금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상으로는나 실무적으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학설상으로는 '훗포저널사건' 판결을 대체로 용인하는 학설, 손해회복의 곤란성은 특히 중시하지 않으나 '손해행위의 위협의 긴급성, 손해의 중대성, 당해 표현내용에 정당한 공중의 관심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을 중심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학설이 있는가 하면, 다케다 미노루(竹田稔) 판사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표현의 자유와의 조정법리를 참작하여 명확한 판단기준(①표현행위의 내용이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닐 것, ②표현행위가 현실적 악의에 의해 행해진 것일 것)을 제시하고 있다.<sup>15)</sup>

실무상으로는 전술한 '영화 "에로스+학살" 상영금지 가처분사건'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건의 도쿄지방법판소 판결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사전금지 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해서는 논의가 존재하나,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인 점을 감안하여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정신을 고려하여, 권리침해에 고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금지청구를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고도의 위법성설을 채용하고 있으나, 이의심(도쿄고등재판소)은 "금지청구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배제 내지 예방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방치됨으로써 입는 불이익의 태양, 정도와 침해자가 위의 조치에 의해 그 활동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에 의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하여 개별적 비교형량설을 채용하고 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침해 등을 이유로 사전금지가 인정된 최근의 사례인 '유미리사건'의 최고재판소판결은, 기본적으로 원심(도쿄고등재판소)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 침해행위의 금지청구가 인정될지는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인물의 사회적 지위나 침해행위의 성질에 유의하면서 예상되는 침해행위에 의해 받는 피해자측의 불이익과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의해 받는 침해자측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침해행위가 명확히 예상되고 그 침해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중대한 손실을 받을 우려가 있고 그 회복을 사후에 도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침해행위의 금지를 긍정해야 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훗포저널사건'판결의 판단기준에 준한 개별적 비교형량론의 입장에 서있다.

그 외 '훗포저널사건' 최고재판소판결이후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해 사전금지를 인정한 하급심을 보면 본 건 판결에서 제시된 요건론(전술한 ①과 ②)을 답습한 사례, ①과 ②로부터 '표현내용이 진실하지 않음'의 부분을 제외하고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 사례, 본 건 판결의 요건론에 의거하지 않고 사생활의 평온을 향수하는 이익의 침해와 회복곤란한 손해의 요건을 요구한 사례 등이 있다.<sup>16)</sup>

15) 竹田稔, 『プライバシー(侵害と民事責任), 判例時報社, 1998년, pp.232-234.

16) 山川洋一郎, 『プライバシー(侵害と差止請求), 竹田稔・政男編『名譽・プライバシー(保護関係訴訟法), 青林書院, 2001년, pp.256-260.

### 3. '분순사건' 과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한 사전금지의 요건성의 검토

'분순사건'의 도쿄지방법판소의 가치분결정은 명확한 요건론이 제시되지 않았는 바, 이하에서는 동 재판소의 이의심과 도쿄고등재판소의 보전향고심을 토대로 사전금지의 판단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본 건의 이의심은 "본 건처럼 주간지의 기사에 의한 침해행위의 경우에는 출판개시로부터 단기간내에 판매가 종료하므로, 판매개시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도 금지를 통해 일정한 구제를 도모할 여지가 있는 소셜 등에 의한 침해와는 달리 사전금지를 인정하지 않는 한 구제방법이 없는 특질이 있다.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한 출판물의 사전금지에 있어서, 명예권에 근거한 출판물의 사전금지에 관한 '훗포저널사건' 최고재판소판결보다 엄격한 요건으로 임할 이유는 없다"고 전제하고, A를 사인으로 보아(공무원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아니고 과거에도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자가 아니며 이에 준하는 입장에 있는 자라고 할 이유도 없다), 그녀의 사적 사실에 관한 본 건 기사는 ①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②오직 공익을 도모할 목적의 것이 아닌 것이 명확하며, 슈칸분순의 매체적 전파력과 보도의 태양에 비추어 기사에 의해 A는 ③중대하고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하여 사전금지를 인정했다. 특히 ③과 관련하여서는 본 건 기사로 A등이 입는 불이익과 출판금지로 분게슈나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면, 표현의 가치는 프라이버시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전향고심은 이의심이 제시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인정하는 세 요건을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본 건 기사가 상기 세 요건을 구비하는지 순차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①과

②에 대해서는 이의심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으나, ③에 대해서는 "기사의 내용 및 표현방법은 A 등의 인격에 대한 비난 등의 마이너스 평가를 동반한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하여, 이의심과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그 위에 보전향고심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체계의 존립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헌법상 가장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권리이다. 출판물의 사전금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며, 이를 인정함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대응이 요구된다. 기사는 A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당해 프라이버시의 내용·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전 금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A측에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상과 같이 보전향고심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본 건의 사전금지 청구권을 부정하였으나, 사전금지의 요건에 대해서는 '훗포저널사건' 최고재판소판결의 판단기준을 준용한 이의심을 지지한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한 사전금지의 요건을 명예권의 그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사전금지에 있어서 개별요건 적용의 타당성도 논의의 대상이다.

우선 사전금지의 요건성론에 있어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은 동일한 인격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의 대상 및 사후구제의 가능성을 달리하므로, 사전금지의 구체적인 요건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명예는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프라이버시는 사적 사항을 권리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사죄, 정정, 반론 등의 원상회복조치로 일정한 구제가 가능한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는 그 내용이 진실이면 진실일수록 일단 공개되면 사후적 구제가 불가능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사전금지의 요건성을 동일

시하는 것은 의문이 남으며, 적어도 전자에 비해 후자의 경우에 허들을 낮게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프라이버시권의 사전금지의 요건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명확한 설정과 엄격한 적용이 필수적이다.

프라이버시권의 사전금지의 요건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판례·학설이 존재하나, ①대상사항이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아 프라이버시에 속할 것, ②대상사항이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공공성)이거나 표현 내용 또는 표현방법이 정당한 것(공익성)이 아닐 것, ③대상사항의 공표에 의해 실해가 예상되며, 사후적 구제수단으로는 원상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간의 조화의 관점에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측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전술한 다케다 판사의 정리도 음미할 만 하나, 미국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면책요건으로 출발한 현실적 악의성 요건을 프라이버시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그리고 '훗포 저널사건' 최고재판소판결에서 제시된 진실성 요건도 프라이버시의 속성상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건의 이의심과 보전항고심의 사전금지 요건론은 불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요건론의 개별 요소문제로서 본 건에서는 이의심과 보전항고심 모두 공익성의 유무판단을 보도대상자의 사회적 지위(공인, 사인)를 기준으로 하여 본 건 기사의 공익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이들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른바 '월간 펜(月刊ペン)사건' 최고재판소 판결<sup>17)</sup>은 공익성의

판단에 대해 "사인(사인의 사생활의 행상(行狀)이라고 그 종사하는 사회활동의 성질 및 그를 통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로서 형법 제230조의 2의 제1항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건에서 A가 순순한 사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역대 정치가 가족으로서 그녀의 실체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의심과 보전항고심의 공익성판단에는 다소 의문이 남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역제력을 고려하면, 사전금지결정에 있어서는 사후구제상 위법성 조각사유(면책사유)에 대해 확립된 논범이상의 엄격한 적용이 요청된다 하겠다. 왜냐하면 민사구제가 손해배상이 원칙인 점에 착안하면, 당해 표현행위가 사후적으로 면책될 가능성이 없는 절박한 경우에 한해서 사전금지가 상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V. 결론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출판물에 대한 사전 금지처분이 문제가 된 '분순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일련의 판단은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사전금지의 근거와 요건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본 건은 최고재판소가 명예권에 대비되는 프라이버시권의 출판사 전금지의 요건성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나, 인격권침해를 근거로 한 사전금지의 실제적 요건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의의

17)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창가학회(創価学会) 회장이 그의 여성관계를 기술한 잡지 '月刊ペン' 1976년 3월호, 4월호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여 고소한 사건으로, 최고재판소는 명예훼손을 인정한 제1심과 제2심의 판단논리를 배척하여 파기하고, 도쿄지방법재판소로 돌려보냈다(最判 1981.1.16 刑集35·3).

를 가진다.

프라이버시가 권리나 인격적 가치나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으나, 최근 인격권으로서의 평가가 명료해지고 있는 만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근거로 한 사전금지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이념과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그 사전금지가 정당화될 수 있는 실체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명예권 등 다른 인격권과의 대비를 통해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고유의 사전금지의 요건론을 판례의 축적과 학설의 전개를 통해 정립해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매체의 특수성과 개별사안의 사전금지의 실효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본 건의 가치분결정 후 일

부 서점이나 도서관 등에서 본 건 기사 때문에 다른 기사조차도 열람이 제한된 점과 이미 본 건 기사를 게재한 잡지의 대부분이 출하되어 독자들의 액세스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일부의 미출하분에 대해 사전금지를 강제한 것의 문제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본고에서는 사전금지의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생략하였으나, 사전금지는 성격상 단시간 내에 결정이 내려지며, 또한 사전금지의 실체적 요건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므로, 표현행위에 대한 부당한 차단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도 실체적 요건에 못지않은 엄격한 운용이 요청된다 하겠다. □

# 인터넷 시대의 언론 영역과 언론중재

박 기 성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대국민홍보를 목적으로 지난 9월 17일 대구에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구 인터넷포럼 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기성 위원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종수 위원(변호사)의 사회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발표논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1. 문제의 제기

“언론”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부담없이 사용할 만큼 듣고 말하는 너무나 자연스런 일상적인 어휘로 정착되었다.

디지털 매체가 대중화 되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매체가 가상공간으로까지 확대되어 기존 언론과 인식의 상충이 일어난다. 기존 신문과 방송이 인터넷으로 연장되어 언론의 영역이 확장되면서도 가상공간에서의 신문 방송 또는 언론이 될 수 있는가에 이견이 제기된다. 디지털 기술에 기초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형성된 표현의 공간이 사이버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언론”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혼돈이 야기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신문은 언론이 될 수 없다는 논쟁이 가열되면서 언론의 영역 문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 언론의 실험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으로 인

정되어야 한다는 반론 제기와 함께 이제는 인터넷 언론, 또는 사이버 언론으로 공인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왜 언론이 되어야 하는지 타당성의 제시에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이제 “인터넷 언론”이라는 말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지만 어떠한 차원에서 언론으로 규정할 것이며 앞으로 언론 영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언론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언론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언론 영역이 달라진다면 언론 중재 역시 달라지기 마련이다. 언론 중재의 성격과 방법 역시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안에 착안하여 (1) 언론의 영역은 어떠한 상태로 계보화 되어 왔으며, (2) 인터넷 언론을 어떠한 근거에서 규정할 것이며, (3) 이러한 언론 영역 확장 시대에 대비하여 언론 중재 활동은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II. 생태구성의 관점

본 발제는 흔히 기존 접근이 시도해온 구조기능적 또는 역사적 접근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태구성적 관점을 적용한다. 전자가 가지는 한계는 보편성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가 가지는 상대적 고유성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 생태구성이란 모든 사회문화적 현상은 인간 생활과 함께 생명을 가진 상태로 지속 전송된다는 시각에 입각한다. 매체 역시 사회의 구성원이 개발하고 실용하는 정도에 따라 생명을 가지고 지속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언론, 출판, 정보 등 본 발제문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개념 역시 언어로서 의미의 계보화 내지 지속되는 상태로 생태가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 III. 매체의 계보

언론의 영역 설정을 위하여 먼저 언론, 출판, 정보의 관계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들이 매체를 통하여 상호 접합하고 있고 일정한 부분은 오해로 인한 혼돈이 야기된 점도 있기 때문이다.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언론의 영역 규정이 보다 원만하게 된다. 한국의 근대 언론 출판 정보는 모두 개화기 이후 매체를 통하여 성립되지만 개인 또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상당한 기간동안 각성이 늦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정보라는 말은 개화기의 외국 사조 수용과 함께 information이라는 말이 영문으로는 사용된 흔적이 있으나 일제가 “정보”라는 말을 만들어 일반화하는 1920년대가 되기 이전까지는 “통지” 또는 “사정의 전달” 등의 표현으로 모호한 상태로 있어 왔다. 신문 잡지 방송 등 대중매체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동안에

야기된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융합 시대에 언론상(言論相)의 설정 문제에 직면하면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고, 언론 관계 법제에서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IV. 서양의 speech, press, information 생태와 계보

우리 사회에 서양의 언론 출판 자유가 소개되고 헌법이나 사회 연구에서 소개 또는 제도화된 부분을 살펴 보면 “speech”는 “언론”으로, “press”는 “출판”으로 번역되고 있다. press는 그후 정기간행, 신문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한국의 언론 출판을 재검토해 보기 위해 먼저 서양의 사상적 구축 계보를 살펴보기로 한다.

서양에서 출판(press)이 제도화 해온 생태를 살펴보면 printing press, newspaper press, periodical press 등으로 계보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언론’으로 번역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된다. press가 무엇을 지칭하는가에 따라 대응하는 의미에 적합한 어휘로 번역해야 한다.

서양에서 freedom of speech와 freedom of press는 제각각 전통을 구축해오고 있으므로 양자를 모두 언론의 자유로 인식하고 번역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언론이라는 공통성은 내재하고 있지만 매체의 특성을 살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야 혼돈을 피할 수 있다. press는 정기간행물 또는 신문의 경우 opinion과 information을 동시에 내재하기 때문에 언론으로 단정해버릴 수는 없다. 신문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periodical press)은 편집에 의하여 언론이 성립되는 양식으로 언론의 기능은 내재하지만 언론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V. 한국 언론 출판 정보의 계보

언론의 규정을 위하여 먼저 당시 언론 개념의 활용을 계보화 해보기로 한다. “언론”을 언급한 근거는 이미 기층적으로 있어온 언론 개념의 활용과 개화기의 언론 개념. 그리고 영미의 speech, press와 대비가 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한문 활용에서부터 있어온 기층 언론과 개화기 이후 성립되는 근대 언론의 생태를 관찰해 보기로 한다.

개화기의 외래어 번역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회적 인식 간극 역시 대단히 컸음이 입증된다. speech, press와 신문잡지 간행의 제도화와 상호 계보 관계를 생태구성의 시각에서 재음미하면서 독립신문의 출판과 실제로 기사화된 언론 개념을 연관지어 분석해본다.

용례를 중심으로 추정해보면 개화기에 speech는 언론으로 press는 출판 또는 신문 출판으로 번역하였다. 서재필의 독립신문 역시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이 기사에서 입증된다. 서양의 speech와 press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이라는 말은 장구하게 통용되어온 어휘이다. 개화기에 speech 사상이 전래되는 과정에 언론으로 번역되면서 형식은 전통을 전수하고 본질은 서양의 근대 speech를 따르는 전환기적 생태변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동양에서 “언론”의 특성은 의사 표현 방법 중 가장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이다.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 중에서도 언론은 가장 정수성을 띤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서양에서 공공성을 띠는 speech를 언론으로 번역한 것은 기저의 인식론적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VI. 언론 피해 발생과 중재활동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사회 안에서 전부의 자유(freedom)를 이상적으로 향유하여 인간다움의 구현을 열망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사회 또는 공동체의 규모 안에서 자유를 실천하고 보장받기 위하여 협약과 공감대에 기초한 계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liberty)로 freedom 실천을 사회 내에서 보장받는다. 인간이 비록 이성을 가진 존재라 하더라도 완성형의 성숙 상태가 아니며 이로 인해 인간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확실성을 규정하고 규제하여 사회 내에서의 구성원 상호간의 자유 실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사회적 유대나 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서 매체가 필요하며 인간과 매체의 표현 사이에는 부단히 불확실성을 내재한다. 거대한 조직을 갖춘 매체의 표현이 공중 속에서 유포되고 이로 인한 개인의 자유나 인격이 침해당할 때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구제를 지원할 책임을 진다. 여기에 피해의 발생과 언론 중재의 성립이 타당성을 가진다. 언론 중재는 피해 공중으로서의 개인(또는 준하는 법인, 단체)과 언론사간 초래되는 비평형적 불확실성의 증폭 상태를 양자간 조정에 의하여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양자간에 야기되는 갈등이나 분쟁의 조정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표현자의 의사 구성 행위가 고의적 또는 우발적으로 당사자에게 훼손이나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된다. 중재는 표현자와 당사자간의 견해 조정에 의한 공동 합의의 도출과 상호 약속의 실천(반론, 또는 정정)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에 합일점에 도달하지 못할 때 중재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중재에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로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1)취재원에 대한 소극적/편향적 접근, (2)기자나 프로듀서의 선입관 내지 고정 관념, (3)기사 구성에서의 개인적 또는 조직의 언어 구사 스타일, (4)언론사에 누적된 다수 가치관, (5)취재에서 자료의 수집과 판단력, (6)편집과정에서의 비의도적 축소 등이다.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매체의 기사를 통하여 접하게 되고 적어도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의사 표현이 굴절되어 형평성이 배제되었다고 판단할 때 중재 요청의 가능성은 성립된다. 이러한 언론행위로 인하여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현행 중재 제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중재 기준을 설정한다. 첫째는 오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바로 잡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의 정정보도 요청이다. 둘째는 일방적 주장에 상응하는 대안으로서의 균등한 의견 개진을 요구하는 반론보도 청구이다.

중재 제도의 운용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는 이재진 교수의 설문 연구 결과에서도 읽을 수 있다. 만족하는 수준이 34.6%, 불만이 34.8%이어서 중재 결과가 기대만큼 원만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중재의 불성립에 대한 정기간행물사의 과실 부인이 51.4%, 반론문 게재 거부 31.4%가 된다. 응답자의 82.8%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됨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 보장 환경과 걸맞게 중재 제도의 보다 탄력 있는 제도 운용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중재 조직 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근직이어서 중재위원회의 업무 확대와 중요성에 비하면 오히려 소극적 기능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장관직에 준하는 상근직으로 하여 조직의 업무 장악과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둘째는 중재 과정에서 절차의 강화이다. 현재 중재 처리는 대단히 소극적이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증빙 자료에 근거할 뿐 적극적인 실증 자료 수집을 독려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셋째는 언론의 피해를 소비자 보호로 확대하여 시정권고 기능을 보다 심화할 필요가 있다. 정기간행물을 언론으로 보는 입장을 정보, 의견으로까지 확대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시정 권고 활동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대중매체나 인터넷 매체의 표현물은 상품으로 간주되어 산업화 차원에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며 이러한 시각에 맞추어 중재 기능도 보완이 필요하다. "시정 권고" 보다는 "윤리 준수 권고"로 규정하는 착안을 해볼 수도 있다.

넷째는 지역 사무소의 중재 홍보 활동 강화 대책 수립이다. 중재를 신청하는 다수의 신청인이 가지는 심리적인 두려움은 중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오해이다. 중재 기능과 절차에 대한 홍보와 병행하여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교양과 대중매체의 위상에 대한 논의도 병행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는 다중언론(인터넷 언론)의 피해 구제에 대비한 심도 있는 대책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 언론은 이제 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편집의 다양성, 프라이버시, 윤리,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중재 대책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 Ⅶ. 언론 중재 활동의 확대 규정

인간의 언어 문자 표현이 반드시 사회성에 충실하지만은 않아 원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신문

이나 방송이 높은 이상을 내걸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 정착한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지만 매체의 표현행위가 편집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표현될 때 사실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중으로서의 개인이 표현하는 의견이나 사실이 언어 문자 영상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구성될 때 부단히 거리감이 발생한다. 현재 언론 중재의 근거는 "언론 보도"라는 범위 내에 한정하지만 이를 시대 인식에 맞게 확대 해석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규정해온 법적 용어도 언론중재 이전의 모범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 Ⅷ. 결 론

본 발제는 공동 논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착안하여 구성되었다. 첫째는 언론이 우리 사회에 대중적으로 정착한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당한 의미의 편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우리의 언론 출판 정보의 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있다. 신문 방송 등과 같은 대중매체 중심으로의 인식 편향은 공중이 의견 표현을 하는 자유, 즉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 위치를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롭게 조성되는 인터넷 중심의 표현 행위를 언론으로 규정짓는데도 상당한 혼돈이 야기될 수 있다. 매체는 공학기술의 개발에 따라 제5매체인 디지털 다중매체로까지 개발되어 왔고 언론 양식은 매체의 계보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언론의 어휘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성립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되는 공론장을 언론으

로 규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도적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부가가치 통신으로 규정하여 아직도 어느 영역까지 어떠한 시각에서 언론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제도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표현과 함께 윤리적 책임이 부가되는 보완이 필요하다. 인터넷 언론의 경우 제3, 제4매체의 언론 양식을 수용하여 독특한 제5매체로서의 언론 양식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 언론관이나 대중매체에 대한 시각을 연장하면서도 그 자체로서의 특성을 살린 언론 규정이 바람직하다.

셋째는 언론중재의 성격을 제3매체로부터 제5매체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시도와 이에 따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신문 방송 등 제4매체 표현 중심 언론 중재의 성격 규정은 상당히 축소지향적이며 매체의 특성과 새로운 매체의 발생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시대에 부합하는 중재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제도적 기능 문제의 확대 강화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언론 철학에 기초한 타당성의 확립에도 기여하게 된다. 제5매체 언론인 인터넷 언론의 규정의 연원은 제3매체의 디지털 시대에 따른 변용형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넷째는 외래의 언론 사조 수용과 개념의 번역 적용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speech와 press의 번역 혼돈, editing과 programming, information의 "보도"로 번역,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 journalism 등을 "언론"으로 번역하는 일은 제도적 기반에까지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하며 무엇을 언론으로 볼 것인가는 보다 구체적인 보완 논의와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은 언론 중재의 영역과 성격 설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토 론

사 회 김 중 수  
변 호 사

**사회자 :** 언론에 대한 명확한 개념 구분과 함께 언론으로서의 인터넷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 전문적인 발표를 해주시고 변화한 언론환경에 맞춰 중재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주신 박기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참석자 여러분들이 토론주제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제도 전반에 대해 갖고 계신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봉 (매일신문 정치부장) :** 최근 언론사가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기사에 독자들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두고 독자들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리플로 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린 글들 중 당사자에 대한 무차별적 비난이나 음해성 주장들이 많이 실리는 것을 볼 수 있어 인터넷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이러한 글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발표자 :** 인터넷은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등록을 하거나 하면 전혀 아무런 간섭 없이 운영이 됩니다. 인터넷을 공공영역으로 인정할 경우 인터넷에 대해 운영의 자유만 인정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비판기사를 올렸다가 여론화 되거나 논란이 일게 되면 게재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명 치고 빠지는 식의 운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윤리적, 사회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보도에

대한 정간불로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존 언론과 그 특성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언론으로만 불러줄 것이 아니라 책임도 물을 장치가 필요하며,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중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식 (계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새로운 언론영역으로 등장한 인터넷언론을 기반 언론이나 대중언론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positive list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배제하는 negative list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 언론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럽에서는 혐오언론(hatred speech)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을 언론으로 볼 것이냐와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영역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그리고 토론방을 개설한 경우 개설자와 토론 글을 게시한 자와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 인터넷을 언론으로 규정할 때 기존의 언론개념을 적용할 경우 혼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본질은 speech라고 할 수 있는데 매체의 변용에 상관없이 언론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통신은 사적인 영역이었지만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공적 영역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화 할 때에는 제도적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공적 토론방으로서 기능을 할 때는 언론으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토론방 개설자는 편집의 책임으로서 1차 책임을 저야만 하고 speaker는 2차 책임을 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혐오 언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사표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오언론에 대한 규제는 사회윤리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사회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적인 영역인 통신이 공적인 영역으로 전환되고 다수의 의사가 표현되는 인터넷은 언론으로 보아야 하며 인터넷은 대중에게 열려 있어 공적인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에게 유해한 측면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병갑 (변호사) :** 일부 인터넷 언론을 보면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여 정제되지 못한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라 하면 고도의 윤리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 자정 차원에서 자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논의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 지 묻고 싶습니다.

**발표자 :**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지나친 의사표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점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핵심 계층은 20~30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간에 균형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세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마구 생산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의 언론 풍토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인터넷 언론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총선거간 동안 일부 인터넷 사이트가 선거기사 심의를 받지 못하겠다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 개설자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양식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조속히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규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공론화 되었다고 보여집니다만, 기존 언론과의 대립·상충이 아니라 상보·육성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용수 (경운대학교 교수) :** 언론중재위원회는 돈과 시간이 부족한 민간인을 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국가기관이 책임을 면하고 자기 입장을 강변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02년까지 국가기관 중재신청 건수가 전체의 7.2%에 불과했는데 참여정부 출범 이래 그 비중이 31%에 달하고 있는 등 국가기관의 중재제도 이용건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중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처리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표자 :** 참여정부 들어 국가기관 중재신청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처리함에 있어 우선 기준은 없습니다. 국가와 언론과의 관계에서는 언론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보며, 언론과 개인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금년 들어 대통령께서 중재신청한 사건 9건을 포함하여 각 정부부처 등에서 신청한 건수가 역대 정부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중재신청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 주체별 구분없이 보도로 인한 피해여부만을 판단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등 공정하게 중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중재신청 사건의 평균적인 피해구제율이 약 65%인데 비해 국가기관 중재신청 사건의 경우 이보다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용주 (중재심의실장) :** 참고로, 금년 들어 대통령께서 중재신청한 사건 9건 중 계류중인 1건외에 총 6건에 대해 반론 등의 보도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희도 (우방여행사 대표) :**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하게 하려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선택권을 갖는데 언론보도는 매체를 불문하고 거의 똑같이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고 봅니다. 불량 만두소 사건, 대우건설 사장 자살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언론이 아무런 여과없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보도한 것에도 기인한 바 있는데 당사자가 중재신청은 했는지, 관련 당사자가 사과를 했는지,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정이나 반론을 보도할 때 지나치게 작게 보도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발표자 :** 중재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을 상대로 중재신청을 할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정정이나 반론시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는 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언론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게 예방하는 각성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작게 보도되어서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특정 사안에 관심있는 당사자나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100% 원상회복은 어렵더라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옥동철 (대구 평화방송 편성팀장) :** 일본의 후지 TV

편성 책임자가 자신들을 지나치게 상업주의화된 방송으로 비판을 가하자 자신들은 '언론이 아니라 방송'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만, 방송의 사회감시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감안할 때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익성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인터넷을 언론으로 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적 정서상 인터넷을 언론으로 규정할 때 언론중재위가 중재를 할 수 있는지, 다른 기관에서 이를 담당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발표자 :** 신문이든 방송이든, 혹은 인터넷이든 언론으로서의 체성을 갖추었다면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산업, 정보 측면을 강조해 고려하더라도 언론적 측면의 책임을 물어 양자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현행법상 인터넷을 정간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 체제 하에서도 이를 정간물로서 언론중재위가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없지 않습니다.

**위원장 :** 성황을 이루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깊은 연구로 언론의 계보와 반론권 발생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중재활동의 보완책, 지역사무소 활동강화, 인터넷언론의 피해구제책 등을 제시해주신 주제발표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중재위원회는 1998년에 이미 인터넷 매체를 중재대상화 할 수 있는 조문을 포함한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이번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하였으며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는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힘을 쓸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랍 보도와 인격권: '김선일 씨 피살' 과 언론보도

이진로

영산대학교 매스컴학부 교수

## 1. 피랍사건의 진행과 보도 과정

한국시간 6월 21일 새벽 이라크 무장 저항세력에게 납치된 김선일 씨가 살해 협박을 받는 비디오 테이프가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방영됐다. 김씨의 생명을 위협한 무장단체는 '24시간 내 한국군 파병 철수'라는 요구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낮 김씨의 석방 노력을 기울이되 추가 파병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고 이러한 내용은 언론을 통해 세계로 전달됐다. 정부가 파견한 협상대표단은 22일 오전 현지에 도착. 납치범인 알 자르카위 측과 협상을 시도했고, 당일 오후 6시경 알 아라비아 방송에서 한국인을 억류한 납치범이 요구 사한을 연장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그러나 김선일 씨는 당일 오후 살해된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현지 대사관에서 피살자의 사진을 통해 사망사실을 파악하고, 외교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23일 새벽 2시경이었다. 이즈음 알자지라 방송은 김선일 씨 참수 관련 비디오 테이프를 방영했다.

6월 25일 AP 통신이 우리 외교부에 한국인 피랍여부를 묻는 전화를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우리 정부가 밝힌 공식 피랍시점보다 훨씬 이른 6월 3일 AP통신이 외교부를 통해 실종자를 문의하였고, 외교부 실무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추가적인 확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았고 보도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김선일 씨가 재직하던 회사인 가나무역의 김천호 사장은 김씨가 실종된 5월 31일 이후 피랍 가능성을 파악했고, 현지 변호사를 통해 무장세력과 석방교섭을

진행했다고 말했지만, 피랍기간중 여러 차례 현지 한국대사관을 왕래하면서 납치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역시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이후 김씨 피랍 진상을 밝히려는 감사원과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고, 사건의 개요는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앞서 제기됐던 의문은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김선일 씨 피랍, 피살 사건은 이라크라는 분쟁지역에서 한국인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돌발적으로 진행된 이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김씨의 피살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그리고 피살 후 김씨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그리고 국민의 인권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인권과 관련된 사항

을 중심으로 김선일 씨 피랍, 피살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

## 2. 피랍 보도의 문제점

### 1) 정확성과 신속성의 갈등

먼저, 김선일 씨의 피랍, 피살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가장 큰 갈등은 정확성과 신속성 사이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전쟁으로 이라크 시민과 미국 군인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분쟁지역에서, 한국인이 희생 대상이 된 사건은 매우 중요하고 파급 효과가 큰 뉴스였다. 언론은 알자지라 방송에서 김씨의 억류 장면과 파병 철회 요구 조건이 방송되자 신속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언론의 신속한 보도는 해당 지역의 정확한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피랍 시점과 협상 과정 등을 비롯해 오보를 피할 수 없었다. 가장 큰 오보는 김선일 씨가 22일 피살된 채 발견되었지만, 23일자 조간 신문에 생존해 있다고 보도된 것이지만, 이는 23일 새벽 입수된 피살 사실을 신문 제작과 배달의 기술적 측면에

서 편집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계 통신사인 AP통신은 알 자지라 방송보다 적어도 17일이나 앞서서 김씨의 피랍 비디오 테이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지연시켰다. 긴급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미확인 보도도 뉴스 가치를 지닌다. AP

### 피랍보도의 경우 신속성과 정확성의 판단은 인질의 안전과 구출을 위한 노력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는 더 이상 취재를 시도하지 않았고, 비디오 테이프 공개를 지체한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AP의 무책임한 보도로 김씨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돌발적으로 발생한 피랍사건 보도에서 언론보도가 정확성과 신속성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피랍된 인질의 생명이 영향을 받는다. 국

내 언론의 경우 신속성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오보를 낳았지만, AP의 경우 정확성을 추구하던 중, 보도 자체를 지연시켜,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가져오지 못했다. 따라서 피랍보도의 경우 신속성과 정확성의 판단은 인질의 안전과 구출을 위한 노력에 기준을 뒤야 할 것이다.

### 2) 피랍자 신상 보도 범위의 갈등

인질사건에서 언론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 욕구의 충족과 정확한 보도가 중요하다. 하지만, 신상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이 납치범에게 전달될 경우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인질 상태인 김선일 씨의 신상보도에서 신중한 자세가 요구됐다. 김씨가 목사 지망생이고, 미국 군납 업체의 직원이라는 자세한 신상 내용이 미국에 적대적인 이슬람 저항세력의 극단적인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국가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기도 하는 등 종교의 영향이 매우 크다. 이교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타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이라크와 같은 분쟁지역에서 테러의 대상



이 되곤 했다.

뒤늦게 APTN이 보도한 초기 김씨의 억류 장면에 의하면 김씨는 스스로를 수학교사라고 밝히고, 기독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피랍자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유리하게 구성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로 인질로 잡혔던 일부 한국 목사들은 의사 등이라고 밝힌 덕분에 안전하게 석방되기도 했다.

이처럼 민감한 종교 관련 신상 정보를 방송이 6월 21일 '김선일 씨는 누구?' (KBS), '선교사 꿈꾸던 고학생' (MBC), '피랍된 김선일 씨, 동시통역사가 꿈' (SBS) 등의 보도를 통해 자세하게 공개한 것은 위기에 처한 인질을 더욱 곤경에 빠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실보도일지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김창룡, 2004).

한편, 김씨 피살 이후 피해자 가족에 관한 보도에서 일부 언론은 피해자의 복잡한 가족관계를 거론하며, 위자료를 둘러싼 갈등에 주목했는데, 이러한 보도는 피해자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요컨대 향후 언론은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 발생하는 피랍자의 종교 관련 신상 정보의 제공에서 인질의 생명을 고려하는데 우선하여 판단하고, 보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도에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

### 3) 공식적 대응과 비공식적 대응 보도의 갈등

김선일 씨를 납치한 테러리스트 집단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언론 보도 역시 공식적 입장과 비공식적 대응 사이에 갈등을 빚었다. 테러집단이 요구한 24시간 내 한국 파병 부대의 철수는 분명 무리한 내용이었지만, 정부가 밝힌 '추가 파병 변함 없다'는 내용은 타협을 전제로 하지 않은 공식적 조치였다.

일본의 피랍 인질 석방 노력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정부도 대응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일본은 지난 4월 8일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2명과 프리랜서 언론인 1명 등 3명이 팔루자 근처에서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되자, 테러리스트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

장을 보였다. 그러나 막후에서 납치범들과 접촉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일본 외상은 직접 알자지라 TV에 출연해 인질 석방을 호소했다. 아울러 일본 국민의 석방 탄원 사실과 피랍인 중 한 명이 철액암에 걸린 이라크 어린이를 일본에서 치료할 계획이라는 사진이 알자지라 웹사이트에 올려지기도 했다(김정명, 2004).

우리의 노력도 겉으로는 이와 유사했다. 정부의 파병원칙 불변 발표에 이어 외교부 장관이 알자지라 TV에서 석방을 촉구했다. 그러나 알자지라 웹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는 납치범의 요구 조건 거부나 또는 추가 파병 고수 등 피랍된 인질에 부정적인 내용으로 일본의 경우와 대조됐고, 결과도 일본과는 정반대로 인질의 회생을 가져왔다(김정명, 2004).

이러한 원인으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들 수 있지만, 우리 언론 보도 역시 이슬람 문화와 언론에 대한 전문가와 지식이 부재한 채 이루어졌음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즉 정부의 공식적 대응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더라도, 피랍된 인질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명을 위해 노력하는 보도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4) 희생양 보도와 영웅 보도의  
갈등

이번 사건의 보도 과정에서 언론은 김선일 씨를 때로는 사건의 발생에 책임을 져야할 희생양으로 비판하거나 또는 성실한 삶의 자세로 사회에 감동을 주는 영웅으로 찬사를 보내는 등 상반된 이미지를 형성했다.

흔히 피랍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자연적 재난을 보도하는 언론 보도의 특징 중 하나로 사건에 책임질 희생양으로 부각시키는 보도가 지적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가장 큰 가해자는 테러리스트였지만, 언론은 피살된 김씨를 비롯해 그 가족과 가나무역, 정부 등 범주에 따라서 피해자에 포함할 수 있는 주체를 표적으로 삼아 비판적 논조를 전개했다(최재영, 2004). 이러한 희생양 보도는 사건을 적절한 대응으로 이끌기 보다는 분풀이 식 감정 자극으로 이끌고,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아픔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영웅화 보도는 이와 반대의 방식이다. 건실한 기독교인 청년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라크로 건너가, 자선활동에도 적극 나선 애국가였음을 강조한 보도의 논리적 비약에 일부 독자는 괴리감이나 반감을 갖고, 복잡한 의혹과 진실 규명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도 했다(최재영, 2004).

이처럼 희생양 보도는 넓은 범

**피랍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주관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줄이고 객관적 사실 위주의  
보도로 전환해야**

위의 피해자에 대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독자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당사자들의 올바른 대응을 가로막는 점에서 그리고 영웅화 보도는 지나친 미화로 독자의 반감을 초래하고, 사건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지양(止揚)될 필요가 있다.

5) 선정적 보도와 이성적 보도의  
갈등

김선일 씨의 희생을 전하는 언론 보도에서 선정적 측면이 두드러졌다. 방송이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인질 상태의 김씨와 희생을 전후로 하여 김씨의 가족이 오열하는 사진 장면 등은 시청자와 독자의 감정을 자극하고, 분노감을 극대화했다.

그러나 통곡하는 가족의 모습을 클로즈업한 사진은 독자로 하여금 한편으로 감정의 아픔과 비통함을 느끼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능력 효과를 가져온다고 들뢰즈(Deleuze)는 지적한다. 또한 방송과 신문에서 전하는 김씨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심정을 밝힌 스케치성 기사는 시민의 감성에 호소할 뿐, 이성적 상황 파악과 대응으로 연결되기는 힘들다.

피랍 사건의 선정적 보도는 인질과 그 가족의 슬피하는 모습과 희생 장면 등 독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뉴스에 주목함으로써 피해자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존재한다. 또한 선정적 보도 방식은 사건에 대한 필수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기



보다는 자극적 소재를 중심으로 시청률 경쟁을 겨냥하기 때문에 주관적 입장에서 생성된 단편적 정보의 나열에 그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피랍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주관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줄이고, 객관적 사실 위주의 이성적인 보도로 전환해야 한다.

### 3. 피랍사건 보도의 기준

언론은 피랍사건의 보도에 있어서 테러집단이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영국 BBC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상자에 대한 영상 설명에는 신중을 기하고, 개인의 존엄을 배려하고, 통상 클로즈업된 영상은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과도한 고통에 대한 비참한 보도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인질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큰 소재는 다루지 않도록 하고 있다(이연, 2004).

또한 NHK의 방송프로그램 기준에도 '인권을 지키고 인격을 존중하며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손상하는 방송은 하지 않고'(1항), '범죄수

단이나 경과 등에 관해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고'(10항), '잔혹한 행위나 육체적인 고통을 상세히 묘사하거나 과도하게 암시하지 않는다'(11항)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연, 200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연(2004)이 만든 우리 언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 보완하여 새롭게 '피랍 사건 보도의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제적인 납치나 인질, 테러에 관한 언론 보도는 인질의 생명 안전과 구출 가능성을 중시한다.

둘째, 협상과정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하고, 납치범을 자극하지 않고,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셋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상세한 신상정보의 공개와 클로즈업된 사진 장면의 사용시 신중하게 대응한다.

넷째, 언론은 주관적 추측 보도와 선정적 보도를 자제하고, 객관적 사실 보도와 이성적 보도를 지향한다.

다섯째, 범죄 수단이나 사건의 경과 등에 관해 필요 이상의 상세한 보도를 피하고, 잔혹한 범죄 장면이나 자극적인 현장 보도는 자제하고, 특히 이들 내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경우 더욱 신중하게 보도한다.

이러한 피랍 보도의 가이드라인은 우리 언론의 보도 방식을 개선시켜, 피해자와 관련자의 인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방송 시청자와 신문 독자의 건강한 인식과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다.

### 4. 결론: 인권을 생각하는 보도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10조)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인의 인권은 돌발적 사건이나 그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침해받기도 한다. 김선일 씨 피랍과 피살 보도는 인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양면적 가치의 대립을 보여줬다. 이 글에서는 살펴본 다섯 가지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뉴스의 신속성과 정확성 사이의 갈등이다. 우리 언론의 신속한 보도는 오보를 낳았지만, 정

확성을 내세워 보도를 지연한 AP의 입장은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지연시켰다.

둘째, 인질의 신상 정보 제공 범위의 갈등이다. 시민의 정보 욕구 충족 측면에서 인질 개인과 가족의 정보를 자세하게 알렸지만, 그 중에는 인질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있었고, 위자료를 둘러싼 보도에서는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넘어서는 정보도 있었다.

셋째, 정부의 공식적 대응과 비공식적 석방 노력을 보도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이다. 우리 정부는 납치범의 파병 철회 요구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비공식적 석방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인질의 생명을 구했지만, 우리의 인질은 희생됐다. 이슬람 문화와 언론에 대한 사전 이해와 준비가 부족했고, 복잡한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하지 못했다.

넷째, 인질과 그 주변 주체에 대한 희생양적 시각, 또는 인질에 대한 영웅적 시각이 교차했다. 언론 보도가 때로는 김씨의 무모한 이라크 활동과 피랍 이후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했고, 때로는 이와

달리 김씨의 기독교 선교를 부각시키거나, 전쟁터에서 기업 활동에 종사하는 애국자로 묘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흥미 위주의 보도는 독자로 하여금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관심을 돌릴 수 있다.

다섯째, 주관적 입장에 바탕한 선정적 보도와 균형적 입장에 선 이성적 보도 사이의 갈등이다. 선정

### 인질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테러대응보도시스템을 정립해 나가야

적 보도는 시청자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화면과 소재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지만, 감정적 자극에 그칠 뿐 시민의 합리적 판단과 이성적 대응을 끌어내기는 힘들다.

이처럼 김선일 씨 피랍을 통해 나타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은 우리정부의 외교적 한계를 보여준 동시에 우리 언론의 보도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시민의 생명

을 지킬 수 있는 테러 대응보도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 인질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삼고, 협상 과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상은 신중하게 보도하고, 객관적 사실 위주의 이성적 보도를 지향하고, 범죄 내용의 상세한 보도를 자제할 것 등 다섯 가지 보도 기준을 제시했다.

### 참고문헌

- 강준민(2001). 『대중매체 법과 윤리』. 인물과사상사.
- 김근녀(2004). "클로즈업의 함정". 시민과 언론 2004년 56월호.
- 김정명(2004). "한국, 중동언론 흐름 파악 못해". 신문과방송 2004년 8월호.
- 김창룡(2004). "KBS 다양한 심층보도, SBS는 몰아치기". 신문과방송 2004년 8월호.
- 이연(2004). "피랍자 신상보도 자제해야". 신문과방송 2004년 8월호.
- 임병국(2002).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출판.
- 차형근 외(2000). 『언론과 명예훼손: 판례연구』. 나남출판.
- 최재영(2004). "피랍과 연계하며 정파성 드러나". 신문과방송 2004년 8월호.

# 튀는 기자가 없다

이 종 옥

서울중재부 중재위원,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흔히 지적되고 있지만 결코 치유되지 않는 한국 언론의 고질병은 ' 획일화 '이다. 신문사의 사세에 따라 면수가 다르고, 섹션의 타이틀이 다른 정도이다. 예를 들면, 백화점 스케치 기사와 사진도 똑같은 경우가 많다. 각사의 취재기자와 사진기자 이름만 다를 뿐, 사실도 주제는 차치하고라도 내용, 문체, 서술 방식마저 비슷하다. 그리고 '네거티브 기사'는 많은 반면, 밝고 훈훈한 기사는 드물다.

국장, 부장에서 평가자에 이르기까지 다른 신문과 같으면 안심하고 다르면 불안해한다. 편집국에 다음날 조간 가판이 도착할 때마다 이를 여실히 입증해주는 장면이 연출된다. 국장도, 데스크도, 기자도 '뭘 빠진 건 없나' 그것부터 챙긴다. 같은 기사라도 타지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썼나,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빠진 것이 있으면 즉시 확인해 비슷한 기사를 만들어낸다. 얼마나 황급했는지는 모르지만, 번듯한 신문의 사회면 머리기사가 다른 번듯한 신문의 사회면 머리기사(이른바 특종)를 토씨도 그대로, 심지어 잘못 환산한 환율도 그대로 '표절'하는 황당한 사건까지 생긴다.

## 고질병이 된 ' 획일화 '

' 획일화 '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튀는 기사'가 없다는 것이다. 튀는 기자가 없기 때문이다. 튀는 기자는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잠시 튀는 기자는 있어도 영원히 튀는 기자는 없다. 기사는 대부분 6하원칙(5W1H)에 따라 역피라미드형, 또는 피라미드형으로 작성되며, 그렇지 않은 기사는 데스크에 의해 빨간 펜으로 수정된다. 수습기자 교육 시간에 몇 가지 사항 (fact)을 제시한 뒤 기사를 써보라 하면 저마다 다르게 쓰고, 가끔 흥미로운 기사를 만나 유쾌해진다. 그러나 그렇게 쓰던 사람도 막상 수습이 끝나면 상투적인 기사를 쓴다.

한겨레신문 창간을 준비할 때였다. 경력기자에 지원한 한 기자의 다소 현학적인, 그러나 매우 흥미로운 글이 눈에 띄었다. 심사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겨레신문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한 선배와 함께 "지면의 다양성 등을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기자가 필요하다"고 적극 우겨 다행스럽게 채용할 수 있었다. 타지 기자는 물론 한겨레의 다른 기자와도 다른 기사를 쓴 그는 출공 왕파당하지 않고 '다소 튀는 기자'로 남았으며, 기자로서는 물론 문학평론가, 소설가로도

테뵈해 문명을 날리고 있다.

튀는 기자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신문사 입사 동기인 국흥주 기자이다. 그는 동아일보 체육부 기자로 일할 때, 당시 인기 절정이던 고등학교 야구와 월드컵 축구에 관한 장기 기획 기사를 박학함과 독특한 문체, 그리고 열의로 버무려 동아일보가 그야말로 '낙양의 지가'를 올리게 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동아사태' 이후에 동아일보사에 입사한 김기만 기자가 대통령 공보비서관 시절 월간시민체육 2002년 6월호에 쓴 글이 있다. "고교시절 동아일보에 국흥주 기자가 월드컵 열전을 연재할 때는 너무나 재미있어서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일 먼저 도서관에 뛰어올라가 신문을 읽고 또 읽고 나중에는 노트에 기사를 베껴 집에 가 외우다시피 하곤 했다."

일간지 지면이 8면 체제이던 시절인 74년 1월부터 6월까지 무려 80회에 걸쳐 상당히 튀는 연재물 '월드컵 축구 발자취'를 게재했던 동아일보는 발행 부수를 대폭 늘여준 기사를 1975년 3월에 130여명의 동료 언론인과 함께 내쫓았으니...

### 불친절하고 건조한 기사들

언론사 경영자 가운데서 다소 튀는 언론인으로는 한국경제신문을 경제지의 정상으로 올려놓은 뒤, 문화일보 창간을 주도해 매우 독특한 신문을 제작한 이규행 사장을 들 수 있다. 그가 문화일보를 다른 신문과 차별화하면서 제일 역점을 둔 것은 1면 머리기사였다.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뒤 한 증권회사의 간부로 일하던 국흥주 기사를 언론계로 복귀시킨 사람도 그였으며, 운동권 출신, 해직 기자 등 다양한 경력의 기자들로 새로운 신문을 만들어나갔다. 그러나 이 사장의 퇴진과 더불어 문화일보의 의욕적인 실험도 안타깝게 막을 내렸다. 아마 언론계에 이 사장과 비슷한 의식과 열정을 지닌 경영자가 몇 명만 더 있었다면 한국 신문의 현재의 모습은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 신문들은 지면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기사가 대체로 짧고, 건조하고, 친절하지 않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짧은데, 해설성 관련기사는 쓸데없이(?) 길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문사들이 걸핏하면 자사와 비교하는 외국의 권위지는 쓸데없을 정도로 길고, 친절하고, 꼼꼼하고, 메마르지도 않다. 사설도 스트레이트 기사의 상당 부분을 요약하는 우리 신문과는 달리 스트레이트 기사를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필요한 경우 도표나 사진, 일러스트레이션까지 곁들인다. 아마 요즈음도 다소 튀는(실은 친절하고 성의 있는) 어떤 논설위원이 자기가 쓴 사설에 도표나 사진을 넣자고 우기면 대다수의 논설주관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튀는 기사를 읽고 싶다. 튀는 기사를 만나고 싶다. 이제 신문사 간부들도 거의 '한글세대'로 물갈이되었다.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각을 벗는 데, 우리 신문의 고질적인 증세를 호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실은 그것이야말로 타지와와의 경쟁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방도의 하나이다.

**발굴된 유적의 날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는  
입증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주간문춘’의 발굴유적 날조의혹기사에 항의하여 자살한 賀川光夫 전 別府대 명예교수의 유족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발행원인 ‘문예춘추’ 등에 사죄광고의 게재와 3천3백만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지난 7월 15일 ‘문예춘추’측의 상고를 기각, ‘문예춘추’측에 920만엔의 지급과 ‘광고·그라비아를 제외한 최초의 페이지’를 특정하여 사죄광고를 게재하도록 명한 福岡고법의 2심판결(2004년 2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죄광고의 게재명령에 대해 “단순히 사태의 진상을 고백하고 진사(陳謝)의 뜻을 표명하는 데 그치는 정도의 광고게재를 명하는 판결은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고 과거의 관례를 답습했다.

1. 2심 판결에 의하면 ‘주간문춘’은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聖嶽穴유적에서 발굴된 석기가 날조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1심(大分지법)은 “기사는 賀川 전 교수가 날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입증조사가 불충분하고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 660만엔의 지불과

지면의 위치까지 지정한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했다.

1심판결을 지지한 2심은 “자살후에 게재한 기사는 유족의 신경을 상하게 했다”고 지적, 배상액을 920만엔으로 증액했다.

(『신문협회보』 2004년 7월 27일자)



**사망한 소년의 상해혐의 실명보도는  
양친의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했다**

-일본 秋田지방법원, 배상 명령-

秋田縣 横手시에서 지난 2001년 8월 고교생간의 싸움으로 당시 16세의 소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망한 소년의 양친이 소년의 상해혐의를 실명으로 보도한 秋田魁新보의 기사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신문사를 상대로 5백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秋田지법은 지난 5월 21일 “양친의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하면서까지 소년이 상해사건의 혐의자라고 실명보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4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그러나 사죄광고의 게재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지난 6월 5일 확정되었다.

피고 신문사는 지난 2001년 8월 28일 석간에서 소년의 사망을 이룸, 주소 등을 밝히면서 보도한 기사의 끝부분에 동 소년이 상해사건의

용의자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었다고 보도했다.

원고측은, 실명보도는 소년법의 취지에 반하며 소년과 보호자인 양친에 대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애·추모의 정' 침해를 인정하고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신문협회보』 2004년 6월 1일, 8일자) □

### 미연방통신위원회, 외설방송에 사상 최고액의 벌금 지불 동의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6월 9일 라디오방송국 '크리어·채널·커뮤니케이션즈'가 외설방송을 한 사실을 인정, 175만달러(약 20억원)의 벌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FCC에 의하면 '외설방송'에 대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고액.

FCC의 과월 위원장은 "미국민의 승리"라고 자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반면 콧스 위원은 "조사가 불충분한 과도한 벌금"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월 슈퍼볼 쇼에서 인기 여가수 잭슨의 가슴 노출을 생중계하여 불의를 일으킨 20개의 TV국에 대해서도 FCC의 조사결과에 따라 얼마나 되는 벌금이 부과될 것인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비상원은 지난 6월 22일 외설적이거나

비천(卑賤)한 표현으로 방송을 하는 TV방송국과 라디오방송국에 대한 벌금을 현행의 1백배에 가까운 최고 300만달러(약35억원)로 인상한 법안을 가결,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하원도 벌금의 상한을 50만달러(약 5억8천만원)로 한 법안을 가결했는데, 앞으로 상하양원의 조정된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고액의 벌금지불명령을 받은 '크리어'사는 외설방송을 한 담당자를 징직처분했으며 사실이 확인되면 해고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동사가 '외설'로 인정한 것은 방송금지용어를 남발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기 디스크자키의 프로 등 여러 가지 방송내용이다.

(『신문협회보』 2004년 7월 6일자) □

### 홈페이지에 올려진 사진을 무단으로 TV프로에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미 코로라도주에서 일본어신문을 발행하는 남성이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던 전 미국 덴버총영사의 사진이 TV프로에 무단으로 사용되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일본텔레비'를 상대로 제기한 약 4,500만엔의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에서 도쿄지법 민사제46부는 지난 6월 11일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출처표시를 한 것은 악질"이라고 판

시, 100만엔의 지급을 명했다.

관결에 의하면 '일본텔레비'는 2001년 7월 전 총영사의 공금유용의혹사건을 보도하면서 원고가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올린 총영사의 사진을 원고의 허락없이 12회에 걸쳐 방송했으며 그 가운데 2회는 원고의 홈페이지 전체의 영상을 '총영사의 홈페이지'라는 나레이션을 붙여 소개했다.

원고측은 ①침해행위는 네트워크국에서의 방송을 합쳐 317회 ②사진은 스크프사진과 같은 가치가 있으며 손해액은 1회 10만엔 ③이름 표시권 등 저작자 인격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일본텔레비'측은 저작물의 무단사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기 방송외에 각 네트워크국의 방송수만큼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봐야겠으나 저작물의 1회당 사용료는 네트워크국이 동시에 방송하는 것을 허락하는 대가로 설정되어 있어 5만엔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제목의 무단이용'에 대해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는 讀賣신문사의 제소사건에서 도쿄지법은 지난 3월 "기사와 분리된 표현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인터넷에 무상으로 공개한 정보로, 저작권법 등에 의해 원고에게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한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은 자유"라고 판단, 이를 기각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사건은 신문사측의 항소로 도쿄고법에서 계류중에 있다.

(『신문협회보』 2004년 7월 6일, 7월 20일자) □

## 朝日신문사, '피해자'의 장(章) 신설한 '사건취재·보도지침' 개정

일본 朝日신문사는 동사의 사건취재·보도지침을 4년만에 전면개정, '사건의 취재와 보도 2004'라는 이름으로 지난 6월 22일 조간을 통해 발표했다.

동지침은 사건보도의 의의를 '범죄정보의 공유화와 위협의 경감'이라는 개념으로 재확인했으며, 실명·익명의 적부, 사진의 취급 등 현장의 기자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6월 5일부터 실시되는 이 지침에는 피해자의 취재·보도에 관한 새로운 장(章)이 신설되었으며, '범인시 하지 않는 보도', '장기적인 계속 보도'도 제창되었다.

이번 개정은 ①그 동안 아동살해사건, 고층빌딩화재사건 등을 취재할 때 기자들이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고 ②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재판원법(裁判員法) 등에서 매체를 규제하려는 흐름이 있고 ③경찰의 익명발표 증가, 날로 엄격해지는 사법판단 등, 취재·보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출발점이 되었다고 한다.

지침의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독자의 관심을 기본으로 범죄나 사고의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여 재발을 방지한다는 현대적인 역할을 재확인한다. ②이러한 기본 위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보도할 것인지, 실명이나 익명이나를 판단하는 기준을 ‘중대성’ ‘공인성’의 개념으로 제시했으며, 소년용의자는 익명이 원칙이나 사형이 확정된 경우 실명으로 바꾸고 ‘역사적 중대사건’에서도 예외적으로 실명을 검토하기로 한다. ③정신장애자에 의한 사건에서 책임능력의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④피해자의 이해를 구할 수 없는 사건 보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피해자의 취재·보도에 관해 새로운 장을 신설했으며, 얼굴사진을 입수했을 때의 배려나, 유체(遺體)가 자택으로 돌아올 때의 사진취재를 자제한다. ⑤개인집에서의 단순강도나 노상강도의 피해자는 익명으로 하며, 치한(癡漢)에 대해서도 특별히 악질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된 사람이 사인(私人)일 경우 익명으로 한다.

『신분협회보』 2004년 6월 29일자 □

### 오사마 빈 라덴과 연관 없어 명예훼손 소송 가능

사우디아라비아 억만 장자로 그의 가족이 자동차 판매회사인 Hartwell을 소유하고 있는 Yomsef Jameel 씨는 자신이 오사마 빈라덴과 연관이 있고, 9·11 테러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도한 Sunday Times지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항소법원은 “Jameel씨가 오사마 빈라덴과 연관이 있고, 9·11테러와도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별도 소송을 제기한 Hartwell사에 대해서는 Hartwell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레스 가제트』 2004년 7월 16일자 □

### 미성년 살인혐의자 신원공개로 편집인들 기소 위기에 처해

스코틀랜드 지역 신문인 The Edinburgh Evening News와 The Press and Journal지 편집인들이 살인 혐의로 체포된 15살 소년의 이름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살인혐의로 체포된 이 소년은 지난해 6월 남 자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던 Jodi Jones라는 14살 된 소녀를 납치,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Jones는 실종 5시간만에 손발이 절단된 상태로 집으로부터 불과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Lothian and Brorder 경찰은 지난 4월 14일 경찰서 내 기자회견장에서 체포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경찰은 고등법원 형사부에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을 예상, 살인혐의자에 대한 지나친 신원공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등법원 형사부와 검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살인혐의자의 이름, 집주소, 나이 등을 비보도를 전제로 공개했

다. 다음날 그가 Edinburgh지방 법원에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원 공개는 공개하지 않을 경우,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억측 보도에 의해 형사 사건 절차가 왜곡될 것을 우려해 공개 하는 것으로, 이의 공개는 보도와 방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 편집책임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에 대한 논의가 차후 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형사 소송법상 소송에 관련된 16세 미만의 피의자 신원 공개는 금지되어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임을 강조하는 등 법률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Evening News지의 편집자인 Ian Stewart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은 후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Press and Journal지 편집자는 소년의 집을 수색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면서 신원을 공개했다.

그러나 두 신문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출두하는 것과 관련된 기사에서는 소년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Web Site에서는 그의 신원을 삭제했다.

(『프레스 가제트』 2004년 7월 30일자) □

Andrew Drummond 는 섹스클럽 소유자에 의해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6개월의 징역형과 800파운드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이트클럽 「Boys, Boys, Boys」 소유주인 James Lumsden은 Bangkok Post지가 자신과 사업 파트너인 Gordon May가 두 명의 영국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두 명의 영국인 중 한명은 의심스러운 화재 사건 현장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고, 다른 한명은 가방에 마약이 발견되어 경찰에 체포되었다.

영국기자협회 사무총장인 Steve Turner는 “이번 판결은 아주 웃기는 결정이다. Drummond는 기자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의 용기 있는 보도는 모든 기자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판결에 대해 Drummond는 “15년 동안 태국에서 일했지만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소위 Boys, Boys, Boys 클럽에서 성매매가 없다는 파타야 경찰의 조사에 대해 놀랄 뿐이다.”고 말했다.

(『프레스 가제트』 2004년 7월 23일자) □

### Times지 소속 방콕 특파원 명예훼손으로 800파운드의 벌금 지불

프리랜서 기자이자 Times지 태국 특파원인

### 유명인사들의 사적인 장소에서의 가족사진 게재는 위법

영국 신문들은 최근의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명인사들이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편집인 보도윤리강령

과 현재의 영국의 판례법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번 판결에 대해 한 유명한 국제 변호사는 “상당히 무서운 판결이다.”라고 표현했다.

유럽인권법원은 모나코의 캐롤라인 공주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있는 사건을 게재한 독일의 한 잡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1999년 독일 최고 법원은 캐롤라인 공주는 공적인물이기 때문에 비록 사적인 업무를 보고 있을지라도 공개된 장소에서의 그녀의 사진은 보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공주는 인권법 제6장을 근거로 문제의 사진은 자신 가족의 삶을 존중해야 할 그녀의 권리를 위반했다며 유럽인권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유럽인권법원은 반장일치로 “대중은 캐롤라인 공주가 어디에 있으며, 사적인 삶에서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프레스 가제트』 2004년 7월 2일) □

### 이스라엘 대법원, 팔레스타인 기자에게 Press Card 발급하라 결정

이스라엘 대법원은 팔레스타인 기자들에게 Press Card 발급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Reuter와 Al

Jazeera 방송은 지난 2001년에 내려진 정부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중임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다며 팔레스타인 기자들의 Press Card 재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Dalia Damer 판사는 “이러한 특별상황에서 위험이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론적일 뿐 실체가 없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기에 정당성이 없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Press Card를 재발급 받게 된 Reuter TV 프로 듀서인 Ahmed Seif는 지난 12년 동안 Press Card를 소지해 왔다. 그는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이스라엘 대통령인 Moshe Katsaev를 인터뷰한 바가 있음에도 Press Card를 재발급 받지 못한 Al Jazeera 소속 언론인에게도 Press Card가 발급될 예정이다.

Press Card는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서부지구와 가자 지구는 물론 이스라엘 내에서 취재할 때 요구된다.

국제기자연맹 사무총장인 Aidan White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은 이스라엘이 강요하고 있는, 그러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섬뜩하고도 고의적인 인종차별정책의 종말을 고할 수 있는 결정이다.”고 말했다.

(『프레스 가제트』 2004년 8월 6일자) □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조소 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 계획 심의가 정부 부처간 이견차이로 미루어 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218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1. 산업자원부 (장관 이 희 범)  
2. 건설교통부 (장관 강 동 석)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4. 6. 2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중앙일보 : 『정책 혼선이 투자 막는다』 제하의 기사  
(2004년 5월 13일자 1면)

내 용 : 쌍용자동차는 요즘 경기도 평택공장 증설 계획이 하루하루 미뤄지자 아예 투자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 이 회사는 1년여를 끌어온 수도권 공장 신·증 설을 지난해 말 정부가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당장 생산라인 착공식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개월간 정부가 심의를 미루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지 않자 애를 태웠다.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환경부를 오가며 호소를 거듭했지만 “아직 이견 조율이 덜 됐다”는 답만 들었다. 쌍용차는 결국 평택공장 증설 계획을 ‘연초 착공해 내년 초 완공 및 생산’으로 일단 바꿨다. 그러나 이마저 복잡한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정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는 액정표시장치(LCD) 생산라인을 건설중인 충남 아산의 탕정공장(61만평)과 연계해 일대 98만7000평에 자족형 기업도시를 짓겠다는 계획을 올 초 세웠다. (중략)

열린우리당은 ‘기업도시’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현재 경제부총리는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최근 삼성전자에 ‘불가(不可)’ 통보를 했다.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돼 특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지방에 공장만 세우면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느냐”며 “학교나 도로 등은 지자체에 기부할 예정이며, 삼성전자에 돌아올 개발이익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정책 불확실’이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유가·환율·금리 등 각종

경제 변수가 연초 전망과는 크게 다른 패턴을 보여 헛갈리는데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정부 정책이 부처·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간이 가면서 바뀌는 등 혼선이 많아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대그룹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축소'만 해도 재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 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최근 평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일관성' 순위는 전체 조사 대상 60개국 중 54위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양금승 기업정책팀장은 "각종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 기업들이 정부에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게 '정책 일관성 유지'"라며 "기업이 투자 계획을 미루고, 바뀌어야 하면서 생기는 기회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가 5월 13일자 1면에 『정책혼선이 투자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지난해말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간 이견조율이 덜 되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계획 심의를 4개월간 미루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부처간 이견으로 심의를 4개월간 미룬 바도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은 지난해 말 삼성전자, 쌍용자동차를 포함한 수도권 첨단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는 정부발표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 관련법령(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쌍용자동차가 개정법령에 따라 1월 23일 산자부에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 5월 11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위원장 권교부 차관) 심의에서 원안의결된 바 있으므로,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심의가 4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이후 5월 28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의결됨).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5월 13일자 1면 『정책혼선이 투자 막는다』 제하의 기사 중 업체측은 "부처간 이견으로 심의가 미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는 쌍용 자동차 평택공장 증설과 관련해 "해당법령을 개정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개최하는 등 부처간 이견으로 심의를 미룬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에 2004년 6월 말까지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6월 1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과학기술부가 대구·경북 과학 기술연구원의 설립을 줄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220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과학기술부 (장관 오 명)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4. 6. 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내일신문 : 『대구·경북과기원 설립초반부터 ‘삐걱’』  
제하의 기사 (2004년 5월 20일자 5면)

내 용 : 영남권의 연구개발(R&D) 허브 기능을 담당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대경과기원)이 설립추진과정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경과기원은 지난해 11월 범영남권 연구개발 허브 역할을 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학기술부는 관련자가 불참한 가운데 정관을 통과시키는 등 줄속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2일 설립위원 위촉 뒤 한 차례 상견례만 갖고 경북도추천위원인 김시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전 과기부장관)이 해외출장으로 불참한 가운데 정관을 통과시켰다. 과기부는 또 이의근 경북도지사가 미국출장으로 20일 예정된 대경과기원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도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해 경북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과기부와 대구시가 대경과기원 유치당시 범영남권 연구개발 허브기능을 담당할 연구원 설립이라는 유치명분을 망각하고 줄속으로 추진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구시가 대구시 자체사업인 테크노폴리스조성계획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경북지역을 비롯한 다른 영남권을 배제하려고 한다며 “충분한 여론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기 지방분권운동 본부 상임의장은 “대경과기원은 분권과 혁신의 힘으로 이뤄내야할 대표적인 지역 현안사업”이라며 “업적위주의 사업추진과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밀실행정은 또 하나의 중복투자로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4년 5월 20일자 제5면에 『대구·경북과기원 설립초반부터 ‘삐걱’』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과학기술부는 관련자가 불참한 가운데 정관을 통과시키는 등 줄속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경북도 추천위원인 김시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해외출장으로 불참한 가운데 정관을 통과시켰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정관의 심의·의결은 설립위원들의 권한이며, 김시중위원은 2차회의 일정을 결정할 당시부터 해외출장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2차회의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는 바, 설립위원회는 김시중위원의 서면의견을 고려하여 정관을 심의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과기부는 또 이의근 경북도지사가 미국출장으로 20일 예정된 대경과기원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도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해 경북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대경과기원 설립위원회의 일정은 설립위원들이 각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간담회 일정은 설립위원 1차 회의시 결정되었으며, 설립위원 2차 회의시 과기부는 경북도지사가 해외출장으로 간담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과 경북도에서 간담회 일정조정을 요청한 사실을 설립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설립위원회는 경북도 부지사가 참석하면 된다는 판단아래 5월 20일로 간담회 일정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4년 5월 20일자 제5면에 『대구·경북과기원 설립초반부터 ‘삐걱’』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과학기술부는 관련자가 불참한 가운데 정관

을 통과시키는 등 졸속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관련자가 불참한 가운데 정관을 통과시키는 등 졸속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경북도 추진위원인 김시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해외출장으로 불참한 가운데 정관을 통과시켰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정관의 심의·의결은 설립위원들의 권한이며, 김시중 위원은 2차 회의 일정을 결정할 당시부터 해외출장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2차 회의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과기부는 또 이의근 경북도지사가 미국출장으로 20일 예정된 대경과기원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도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해 경북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설립위원 2차 회의시 과기부는 경북도지사가 해외출장으로 간담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과 경북도에서 간담회 일정 조정을 요청한 사실을 설립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설립위원회는 경북도 부지사가 참석하면 된다는 판단 아래 5월 20일로 간담회 일정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대구시,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법인 설립사무를 수행할 설립위원을 구성하는 등 광범위한 지역의견 수렴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는 관련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내일신문 5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2004년 6월 17일 이전에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6월 16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실업자 재교육위탁기관인 신청인이 훈련생들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22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미용직업전문학교 (교장 한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4. 6. 4.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4년 4월 9일 21:30)

내 용 : ▷앵커 : 실업자 재교육을 위탁받은 학원들, 정부로부터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데 학원생들을 끌어 모아서 재료비 등 각종 명목으로 따로 돈을 걷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기자 : 서울 중랑구의 한 미용학원. 정부에서 한 달에 500여만원을 지원받아 실업자들을 교육시키는 전문기관입니다. 43살 전모 씨는 4달 전 고용안정센터의 소개로 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상교육에다 추가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학원에 등록한 뒤부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화장품 등 재료를 구입한다면서 수십만원을 걸었습

니다.

▷전모 씨(학원생): 15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많다 싶어 그런 소리가 나니까 그걸 다시 조정을 해서 12만원이 됐어요.

▷기자 : 게다가 얼마 전부터는 원생들에게 반영구 화장이라는 일종의 문신시술까지 권했습니다. 시술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25일 저녁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실업자 재취직 훈련과 관련하여 보도하면서 ○○미용직업전문학교가 화장품을 강매하고 수십만원의 돈을 걷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처럼 방영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실업자 재취직 훈련과 관련하여 ○○미용직업전문학교장은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보도내용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5월 25일 9시 「뉴스데스크」 시간에 보도한 중랑구의 한 실업자 재교육 위탁기관인 미용직업전문학교장의 화장품 강매보도와 관련, 이 학교 교장은 실업자재취직훈련생에게 화장품을 강매하거나 급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MBC-TV 「TV속의 TV」 2004년 6월 26일 프로그램 말미에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하되, 화면 하단에는 동 보도문의 제목(반론보도문)을 자막으로 표시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TV속의 TV」 (2004년 6월 26일 13: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청부가 대우종합기계 매각과 관련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입찰참여를 허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236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재정경제부 (장관 이 현 재)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4. 6. 7.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중앙일보 : (1) 『정책 혼선이 투자 막는다』 제하의 기사 (2004년 5월 13일자 1면)

내 용 : <2004서울중재218의 보도내용 참조>

(2) 『70조 투자 예정 단지』 제하의 기사 (2004년 5월 13일자 6면)

(전략) 안개속 대우중기 매각-대우중기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뒤 현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주관하는 자산관리공사는 1조원 넘게 들인 공적 자금 등 출자전환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급적 비싼 값에 팔겠다는 방침이다. 매각 입찰에는 지금까지 팬택·두산·효성·한화·로템 등 국내의 26개사가 참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노조가 '우리사주 조합에도 인수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고 총선 직후 민노

당도 이를 거들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입찰 마감도 11일에서 18일로 연기했다. 기존의 인수 희망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일부 기업은 노조와의 제휴도 모색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련업체 관계자는 “정치권 입김에 매각 작업이 휘둘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중략)

끝없는 성장·분배 논란=성장과 분배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경제기조에 관한 논란이 1년여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끝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다르고, 정부 내에서도 사람마다 십인십색(十人十色)이다. 대한상의 이경상 기업정책팀장은 “현재 당정 간 구조를 보면 이현재 경제팀의 실용(경제논리)과 열린우리당의 개혁(정치논리)이 상충돼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막막해 한다. 한 대형 제조업체 사장은 “성장을 우선한다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개혁을 우선한다면 가급적 보수적인 경영을 하면서 체질 개선에 더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문제는 어느 코드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공이 너무 많아 누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요즘처럼 헛갈린 적이 없다”고 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가 5월 13일자 1면에 『정책혼선이 투자 막는다』 제목의 기사에서 “성장과 분배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경제기조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불안해서 투자전략을 세울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현재의 성장이 커지면 그만큼 분배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는 입장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소득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

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재정경제부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인 분배라는 실용적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시책에 경제운용의 중점을 두고 있으며,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서민·중산층의 소득기회가 늘어나 분배의 개선도 가능하게 되어 기업과 노동계와의 마찰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중앙일보의 기사는 성장과 분배를 적극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려는 정부정책의 실용주의적인 입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동일자 6면 『70조 투자 예정 단지 정치 논리에 ‘삐걱’』 제하의 기사에서 대우종합기계 매각과 관련하여 “정부가 노조와 민주노동당의 요구로 우리사주조합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재정경제부가 당초 노조의 입찰참여 불허방침을 갖고 있었다거나 또는 노조 및 민주노동당의 요구에 밀려 입찰 참여 불가방침을 변경하여 노조의 입찰 참여 허용방침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대우종합기계 노조가 입찰참여 문제를 협의해 오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입찰 참여주체, 이해 상충문제 등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노조에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대우종합기계 노조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한 후 입찰참여 문제를 다시 협의해 오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우종합기계 우리사주조합이 다른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것을 수용할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였습니

다.

재정경제부는 국제경쟁입찰에서 인수자로서 적정성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어떠한 투자자도 차별이나 특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었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원칙하에 매각을 진행하여 나갈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론보도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5월 13일자 1면 『정책혼선이 투자 막는다』, 6면 『70조 투자 예정 단지 정치논리에 '빼격'』 제하의 기사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대우종합기계의 매각에 우리사주조합이 참여하는 문제에 관하여 방침을 변경한 바 없고 자격만 갖추면 누구든지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004년 6월 19일 오퍼니언면에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6월 1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241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중소기업청 (총장 유 장 무)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4. 6. 7.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서울경제 : 『“중소기업하기 지긋지긋...”』 제하의 기사 (2004년 5월 20일자 1면)

내 용 : “한국에서 중소기업 하기 정말 지긋지긋하다.”

21일 노무현 대통령과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된 가운데 시화공단에서 베어링을 생산하는 H사의 이모 사장은 “혹시 나아질까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가 길거리로 나왔을 판”이라며 “빈사상태에 빠진 중소기업 실상을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을 성장·고용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현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신음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경영난이 한계상황에 직면했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청사진은커녕 이렇다 할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매출이 불황에 시달린 지난해보다 30~70% 감소한 내수 위주 중소기업들이 수두룩하고 5월 매출도 지난 4월보다 50% 가량 줄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고 있는 중기 실태조사가 끝나야 제대로 된 진단·처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숨이 넘어가는 중소기업에 근본적인 치료는 미룬 채 진통제만을 처방함으로써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대출회수 자체 요청도 현장에서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반도체업체인 R사의 김모 사장은 “은행권이 현재의 재무구조만 보고 기존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지난 5월 29일자 서울경제 1면과 3면에 『“중소기업 하기 지긋지긋...”』 제하의 기사 중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중소·벤처기업을 성장·고용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현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신음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한계상황에 직면했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청사진은커녕 이렇다할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하여 정부의 잘못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처럼 표현하면서 정책목표 실현수단으로 제시한 것을 “현란한 구호”로 폄하하고,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중소기업 정책을 재검토하여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장·단기정책(청사진 포함)이 없다고 한 것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작성된 기사로 보인다.

지난해 6월 23일,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간의 양적 성장 위주 정책에서 질적 성장위주로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경쟁과 협력, 간접지원, 지역협력, 성과 연계형으로 정책 기조와 지원방식을 바꾸는 등 중소기

업정책을 대폭 손질한 바 있다. 이어서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등 분야별로 장·단기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금년 3월에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금년 초에는 중소기업의 원자재난, 폭설피해 등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경색등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금융애로완화대책’을 마련하고 ‘긴급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출 조기회수를 자체시키고, 최근에는 장기적인 내수침체,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 P-CBO만기도래 등에 따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을 해결하기 위한 지난 5월 4일, ‘중소기업 금융애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모두가 걱정하던 소위 ‘중소기업발 금융대란’을 예방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정부는 원자재난, 중국 쇼크 등 일시적인 충격 및 장기적인 내수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나 이른바 ‘한계기업’의 생명연장에까지 힘이 미칠 수 없는 것이 정책의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대출회수 자체요청도 현장에서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소위 ‘한계기업’은 최근의 경제동향과 관련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서운한 대우를 받는 것이 시장원리라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 사실로서 취재원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대출잔고가 2월말 232.9조원, 3월말 234.0조원, 4월말 236.6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소위 '청사진'을 갖고 중소기업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우량기업과 한계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표상의 경기와 체감경기간에 나타나는 많은 차이를 고려하여 7,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범정부차원의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음을 밝힌다.

반론보도신청인 중소기업청장 유 창 무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5월 20일자 1면 『중소기업하기 지긋지긋...』 기사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이렇다 할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대출회수 자체 요청도 현장에서는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정부는 전담기관인 중소기업청을 통해 중소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중소기업 자금난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2004년 6월 21일자 서울경제 14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경제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6월 21일자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내용을 왜곡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242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 철 규)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4. 6. 7.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국민일보 : 『신문사 경품제공자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04년 5월 25일자 1면)

내 용 : 앞으로 한도를 초과해 무가지 또는 경품을 제공한 신문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단계를 뛰어넘어 관련자 전원이 검찰에 고발된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은 '공정위가 행하는 행정처분만으로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시장 종합대책'을 2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무가지나 경품 제공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게 종합대책의 기본취지”라며 “지금까지는 경고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에만 그쳤지만 앞으로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며 고발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수위는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무가지·경품 제공에 신문사 본사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본사 역시 직권조사 대상의 예외로 두지 않겠다고 밝혀 언론사주를 포함한 본사

관계자도 고발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직권조사의 시기와 횟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언제든 조사를 벌이는 상시 조사체제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 포상금제의 경우 올해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불가능하지만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국민일보가 지난 5월 25일자 1면에 ①“앞으로 한도를 초과해 무가지 또는 경품을 제공한 신문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단계를 뛰어 넘어 관련자 전원이 검찰에 고발된다.”, ②“무가지·경품 제공에 본사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언론 사주를 포함한 본사관계자도 고발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③“신고 포상금제도의 경우 ...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4년 5월 25일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종합대책 내용에 위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한 사실은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철규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5월 25일자 1면 『신문사 경품제공자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앞으로 한도를 초과해 무가지 또는 경품을 제공한 신문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단계를 뛰어 넘어 관련자

전원이 검찰에 고발된다.”, “무가지·경품 제공에 본사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언론사주를 포함한 본사관계자도 고발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민일보 2004년 6월 17일까지 2면 혹은 3면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부제목(직권조사...)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6월 1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사우나에서 사망한 신청인의 아들이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4전북중재15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1. 손 ○ ○

2. 권 ○ ○

피신청인 : 전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4. 6. 7.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전민일보 : 『심장질환 20대 사우나에서 사망』 제하의

기사 (2004년 6월 1일자 15면)

내 용 : 지난달 30일 오후 11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T사우나에서 손모 씨(23·완주군 이서면)가 숨져있는 것을 종업원 이모 씨(34)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이씨가 평소 지병인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유가족의 진술로 미뤄 급성심부전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6월 1일자 사회면에 『심장질환 20대 사우나에서 사망』 제하의 기사에서 “숨진 손씨가 평소 지병인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유가족의 진술로 미뤄 급성심부전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숨진 손○○ 씨는 중·고 재학시절에 축구 선수로 활약했던 경력이 있었던 건강한 청년으로 심장질환은 전혀 앓은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었던 바 “손○○ 씨가 사망한 이유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다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지 지난 6월 1일자 15면 『심장질환 20대 사우나에서 사망』 제하의 기사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T사우나에서 숨진 손모 씨(23·완주군 이서면)가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손씨는 당시 사우나실에서 잠을 자다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으며 평소 심장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민일보 2004년 6월 10일자 15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심장질환 20대 사우나에서 사망)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민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6월 10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결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매년 축소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251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보건복지부 (장관 김 화 중)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4. 6. 9.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30만 우리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4년 5월 27일자 1면)

내 용 : (전략) 정부는 현재 ○○와 같은 결석아동을 30만5000여명으로 집계하고 이들에게 학교 점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청원한 자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33만 명, 차상위 계층 등 47만명, 소년소녀가장 등 해체가 정 34만명 등 최대 117만명의 아동이 결식 가능성 등으로 사회적 보호가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2) 『이혼, 가출, 실직... 어른들이 아이들 굶긴다』 제하의 기사 (2004년 5월 27일자 4면)

지난 18일 김○○(11·서울 상도동)군은 할머니가 며칠 전 부엌에 놓고 간 라면에 수프를 뿌려 씹어먹었다. 이날 저녁 식사였다. 가스레인지가 고장났는데 고칠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는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장비를 매달 20만원 남짓 받는다. 그가 사는 두 평 크기에 방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방세를 내고 남는 돈으로 수도요금, 전기료를 낸다. 학교에 가는 날은 급식 지원을 받아 점심을 먹는다. 아침, 저녁밥과 휴일·방학 중 식사는 동사무소에서 명절마다 지원해주는 쌀과 상품권으로 해결한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 빚을 떠안은 뒤 행방불명됐고, 화장품 방문판매로 생계를 잇던 어머니는 지난해 ○○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

신림동 작은아버지 집에 사는 할머니(66)가 매 주 한두 번씩 들러 전기밥솥에 밥을 해놓는다. 반찬은 김치 한 가지다.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흐릿하다. 18일 밤 ○○방에 온 할머니는 ○○를 보자마자 뺨에 얼굴을 비비며 “우리 새끼 어떡해, 나 죽으면 누가 밥을 먹여주나”라며 눈가를 훔쳤다.

○○ 방 한쪽 벽에는 붉은 색연필로 비뚤비뚤하게 쓴 ‘아라바이트 비용’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심부름 300원, 거짓말 -1000원, 청소 500원... 아버지와 함께살 때 착한 일을 하면 받던 ‘상금’ 액수를 적어 놓은 것이다. ○○는 “저걸 붙여두면 아빠랑 같이 사는 것 같다”고 했다. ○○의 꿈은 골프선수다. “골프

선수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병 다 고쳐드릴 거예요”라며 웃었다. (후략)

(3) 『저녁·휴일엔 그나마 못먹는다』 제하의 기사 (2004년 5월 27일자 5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전국 초·중·고교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30만112명에게 점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아침·저녁과 휴일·방학 중에는 끼니를 때울 방도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이는 미취학 아동과 ‘부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결식아동은 제외된 수치다.

그나마 점심 지원을 받는 아동은 나은 편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의 결식아동(하루에 한 끼 이상 굶고 있거나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식아동은 5만5179명에 불과하다. (중략)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대상자는 2000~01년 2만2589명에서 2002~03년 1만518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 6월 편성된 결식아동 지원 추경예산 70억원 중 33억원만 사용돼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민간 종교단체가 포교 목적으로 급식비를 요구한 게 파악돼 2002년엔 59억원으로 예산이 줄었다”고 말했다.

결식아동이 학교 점심 급식 외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시설도 태부족이다.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관 357곳 중 급식 시설을 갖춘 복지관은 107곳에 불과하다(복지부 자료).

지원 방식도 허점이 적지 않다. 교육부는 점심 급식 지원 대상 학생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동사무소의 가정환경 조사와 학내 학생복지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급

식비로 책정된 예산보다 많은 학생이 지원할 경우 누구를 탈락시킬지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냈다. 동사무소의 가정환경 조사도 한계가 분명하다. 서울지역의 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는 “모든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재산세 납부 실적과 자동차 소유 여부 등 서류 검토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5월 27일자 1면에 『30만 우리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4면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굶긴다』, 5면에 『저녁·휴일엔 그나마 못먹는다』 제하의 보도로 국내 결식아동수가 30만명에 이르고 있고, 급식시설을 갖춘 곳이 부족하여 당장 굶을 처지이며,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며, 5월 28일자 만평으로 북한과 비교하여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결식아동 30만’이라는 수치는 정부재정으로 학교에서 점심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들로 밝혀졌으며 보도내용과 같이 ‘실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이 아닙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결식우려가 있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아동은 1만 5759명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부는 2004년도에 토·공휴일 및 방학중에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동 3만 9420명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여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결식아동 발견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속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매년 급식예산도 충분히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선일보사는 근거없이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킨 것

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조선일보를 읽고
- 내 용 : 조선일보가 지난 5월 27일자 1면에 『30만 우리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등 제하의 보도로 국내 결식아동수가 30만명에 이르고 있고 급식시설을 갖춘 곳이 부족하여 당장 굶을 처지이며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매년 축소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며, 5월 28일자 만평으로 북한과 비교하여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 30만’이라는 수치는 정부재정으로 학교에서 점심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들이고 보도 내용과 같이 ‘실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이 아니며, 또한 학교급식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결식우려가 있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아동은 1만 5759명인 것이고, 정부는 2004년도에 토·공휴일 및 방학중에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동 3만 9420명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여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결식아동 발견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속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매년 급식예산도 충분히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설정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4. 6. 25.자 오피니언면에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결식아동 방학급식 개선』 제하의 기사  
(2004년 6월 29일자 2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종합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264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산업기술부 (장관 이 희 범)

피신청인 : 주간조선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4. 6. 14.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주간조선 : 『손 놓은 정부... 임시방편에만 급급』 제하  
의 기사 (2004년 6월 3일자 26~27면)

내 용 :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  
서 배경과 억측도 가지가지다. (중략)

원유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오  
르게 된다. 이번에는 급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다  
중국의 석유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산유국과 주요 정  
유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해있기 때문에 단  
기간에 석유 공급이 확대될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  
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지난 몇 년간  
저유가가 계속되면서 산유국과 정유업체들이 유전 개  
발 및 정유시설 확충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게다가 이라크의 석유 생산이 예상보다 더디  
게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뒤늦게 회원국들의 생산쿼터를 상향 조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지만 효과는 불확실하다. (중략)

여기다 앞으로도 계속 유가가 오르거나 급등락을  
계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기 세력 또  
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올 들어 미국 등 전세계 주식  
및 채권 시장이 침체를 거듭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제금융시장의 큰손들이 원유 시장에 뛰  
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파이낸셜타임스는 헤  
지펀드가 원유 시장에 유입되면서 고유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략)

유가 급등이 장기화될 경우 문제는 세계 경제와 우  
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세계 경제는 과거 2번에  
걸친 오일쇼크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경험했다. 유  
가 상승으로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고 여기에 소비 위  
축과 기업 파산이 겹치면서 성장률까지 낮아진 것이  
다. (중략)

우리나라 에너지 97.3% 수입에 의존

유가 급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몇몇 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유가가 배럴당 평균 10달러 정도 오  
르면 성장률은 0.6~0.9%포인트 하락. 소비자물가 상  
승률은 1.0~1.2%포인트 상승. 경상수지는 100억~120  
억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우  
리 경제는 성장률 4%대 초중반, 물가 4%대. 경상수  
지 0~50억달러 적자로 내려앉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그간 정부는 고유가 시대가 올 때마다 고유가 종합  
대책을 내놓아 왔다. 이번에도 지난 4월 유가 상승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5월 19일에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과 함께 에너지 저  
소비형 사회로의 체계적 전환, 해외자원개발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과거와 다를  
게 없는 대책들이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 효율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총소비량의 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50%, 일본의 30% 정도에 불과하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에너지 고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에너지 사용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가 지난 6월 3일자 26-27면에 『손 놓은 정부... 임시방편에만 급급』 제하의 기사 중 “5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종합대책은 과거 대책의 답습이자 정부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 하더라는 내용과 관련,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고유가상황이 과거 1·2차 석유파동과 같은 위기상황은 아니나, 중국의 석유소비 급증세·석유매장이 집중(65.4%)된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지속 등을 감안, 향후 ‘고유가 구조’가 고착화 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고유가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서, 이번 종합대책에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솔선수범, 에너지 절약우수가정 cash back 제도 등 다연한 고유가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대기전력 1W운동”추진, 자동과금시스템 설치 확대 등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대책, 더 나아가 신·재생 에너지개발 및 해외자원개발 전력 추진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지의 동 기사내용 중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성이 미국의 50%에 불과하다”는 기사내용은 에너지원단위(에너지/GDP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로 볼 때 우리나라는 0.31, 미국은 0.25로서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6월 3일자 27면에 보도한 『손 놓은 정부... 임시방편에만 급급』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고유가 상황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 수 있는 석유 위기에 대비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및 에너지 공급안정성 제고를 위한 27개의 고유가 대응 세부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성이 미국의 50%에 불과하다”는 기사내용은 에너지원단위(에너지/GDP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로 볼 때 우리나라는 0.31, 미국은 0.25이므로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조선 2004년 7월 6일자 독자면에서 면 사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부제목(중국 산업화로...)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주간조선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7월 8일자 9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현직 경찰관인 신청인이 불법건축물을 건립해 사용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청보도)**

사건번호 : 2004부신증재12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한 ○ ○

피신청인 : 울산매일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4. 6. 14.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울산매일 : (1) 『경찰이 불법건축물 건립물의』 제하의 기사 (2004년 5월 17일자 12면)

내 용 : 현직 경찰관이 1,000여평 규모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인 농지에 식물을 기르는 종묘배양장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구조용도변경을 실시해 연못을 설치하는 등 초호화 시설을 갖춘 불법건축물을 건립, 수년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불법건축물에는 정화조 시설도 없이 각 건물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간이 화장실, 체육시설까지 설치해놓고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를 받아 지은 불법건축물에는 여름이나 휴가철에 이용객들에게 돈을 받고 대여해주는 펜션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금정경찰서 J지구대 소속 한모 경사(50)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소재 1,100여평의 농지에 고급 조경수들과 20여평 규모의 연못, 3동의 건축물 등 호화로운 건축물을 조성해놓고 있다. (중략)

이에 대해 한씨는 “불법건축물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쓸데없는 참견을 하지 말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깨끗함을 강조하는 경찰관의 공직기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2) 『제보자에 협박 또 말썽』 제하의 기사 (2004년 5월 18일자 12면)

현직 경찰관이 1,000여평의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건립해(본지 17일자 12면 보도) 물의를 빚고 있는데 주인인 한모 경사가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해 전화를 통해 협박성 발언으로 폭행을 하는가 하면 기사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헤이해진 경찰 공직기강을 드러내고 있다. (중략)

한편 한 경사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신이 짓지 않았으며 만들어진 부지의 건축물을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에서는 경찰관으로서 확인조사도 없이 농지를 불법형질변경해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을 매입해 등기를 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3) 『양산시, 전 소유주 확인나서』 제하의 기사 (2004년 5월 20일자 12면)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소재 불법건축물과 관련 종묘배양장의 구조물이 일반 건축물로 건립된 것을 조사 중인 양산시는 한씨가 지난 2002년 부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지매입 당시 현재의 불법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었다는 주장에 따라 이전 지주를 대상으로 확인을 계속하고 있다.

한씨는 이 부지에 대해 매입 당시 전 주인이 사용한 2동의 건축물과 종묘관리소 명목의 건물 1개동이 있었으며 연못도 같이 조성돼 있는 등 자신이 별도의 변경이나 신축행위는 전혀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5월 17일자 12면에 『경찰이 불법건축물건립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부산지방경찰청

금정경찰서 J지구대 한모 경사가 불법건축물건립, 초호화 연못 등 건립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부산지방경찰청 금정경찰서 J지구대 한 경사는 초호화 시설을 불법건축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매입전 지주가 용도 변경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5월 17일자 12면 『경찰이 불법건축물 건립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부산지방경찰청 금정경찰서 J지구대 한모 경사가 자연환경보존지역인 농지에 식물을 기르는 종묘배양장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구조용도변경을 실시해 불법건축물을 건립, 수년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불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한모 경사는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건축물을 매입후 일부 건축물(정자, 개사육장, 지붕개보수) 등을 증·개축한 사실은 있으나 당초부터 본인이 기존 불법건축물을 지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2004년 6월 23일 이전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울산매일신문 1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 부제목(2004. 5. 17.자 12면) (“가지산 도립공원 1천여평...”)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울산매일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6월 23일 자 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북한산 콩나물콩에 대해서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270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김진배)

피신청인 : KBS-1TV

중재부 : 서울제1중재부

접수일 : 2004. 6. 17.

처리결과 : 합의

###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4년 6월 13일 21:00)

내 용 : ▷앵커 : 남북 간 화합의 큰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바로 남북경협입니다. 이런 남북경협에 찬물을 끼얹는 탁상행정을 현장추적에서 고발합니다. (중략)

▷기자 : 하릴없이 이렇게 쌓여 있는 북한산 콩은 모두 1000톤, 8억원어치입니다. 국내 유통을 책임지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인수를 거부하면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발아율 미달. 농림부 산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의뢰를 받은 검정회사의 검사 결과입니다.

▷김○○(농수산물유통공사 과장) :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검정기관들이 있습니다.

▷기자 : 그러나 검정회사는 콩의 발아율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중략)

또한 다른 수입사는 기준치에 미달되는 정도만큼 값을 깎고 있지만 유독 북한산에만 엄격한 규정도 분제입니다.

▷이○○(북한산 수입 업체 대표) : 북한산에 대해

서는 유독 반값에 적용하겠다. 그냥 1%만 모자라도 그냥 반값이에요.

▷기자 : 농림부의 승인조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통일부의 책임도 큼니다.

▷정○○(통일 교역과장) : 확인을 하고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자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일방적인 영터리 검사와 통일부와 농림부의 탁상행정이 남북경협과 남북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6월 13일 「뉴스9」 현장추적에서 '남북경협 탁상행정에 흔들'이라는 제목 아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북한산 콩나물콩 반입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공사의 일방적인 영터리 검사, 가격 결정에 유독 북한산에만 엄격한 규정 적용, 공사가 인수를 거부하면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기준에 따라 북한산 농산물의 반입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지난 6월 13일 「뉴스9」의 현장추적에서 방영한 "남북경협 탁상행정에 흔들"이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문제의 북한산 콩나물콩이 받아들 기준에 미달하여 반입업체와 미리 합의한 조건에 따라 인수를 거부하였을 뿐이고, 받아들 검사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북한산 콩나물콩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제

기해 왔으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BS-1TV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2004년 7월 3일 프로그램 말미에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화면 하단에는 동 보도문의 제목 (반론보도)을 자막으로 표시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프로그램 (2004년 7월 3일 11: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우리 정부에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27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신청인 : 대통령 노무현

피신청인 : SBS-TV

중재부 : 서울제4중재부

접수일 : 2004. 6. 19

처리결과 : 합의

### 보도내용

SBS-TV : 「8시 뉴스」 프로그램 (2004년 6월 3일 20:00)

내 용 : ▷앵커 : 북한같은 무더위에 얼마나 힘들셨습니까? 북한이 지난해 3월,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우리측에 공식 제의했던 사실이 SBS의 단독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핵 문제와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서 유보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으로 양OO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3월 말.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공식의사를 우리 정부 기관에 전달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들이 합의했던 답방 형식의 정상회담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회담의 장소와 시기는 남측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일단은 유보하자는 거부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던 북한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났다고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한 핵 문제는 한·미·일 3자 틀에서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한·미간에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측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제의를 해왔지만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은 정상회담 제의였던 것으로 1년여 만에 확인됐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SBS방송은 2004년 6월 3일 SBS 「8시 뉴스」에서 '답방제의 왔었다'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3월 말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자 제의하면서 회담의 장소와 시기는 남측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공식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해왔으나,

우리 정부가 논의 끝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북한이 지난해 3월 말 우리 정부에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다음은 반론보도입니다. 정부 당국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여만인 지난해 3월말 북측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으나 우리정부가 거절했다라는 취지의 지난 6월 3일자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SBS-TV 「8시 뉴스」 2004년 7월 17일까지 프로그램 말미에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하되, 화면 하단에는 동 보도문의 제목(정부, "남북정상회담 제의받은 적 없어")을 자막으로 표시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8시 뉴스」 프로그램 (2004년 7월 17일 20:37)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농어촌 지역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이 예산확보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4대전중재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농림부 (장관 허상만)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4. 6. 21.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중도일보 : (1) 『영·유아 양육비 지원 ‘헛구호’』 제하의 기사 (2004년 6월 15일자 17면)

내 용 : 농어촌지역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이 대대적인 홍보와 모집을 벌여놓고는 애매한 지급기준과 사업비조차 마련하지 않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지적이다.

이는 전국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는 사안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도 수개월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농민들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중략)

따라서 천안시도 지난해 말부터 농촌지역 거주 111명의 영·유아지원가구를 선정해 신청기가 시작되는 올 1월부터 연령별 차등을 두어 양육비 7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국비 지원은 물론 지방비 가운데 도지원분과 기초자치단체 부담분 모두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선심사업임을 드러내고 있다.

지급 기준 또한 영유아보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보육시설, 유치원으로 한정돼 농촌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마찰이 예상된다. (후략)

(2) 『영유아 양육비 왜 빼격거리냐』 제하의 기사 (2004년 6월 15일자 19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제법 의욕적으로 도입한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한해의 절반이 가도록 빼격거리고만 있다. 현 단계에서 제도가 정착돼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나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아니, 무리가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산도 마련하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이 무슨 경우인가. (중략)

지금과 같은 지원 규모로 효율적인 지원이 될지도 의문이고, 지원 대상 기준을 보면 탁상행정이 아닌가 의심될만큼 허점투성이다. 대상자의 상당수가 출산을 할 수 없는 고령 농민들인데다 어렵사리 규모화·전업화 영농을 하는 젊은층들은 여기서 배제시킨다면 이견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무엇보다 중대한 실책은 농촌을 회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시작해놓고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6월 15일자 17면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헛구호’』 및 19면 사설 『영유아 양육비 왜 빼격거리냐』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지급기준과 사업비조차 마련하지 않아 이는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는 사안”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 확인결과 농림부는 사업비 중 국비지원분은 지난 2월 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이미 송금하고 있고,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비 확보가 늦어진 충남 일부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2004년 6월 15일자 17면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헛구호’』 및 19면 사설 『영유아 양육비 왜 빼격거리냐』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지급기준과 사업비조차 마련하지 않아 이는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는 사안”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 확인결과 농림부는 사업비

중 국비지원분은 지난 2월 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이미 송금하고 있고,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비 확보가 늦어진 충남 일부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도일보 2004년 7월 2일자 2면 좌측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예산 확보 없이 사업추진 전형적 '탁상행정')과 같은 크기로 하며 본문은 중재대상기사 본문 활자체로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도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7월 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 신청인 회사가 연기군의 환경개선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된 과정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4대전중재10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 ○)

피신청인 : 연기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4. 6. 21.

처리결과 : 함 의

### 보도내용

연기신문 : 『군 예산만 집행하면 그만 나몰라라』 제하

의 기사 (2004년 6월 14일자 1면)

내 용 : 정부의 유통시장 개방 이후 국내외 기업의 시장 공략이 가속화되면서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이 추진 시작부터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략)

또 공개(?)입찰에서 선정된 (주)○○○ (대전소재)에 대해 번영회는 뒤늦게 신용불량과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등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고심 중에 있다.

더불어 문제는 심사과정에서 선정업체의 기술력과 시공경험 그리고 경영상태 등 사전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이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부서는 관리감독의 소홀은 물론 시공업체의 선정과 공사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관리감독권한이 있음에도 관계 공무원은 미온적인 태도이다. 관계 공무원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2004년 6월 14일자 1면에 『군 예산만 집행하면 그만 나 몰라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연기군의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 공개입찰에서 선정된 (주)○○○에 대해 시장 번영회는 신용불량과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고심 중에 있다고 보도하고 또한 심사과정에서 사전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선정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실업체 선정, 무자격업체에 하도급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부실공사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주)○○○은 입찰 참가자격 및 심사기준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신용불량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서류심사에서 이미 번영회로부터 적격기준에 통과되어 1차 낙찰을 통보 받았으며 2차 최종 가격경

쟁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업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은 다년간 시공실적이 우수하며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발 맞추어 재래시장 아케이트 시설 설치공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한 건설한 회사입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4년 6월 14일자 1면에 『예산만 집행하면 그만 나 몰라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연기군의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 공개입찰에서 선정된 (주)○○○에 대해 시장 반영회는 신용불량과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고심중에 있다고 보도하였고, 또한 심사과정에서 사전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선정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실업체를 선정, 무자격업체에게 하도급 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부실공사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주)○○○은 입찰참여 자격 및 심사기준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신용불량업체로 선정된 사실도 없음을 밝혀왔다.

(주)○○○은 다년간 시공실적이 우수하며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발 맞추어 재래시장 아케이트 시설 설치공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한 건설한 회사라면서 반론을 제기해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연기신문 2004년 7월 5일자 1면 우측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재래시장 입찰과정 허점...)과 같은 크기로 하며 본문은 중재대상기사 본문 활자체로 한다.

- 연기신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반론보도대상과 같은 내용의 기사중 신청인이 관련된 부분은 이

를 삭제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기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7월 3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청부가 구체적인 자원확보방안도 없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해 국가빚과 국민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시간번호 : 2004서울중재284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기획예산처 (장관 김 병 일)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4. 6. 25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조선일보 : 『무슨 돈으로? 10~20년간 국책사업 230조 이상 필요, 국가빚 크게 늘어 국민부담만 눈덩이』 제하의 기사 (2004년 6월 18일자 4면)

내 용 : 정부가 최근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계획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과연 우리 재정이 이들 사업들을 버틸 있는 여건이 되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도 올해부터 2008년까지 총 58조 7000억원의 국가부담(국비+지방비)으로 이뤄지는 사

업이지만, 어떻게 이 비용을 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중략)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재정수요를 밝힌 사업만 합쳐도 향후 10~20년간 총 230조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중략)

최근 발표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가 재정통제에 힘쓰지 않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2008년 중앙정부 채무는 2003년 말 채무 수준보다 무려 93조원이 증가해 약 2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6월 18일자 4면에 『부슨 돈으로? 10~20년간 국책사업 230조이상 필요, 국가빚 크게 늘어 국민부담만 눈덩이』제하의 기사에서 주요 국책사업으로 인해 국가빚과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밝혀 왔습니다.

첫째, 본지는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의 국가부담에 대한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국비 부담분에 대한 재원대책은 향후 5년간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반영되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본지가 향후 10~20년간 소요재원으로 제시한 230조원은 사업별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 일부사업이 이중계산 됨으로써 실제보다 과다계상되어 있으며, 또한 모두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도된 230조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연간 부담은 10~20억원 수준으로 정부의 연간재정규모(총지출 207조원)와 향후 재정규모 증가율을 고려할 때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 수준으로서 국가

재정운영에 무리한 부담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셋째,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보도된 2008년도 국가 채무규모 240조원은 서로 다른 가정과 전제를 바탕으로 전망한 두가지 시나리오 중 비관적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낙관적 시나리오에 의하면 2008년 국가 채무규모는 180조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경우 모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20~27%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78.2%(03년 기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데도 국가 빚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6월 18일자 4면 『부슨 돈으로?』제하의 기사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의 실행과 관련,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재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향후 10~20년간 소요재원으로 제시한 230조원은 일부사업이 이중계산된 것으로 모든 사업이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4년 7월 9일까지 조선경제 2면에 박스기사로 게재 하되, 제목활자 크기(반론보도문)는 중재대상 기사의 중간제목(순환도로망...)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7월 8일자 B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시흥교회 전임 담임목사였던 신청인이 추문에 연루되어 교회를 떠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290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4. 6. 28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조선일보 : 『공채로 뽑힌 목사님 앞치마를 두르셨네』

제하의 기사 (2004년 5월 28일자 19면)

내 용 : 지난 23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시흥교회. 이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예배와 신임 방수성 담임목사(44) 위임식이 열리고 있었다. (중략)

이날 시흥교회는 우리나라 개신교 120년 역사에 드문 두 가지 겹경사를 맞았다.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지난 1904년 개척된 지 100주년을 맞은 것도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회로서는 거의 유래가 없는 민주적 공채(公債) 방식으로 새 담임목사를 맞은 것.

시흥교회는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담임목사가 없었다. 전임 담임목사가 추문에 연루되어 떠나는 과정에서 교회도 내부진통을 겪었던 것.

그러나 시흥교회는 모범적인 정관을 마련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친 목사 청빙으로 내홍을 극복해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28일자 19면에 『공채로 뽑힌 목사님 앞치마를 두르셨네』 제하의 기사에서 “전임 담임목사가 추문에 연루되어 떠나는...”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전임 담임목사는 이와 관련 추문에 연루되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전임 담임 목사는 소신을 가지고 목회해야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갖고 2002년 2월 24일 대예배시 전교인들 앞에서 화해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 ○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조선일보 5월 28일자 19면 『공채로 뽑힌 목사님 앞치마를 두르셨네』 제하의 기사 중 전임담임목사가 추문에 연루되어 떠났다는 보도에 대해 시흥교회 전임담임목사는 추문에 연루되어 떠난 것이 아니며, 원로목사와 화해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4년 7월 16일까지 종교면에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7월 16일자 A2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 편집자 주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연령번호 등을 사실명·이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판결 1

취재기자들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제보자가 제공한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자료일 가능성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진실하다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7. 자 판결 (2002가합70506)

###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한나라당이 '한인옥 씨 10억 수수설'과 관련하여 이○○ 전 기양건설 상무와 독립신문사 및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1억원을 배상하되 이중 5천만원은 이씨와 독립신문사 그리고 취재기자 등이 각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의 주된 목적이 원고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대한 완화할 필요가 있음과 함께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임을 감안, 보도의 신속성 못지않게 정확성과 신중성이 더욱 더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기사는 김○○과 대립관계에 있던 피고 이○○의 제보에 근거한 것으로 모두 김○○ 또는 원고와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거나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쉽게 믿을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도, 피고 취재기자들은 원고나 김○○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충분한 취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고 이○○ 등의 주장에 근거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등 비중 있게 기사화한 점, 특히 김○○의 비자금에 이회창이나 한인옥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가장 유력한 근거로 제시된 문서인 '자금지출내역서'는 피고 취재기자들로서도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이면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기양건설이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특별장부라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기사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취재기자들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고 보도를 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 독립신문사가 발행하는 시사저널 2002년 11월 14일자에 『한인옥, 10억원 받았다?』, 『기양건설 전 상무 장부 공개·인터뷰 ... 김○○ 회장 부부가 전달』 제하의 기사에서 김○○ 이 신앙촌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이회창 측에 전달했

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판 결 문**

사 건 : 2002가합70506 손해배상(기)

원 고 : 한나라당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4-17

대표자 박 근 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봉 규

Ⅲ 고 : 1.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대표이사 심 상 기

2. 이 ○ ○

3. 주 ○ ○

피고 1, 2, 3의 주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58-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최 승 수

4. 이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호 영

변론종결 : 2004. 6. 16.

판결선고 : 2004. 7. 7.

주 문 :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은 1억원,

나. 피고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피고 이○○, 피고 주○○는 피고 이△△과 각자 가.항 금액 중 5,0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1. 23.부터 2004. 7. 7.까지는 연 5%, 2004. 7. 8.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원 및 이

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강제1호증의 1, 2, 3, 강제2호증, 강제6호증의 3, 5, 8, 9, 10, 11, 12, 13, 15, 을가제1호증의 3, 4, 6, 9, 10, 15, 17, 18, 19, 21, 25, 27, 28, 30, 을가제2호증의 12, 20, 25, 을가제9호증의 1, 2, 3, 을가제19호증의 16, 32, 33, 43, 46, 54, 을가제20호증의 9, 10, 14, 15, 17,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을 후보로 추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정당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매주 수요일마다 주간지 '시사저널'을 발간하고 있고, 피고 이○○, 주○○는 다음에서 불 '시사저널'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한 피고 독립신문사 소속 기자들이며, 피고 이△△은 피고 주○○ 등에게 이 사건 기사에 관련된 제보를 한 사람이다.

나. 기양건설산업의 신앙촌 재개발사업

(1) 기독교 유사계열인 재단법인 시온학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등 일대의 지역은 시온학원이 신앙촌이라는 공동체를 설립하여 그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그곳에 아파트 5,500세대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 시행방침이 정해지자, 주민들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협의회와 주민회의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다.

(2) 1996년경부터 소외 김○○이 운영하는 기양건설 주식회사는 주민협의회 측에, 소외 김△△이 운영하는 세경진흥 주식회사는 주민회의 측에 접근하여 서로

재개발사업권을 얻으려고 경쟁하면서, 기양건설은 액면금 합계 138억원의 약속어음을, 세경진흥은 액면금 합계 396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동서팩토링 주식회사,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 등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아 그 할인금으로 토지를 매수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1997년말에 닥친 IMF 외환위기로 기양건설과 세경진흥이 발행한 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되었다.

(3) 김○○은 1998. 6. 25. 기양건설의 후신으로 기양건설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1999년 12월경 세경진흥이 발행한 396억원의 어음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세경진흥으로부터 재개발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수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4) 그리고 기양건설산업은 2000년 4월경 현대건설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현대건설로부터 기양건설과 세경진흥이 발행한 부도어음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340억원을 대여받았는데, 김○○은 기양건설산업의 상무이사였던 피고 이△△과 상의하여 그 대여금의 범위 내에서 부도어음을 모두 변제하여 회수할 방안을 모색하다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외형상 제3자인 그 법인이 부도어음을 저가에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2000년 4월경 주금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BHI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이△△을 대표이사에 취임하도록 한 다음, 금융브로커 등을 동원하여 부도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던 동서팩토링 등 금융기관(대부분 파산하여 예금보험공사 등이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BHIC에게 부도어음을 합계 149억원에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현대건설로부터 대여받은 돈에서 191억원의 차액을 남기고 부도어음을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5) 또한 김○○은 2001년 1월경부터 11월경까지 부천시 지역 관내 경찰관 또는 교육청 관계자에게 재개

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진정 등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청탁하거나 시온학원의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문제에 관하여 청탁하면서 뇌물 등을 공여하였고, 아파트단지 내 학교부지 조성공사를 도급준 업체에게 실제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 전의 상황

(1) 피고 이△△은 기양건설산업이 재개발사업권을 취득하고 부도어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이익 분배문제 등으로 김○○에게 불만을 품고 2001년 8월경 기양건설산업을 퇴직한 다음 수사기관에 김○○의 위와 같은 바리에 관하여 제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은 2001. 11. 19. 횡령·배임증제죄 등 혐의로 구속되어(2001. 12. 26. 보석으로 석방) 2002. 1. 24. 이 법원 2002고합727, 750, 883호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이△△은 그 뒤에도 신앙촌 주민회의측 관계자에게 자신이 작성한 김○○의 뇌물제공목록을 제공하여 그 관계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진정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은 2002. 6. 27. 다시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구속되어(2002. 9. 18. 보석으로 석방) 2002. 10. 1. 이 법원 2001고합1302호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도 그 과정에서 피고 이△△을 공갈 등 혐의로 맞고소하여 이△△으로 하여금 구속당하게 하는 등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2) 피고 이△△은 위와 같이 신앙촌 재개발사업에서뿐만 아니라 서울 한남동 단국대학교 부지 주택조합 사업에서도 기양건설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던 김△△과 협의하여 이번에는 김○○의 범죄사실을 언론에 폭

로하기로 하고, 2002년 5월경 김△△으로부터 경향신문사에서 발간하는 주간지 '뉴스메이커' 팀 소속 소외 이△△ 기사를 소개받아 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보하면서 이△△에게 뇌물제공목록, 비자금장부 등을 제공하였다.

(3) 이△△의 취재로 2002. 6. 13.자 및 2002. 6. 27.자 뉴스메이커에 "기양건설산업이 유명업체를 내세워 신양촌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예금보험공사 고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이나 금품을 제공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어음을 헐값에 사들이는 수법으로 2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비자금을 조성하고 기양건설산업 임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4) 한편 피고 이△△은 김△△에게 "김○○의 부인인 장○○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예정자 이회창의 부인인 한인옥과 친인척관계인데 1997년 가을 개최된 신라호텔 모임에서 한인옥에게 5,000만원을 준 일이 있다"라고 말하였고, 김△△이 피고 이△△에게 그와 같은 진술내용에 관하여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자, 2002년 9월 초경 '이○○'라는 가명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후 '李'라고 서명하고 김△△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김△△은 2002년 8월 초순경 신양촌 주민회의측 사람과 함께 새천년민주당의 김○○ 전문위원에게 "김○○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게 비자금을 주었다"는 내용이 담긴 신양촌 주민회의 명의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진정서를 전달받은 새천년민주당의 김○○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받고 위와 같이 피고 이△△이 2002. 9월 말경 다시 가명으로 작성한 제보내용 확인서를 건네준 다음, 2002. 10. 8. 피고 이△△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양건설의 각종 장부, 예금통장,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피고 이△△이 수첩에 작성한 초기 비자금 내역 등 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5) 이에 새천년민주당의 전○○ 국회의원은 김○○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2002. 10. 10.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하여 김○○이 약 400억원의 로비자금을 조성하여 19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대통령후보 부부와 측근 인사들에게 최소한 80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 중 4장의 약속어음과 피고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6) 이△△은 피고 이△△ 등으로부터 "김○○의 처제가 이회창 후보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장○○에게 조흥은행 남산지점 발행의 6억원권 자기앞수표를 전달하였고 장○○가 그 돈을 이회창 후보가 거주하던 서울 가회동 경남빌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내용의 신양촌 주민회의 명의의 진정서 및 종로구 가회동 빌라를 구입할 당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6억원의 조흥은행 자기앞수표와 입금표 사본을 입수하고 그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의 취재를 거쳐, 2002. 10. 24.자 뉴스메이커에 "조흥은행 남산지점 발행 자기앞수표와 입금표 사본 및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신양촌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성한 비자금 중 6억원이 이회창에게 가회동 빌라를 제공하여 준 사람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이 사건 기사

(1) 이 사건 기사 직전의 보도

피고 독립신문사 소속의 기자인 피고 이○○는 그동안 국회에서 주장되거나 뉴스메이커 등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취재를 계속하여 2002. 10. 24.자 시사저널(배포시기는 일주일 전인 2002. 10. 17.경으로 보인다. 다른 일자 시사저널도 같다)에 '이회창 비자금 배일 벗기는가', '기양건설 80억원 제공설 도마에 올라. 민주당 가회동 빌라 구입자금도 김○○ 회장이 제공'이라는 제목으로 주로 새천년민주당의 주

장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신앙촌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김○○이 1997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유령회사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부도어음을 다시 싼 값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5백억원을 조성했고, 그 중 1997년 7월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138억원에 할인하여 그 중 46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김○○이 그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80억원 가량을 이회창 후보 측에게 전달하였다. 김○○의 처 장○○는 이회창 후보의 처 한인옥과 먼 인척인데 한인옥에게 5천만원을 전달하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기양건설산업 전 직원의 진술서가 공개되었다"는 취지의 별지 제1기사를 게재하였다.

(2) 김△△은 기양건설이 동서팩토링 등으로부터 할인받은 약 138억원 중 10억원이 이회창(한인옥)에게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 기양건설의 명판이 찍혀 마치 기양건설에서 작성한 내부 서류인 것처럼 위조된 '자금지출내역서' (A4 용지 1장에 표형식으로 약 138억원의 지출내역이 사업부지대금, 김○○의 사택 관련비용 등의 순서대로 지급처·지급일·지급금액·지급내역 항목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고, 특히 마지막 줄에 위와 같이 지급처가 '이회창(한인옥)', 지급일이 '수시지급', 지급금액이 '10억원', 사용내역이 '5천만원 내지 1억원을 수시인출하여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김△△과 피고 이△△ 중 한 명이 또는 그들이 함께 피고 이△△이 기양건설에서 갖고 나온 각종 장부를 분석하여 138억원 중 지출 증빙이 부족한 금액을 10억원으로 보고 이 문서를 만든 것으로 짐작된다를 2002년 10월 중순경 이△△에게 기양건설의 '어음및수표발행내역서' (138억원의 어음을 포함한 기양건설의 어음·당좌수표의 발행내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토지매입대장, 조흥은행 남산지점 발행 6억원권 자기앞수표 사본과 입금표 사본 등의 문서와 함께 제공하였다.

(3) 김△△은 다시 2002. 11. 4. 평소 피고 이○○와

함께 김○○의 정치권 밀착 여부를 집중 취재하던 피고 독립신문사 소속의 기자인 피고 주○○에게도 '자금지출내역서'와 '어음및수표발행내역서', 토지매입대장 등 관련자료를 건네주면서(이 때 건네준 '자금지출내역서'는 하단에 날인되어 있던 기양건설의 명판 부분이 가려진 사본인 것으로 보인다), '자금지출내역서'가 피고 이△△이 기양건설에서 가지고 나온 특별장부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고 주○○가 피고 이△△에게 전화로 '자금지출내역서'와 관련된 인터뷰 요청을 하자, 피고 이△△은 "자금지출내역서는 기양건설의 비자금 내역이 적힌 특별장부다. 그 장부에 적힌대로 기양건설의 약속어음 2장을 할인한 47억 원에서 이회창과 한인옥에게 로비자금으로 10억 원이 전달되었다. 김○○이 다방 종업원을 시켜 수차례 5천만원과 1억원을 인출하여 그의 아내 장○○가 현금으로 전달했다. 특히 1997년 11월경 신라호텔의 행사에서 장○○가 한인옥에게 '언니'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대했고, 김○○으로부터 당시 한인옥에게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4) 한편 이△△ 기자는 2002. 11. 4. '자금지출내역서'와 관련하여 "자금지출내역서는 당시 회계장부에 적힌 기양건설의 어음 및 당좌수표내역을 토대로 자금조달내역을 산출한 뒤 부동산 매입현황 등 자금이 지출된 내역을 따로 뽑아 정리해 둔 것이다. 작성시기만 다를 뿐 기양건설의 입·출금 원 장부와 조달 내역 및 지출내역서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중략) 여기까지는 기양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매입대금 지출현황과 자금지출내역서가 모두 일치한다. 문제는 남은 차액 10억 원에 대한 행방이다. 자금지출내역서에는 이 돈이 한인옥 여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기양건설의 원장부에는 명확하게 표시돼 있지 않은 것이다. (중략) 이와 관련하여 뉴스메이커는 김○○ 회장과 동업자이면서 이번 비자금 장부의 진실을

밝혀줄 기양건설 핵심인사의 증언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의 기사 초안을 작성한 뒤, 이△△에게 자금지출 내역서 등과 관련한 문의를 하였던 피고 주○○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었으나, 뉴스메이커에 그 초안에 기초한 기사가 게재되지는 않았다.

#### (5) 이 사건 기사 내용

피고 주○○는 위와 같은 취재를 토대로 피고 이○○와 함께 2002. 11. 14.자 시사저널에 ‘한인옥, 10억원 받았나?’, ‘기양건설 전 상무 장부 공개·인터뷰…김○○ 회장 부부가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2기사(다음부터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크게 ① 김○○의 비자금어 이회창측으로 유입되었음을 시사하는 기양건설 내부 장부와 관련자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위와 같이 김△△으로부터 입수한 어음 및 수표 발행내역서를 <자료1>로, ‘자금지출내역서’를 <자료2>로 하여 그 사진을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 ② 그 자료들이 기양건설의 특별 장부라는 피고 이△△의 진술을 인용하면서 피고 이△△이 김○○의 최측근으로서 그의 자금거래를 꿰고 있다가 현재 사이가 틀어졌다고 설명하는 부분, ③ 김○○이 장○○를 통하여 한인옥에게 돈을 주다가 나중에는 직접 주었다는 피고 이△△의 진술이 포함된 피고 이△△과의 일문일답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마. 이 사건 보도 이후의 상황

(1) 그 후 피고 이○○, 주○○는 2002. 11. 21.자 시사저널에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다’, ‘한인옥과 10억 진실게임’, ‘기양이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했고, 한인옥 10억원 수수설 관련자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추적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양건설이 신양촌 재개발사업에 뛰어들어 세경진흥을 제치고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과정에서 토지매입대금으로 발행한 138억원의 약속어음금 중 일부가

한인옥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으로 그동안 게재하였던 기사를 다시 정리하는 내용의 별지 제3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기사에는 ‘새 시공사인 LG건설로부터 대여받은 돈 일부가 이회창이 거주하는 가회동 빌라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쓰였다’는 뉴스메이커 기사를 인용하는 부분과 피고 이△△ 및 김○○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별도의 박스 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시사저널에 이 사건 기사와 2002. 11. 21.자 후속 기사가 게재되자, 기양건설산업은 2002. 11. 19. 조선일보에 “기양건설산업은 한나라당이나 어떤 정치권과도 무관하고 장○○ 등은 한인옥과 일면식도 없다. 피고 이△△은 회사가 정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문서인양 자금지출내역서라는 문서를 몰래 만들어 한인옥에게 10억원을 준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호소문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3) 이에 피고 주○○는 김△△과 피고 이△△에게 김○○이 조선일보에 게재한 호소문을 통해 자금지출내역서가 위조서류라고 주장하는 것을 거론하며 그 진위를 물었고, 이에 대하여 김△△은 “자금지출내역서는 기양건설의 장부가 틀림없다. 비자금 장부를 만든 사람들이 그 장부를 비자금 장부라고 인정할 리 없다”고 말하고, 피고 이△△은 “기양건설의 통장이나 해화다방 종업원들이 인출한 주택은행 출금내역표를 보면 돈의 흐름을 금방 알 수 있다. 더 정확한 증거는 검찰에서 밝혀겠다.”는 등으로 마하였다.

#### 바. 민주당의 대응 및 대통령선거 결과

민주당 대변인들은 시사저널의 보도가 이루어질 무렵인 2002. 10. 11.경부터 제16대 대통령선거일인 2002. 12. 19.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이회창 또는 한인옥이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 내지 80억원의 검은 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하였고, 이회창은 그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사. 수사결과 및 피고 이△△ 등의 형사처벌

(1) 검찰은 2003. 4. 18.경 '자금지출내역서'에서 이회창에게 전달되었다는 10억원의 조성근거로 지목된 기양건설 발행 어음 2장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그 약속어음들을 할인한 자금에서 이회창 또는 한인옥에게 건네간 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 피고 이△△은 이 사건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이 법원 2003고합694호로 2003. 10. 2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2003. 5. 12. 구속), 기양건설산업과 김○○이 피고 이△△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법원 2003가합55672호로 2003. 12. 2. 기양건설산업 등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3) 김△△ 역시 이 사건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이 법원 2003고합1166호로 2004. 3. 25.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 2. 판단

### 가. 명예훼손의 성립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기양건설이 신앙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이회창이나 한인옥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비록 그 각 기사의 표현 중에는 다른 사람의 주장 또는 진술을 인용하거나 추측 또는 의혹을 나타내는 형태로 된 부분이 많고, 이 사건 기사의 전후로 그 기사의 내용을 부인하는 김○○ 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관한 기사를 함께 게재하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사의 주요 취재원인 이△△이 김○○의 비리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기사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가 되는 서류라고 하면서 기양건설의 자금지출내역서 등에 관

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등,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표현, 각 부분 기사의 비중, 기사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흐름, 보도태도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기사 내용이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강한 인상을 줌으로써 이회창이나 한인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직접적으로는 이회창 또는 한인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정당의 중요한 존재목적 중의 하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인데(정당법 제2조 참조),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 이회창은 원고의 총재로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원고의 후보로 지정된 상태였고, 원고로서는 대통령선거에 추천한 후보의 당선여부에 따라 장차 여당으로서 주도적으로 고유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야당으로서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조력하는 지위에 머무를 것인지가 결정되는 등 통상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과 대표자의 관계보다 이회창에 대하여 더욱 밀접하고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정당인 원고와 이회창 또는 한인옥이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인격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원고의 목적 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정당인 원고의 명예 또한 함께 실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이회창이나 한인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당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 독립신문사, 피고 이○○, 주○○의 주장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당시 원고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의 자질·인품·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도된 것이므로 공익성이 있고, 피고 이○○

○. 주○○가 피고 이△△이나 김△△. 이△△ 기자. 전 ○○ 국회의원. 범박동 주민들을 상대로 확인취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피고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2)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신양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기양건설이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백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부실이 초래되어 수백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그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이 원고의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에게 유입되었다는 등의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그 진실여부를 밝히고자 하는 점에 있으므로,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은 쉽게 인정된다.

(3) 진실성

이 사건 기사 중 김○○이 신양춘 재개발사업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10억원을 장○○를 통하여 또는 직접 5,000만원 내지 1억원씩 이회창 후보 측에게 전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나머지 의문제기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특별히 문제삼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그 내용에 부합하는 근거로는 피고 이△△의 진술, 이△△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하여 임의로 작성된 자금지출내역서, 범박동 주민들이 작성한 진정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국회에서의 주장 등이 있으나 아래의 '상당성'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김○○이 1997년 11월 신라호텔 모임에 장○○와 함께 참석하여 한인옥에게 5,000만원을 직접 건네주거나 다방종업원들에게 심부름을 시켜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수시로 5,000만원 내지 1억원의 돈을 이회창측에 주었다는 사실 등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상당성

(가) 나아가, 피고 이○○, 주○○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사는 김○○이 신양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비리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 비리행위로 조성된 자금을 이회창측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서, 보도의 주된 목적이 원고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이 김○○의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여 이회창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적 사항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대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기사는 그로 인하여 새로운 정치쟁점이 형성되고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선거결과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도의 신속성 못지 않게 정확성과 신중성이 더욱 더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사는 주로 신양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김○○으로부터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김○○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김○○과 대립관계에 있던 피고 이△△의 제보와 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던 신양춘 주민회의 관계자들의 진술, 김○○과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다가 밀려난 김△△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지출내역서, 김△△과 주민회의 관계자의 진정을 받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를 정치쟁점화 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등에 근거한 것으로 모두 김○○ 또는 원고와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거나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쉽게 믿을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피고 이○○, 주○○가 원고나 김○○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충분한 취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고 이△△ 등의 주장에 근거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등 비중있게 기사화한 점, 특히 김○○의 비자금에 이회창이나 한인옥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가장 유력한 근거로 제시된 문서인 '자금지출내역서'는 그 내용이 날짜순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관된 형식으로 타자되어 있는 등 사후에 작성한 것이라는 점이 의형상으로도 분명하고, 이△△이 작성하여 피고 주○○에게 송부한 기사 초안에도 분명히 '자금지출내역서'가 기양건설의 장부를 기초로 자금조달내역과 지출내역을 사후에 정리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져 있으며, 수령인을 이회창 또는 한인옥으로 하여 5,000만원 내지 1억원이라는 불특정한 금액을 수시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 이○○, 주○○로서도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이면 '자금지출내역서'는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인데 이△△이나 김△△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자금지출내역서'가 기양건설이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특별장부라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기사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이○○, 주○○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고 보도를 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이△△의 경우 김△△에게 김○○이 이회창에게 수시로 돈을 주었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말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그럴듯하게 뒷받침할 자료를 제공하여 김△△으로 하여금 피고 주○○ 등에게 잘못된 제보를 하게 하고 피고 주○○ 등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보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여 커다란 사회

적 파급효과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배상할 금액을 1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내용, 게재 시점, 피고 이○○, 주○○가 사실확인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취재자가 취할 수 있는 사실확인의 방법과 정도, 대통령 후보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의혹은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는 점, 원고측 주장을 기사화하는 데에도 약간의 지면을 할애한 점, 기사 게재 이전의 상황과 그 이후의 경과, 피고 독립신문사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이회창 및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독립신문사, 피고 이○○, 주○○ 각 각자 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 3. 결 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이△△은 1억원, 피고 독립신문사, 피고 이○○, 주○○는 피고 이△△과 각자 위 1억원 중 5,0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3. 1. 23.부터 판결선고일인 2004.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피고들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4. 7. 8.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상 균

판사 최 정 인

판사 강 재 원

□

## 판결 2

원고의 활동 목표와 내용, 대외적인 성명 등을 통해 원고 스스로 밝힌  
설립 배경과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기한 의혹이나 주장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7. 자 판결 (2003가합35432)

###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언론개혁을 따르는 후보를 내년 총선에서 지지할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를 노무현 정권의 친위세력 내지는 ‘관변, 어용단체’로 왜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의 활동 목표와 내용, 원고가 대외적인 성명 등을 통해 원고 스스로 밝힌 설립 배경과 목적, 원고 소속의 저명인사의 구성 내용, 원고가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정치인의 면면, 그 밖에 통상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가진 어떤 단체의 정치적 성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단체에 소속된 일반인들의 입장보다는 소속 저명인사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 등이 그 평가의 기준이 될 여지도 있는 점, 원고가 표명하고 있는 2001년 제17대 총선에서의 이른바 개혁인사 당선운동에 있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그의 정치적 입장에 견해를 같이하거나 그에 대하여 호의적인 정치인들에 대하여 지지활동을 하리라고 예상할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정치인에 대한 지지활동이나

낙선·낙천 운동 등을 통해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만큼 정치영역에서 일정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타인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하는 만큼 원고 스스로도 상당한 정치적 비판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내용이 비록 원고를 노무현 정권 또는 그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들만을 편들기 위한 단체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정도의 의혹 제기나 주장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의 “피고가 오로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로 한나라당 부대변인이나 사무총장의 원고에 대한 발언을 일방적으로 인용,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의 기사에는 한나라당 당직자가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을 뿐이고 한나라당의 소속의 당직자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은 진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발언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을 과다한 논평 없이 그대로 게재한 피고의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아니 했다.

원고는 조선일보가 2003년 4월 3일자 A1면 『노대통령의 정치·언론개혁 따르는 후보 내년 총선서 지지할 것』, A6면 『“조선일보 보는 사람과는 결혼 안 하기 운동 벌이자”』, 2003년 4월 10일자 배달판 『국민의

힘은 노 친위대... 즉각 해체지시 내려야. 2003년 4월 23일자 『국민의 힘』은 정권의 흥위병』 등의 제하 기사를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3가합35432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4-1 신도빌딩 2층  
대표자 이 ○ ○, 김 ○ ○, 심 ○ ○  
Ⅲ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상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룻, 김 태 수

변 론 종 결 : 2004. 5. 12.

판 결 선 고 : 2004. 5. 27.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조선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A1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제1항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공지의 사실 또는 강제1호증의 1 내지 8, 강제2호증, 강제3호증의 1, 강제4호증의 1 내지 3, 강제6호증의 1 내지 3, 강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정보 공유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 정치의식을 고양하여 제도 및 의식 전반에 있어 정치개혁, 언론개혁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단체의 목적으로 표명하면서 2003. 2. 17. 정식 사이트(www.cybercorca.org)를 개설하였고, 2003. 2. 27. 원고 설립을 위한 준비단체인 추진위원회가 원고의 창립제안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후 2003. 4. 19.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된 단체로서 인터넷상으로 실명 확인을 거쳐 가입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이며, 피고는 일간지 '조선일보' 등을 발행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게재 전의 상황

(1) 원고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2003. 2. 27.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추진위원회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창립제안문'에서 언론개혁, 정치개혁, 국민통합 등을 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고 2004년에 있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바른 정치인의 팬클럽이 모일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권자 활동, 언론개혁을 위한 감시활동과 절독(絶讀)운동 등의 언론개혁 활동, 국민통합을 위한 일의 실천 등을 위하여 원고를 설립한다는 취지를 천명하였다.

(2) 그와 같은 창립제안문 말미에는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의 팬클럽이었던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노사모'라 한다)의 회장이었던 영화배우 명○○, 노사모의 회원이었던 영화배우 분○○, 시인 노○○, 대표적인 조선일보 비판단체인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하, '조아세'라 한다)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 임○○, 운영위원 이○○ 등이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의 '먼저 모인 사람들' 명단

에, 조선일보반대시민모임의 대표자인 김○○, 회원인 김○○ 등이 정책자문위원단 명단에 각각 포함되어 있었고, 한편 명○○은 그 기자간담회에서 원고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노사모’가 작성한 개인들의 느슨한 모임이었다면 ‘국민의 힘’은 회비를 내는 진성 회원 중심의 꼭 짜인 전사들의 모임”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3) 그 후 원고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2003. 3. 29. 및 2003. 3. 30.에 오산시 소재 삼보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각지의 회원들이 모이는 ‘전국 대번개’ 모임(이하, ‘전국모임’이라 한다)을 가졌고, 2003. 4. 17.경에는 인터넷투표를 통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대표일꾼’으로 소외 김○○, 이○○, 정○○를 선출하였으며, 2003. 4. 19. 및 2003. 4. 20.에는 조치원 소재 청소년수련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4) 한편 2003. 3. 29. 및 2003. 3. 30.에 있었던 전국 모임에서는 ‘국민통합의 밤’이라는 행사에서 소외 김○○(당시 경기대 교수로 원고의 정책자문단 소속)이 ‘정치·언론개혁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고, 정치개혁분과, 언론개혁분과로 나뉘어 ‘국민의 힘 사업분야별 워크숍’이라는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그 중 정치개혁분과에서는 소외 박○○(당시 참여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낙천·낙선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소외 이○○(당시 새천년민주당 구로갑지구당 위원장)이 ‘민주당 개혁안을 둘러싼 향후 민주당 진로’라는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언론개혁분과에서는 소외 김○○(전 대한매일신문 주필)이 ‘조선일보 친일윤전기 철거조치 후 처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소외 최○○(당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의 사무총장)가 ‘조선·동아 민족신문으로 기재 역사교과서 개정과 불체택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다. 조선일보의 2003. 4. 3.자 기사

(1) 파고가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3. 4. 3.자 A1면 좌측 상단 부분에는 원고의 그와 같은 전국모임을

다루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그 기사는 “노대통령의 정치·언론개혁 따르는 후보 내년 총선서 지지할 것”이라는 큰 제목하에 “노사모 핵심·조아세 통합 ‘국민의 힘’ 모임”, “조선일보만 까면 중앙·동아는 저절로 해결”이라는 소제목으로 『연예인 명○○, 문○○ 씨 등 ‘노사모’를 최근 탈퇴한 인사와 대표적 안티조선 단체인 ‘조아세’가 통합해 창립을 추진 중인 ‘국민의 힘’이란 단체는 조선일보 절독운동과 국회의원 개인비리 조사 등을 통한 낙천·낙선운동을 펼칠 것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노사모’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처럼 ‘국민의 힘’은 일부 정치인,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언론개혁을 따르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혀 정치·언론계에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30일 경기 오산시 삼보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각 지역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국민의 힘’ 전국대회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바 ‘언론개혁사업’으로 조아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폭언론 절독 방법을 대중에게 알리는 등의 사업을 통해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치개혁사업’으로는 대통령 4년 중 임제 도입과 인터넷 선거운동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국회의원 개인비리·의정활동 조사 및 DB 축적을 통한 낙천·낙선운동, 정치인 팬클럽 결성 활성화 운동 등을 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 김○○ 전 평민당 당보 주간은 “조선일보에 글 쓰는 사람과 사돈 안 맺기, 조선일보 보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민의 힘의 한 회원은 “조선일보만 까면 중앙과 동아는 또 저절로 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명○○ 씨, 이○○ 민주당 의원, 최○○ 민주언론운동연합 사무총장, 임○○ 조아세 대표, 김○○ 경기대 교수, 박○○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는 내용

이다(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

(2) 또한 같은 일자의 조선일보 A6면에는 “조선일보 보는 사람과는 결혼 안 하기 운동 벌이자”, “내년 총선 겨냥해 국회의원 비리 조사 통한 낙선운동도 결의”라는 제목하에 “언론·정치개혁 주장하는 ‘국민의 힘’ 전국 모임”이라는 기획특집 기사에서, 앞서 본 원고의 2003. 3. 29. 전국모임에서 있었던 언론개혁에 관한 강연 중 김○○이 “조선일보 보는 사람과 결혼도 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어떠한 목적을 가졌고 그 인적 구성은 어떠한지를 상세히 다루는 내용의 기사가 작성·게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

라. 조선일보 2003. 4. 10.자 기사

조선일보의 2003. 4. 10.자 신문의 배달판에는 “국민의 힘은 노친위대… 즉각 해체 지시 내려야”, “한나라당 촉구”라는 제목하에 『한나라당은 9일 배우 명○○, 문○○ 씨와 안티조선 활동가들이 주축이 된 단체인 ‘국민의 힘’과 관련, “중심인물 면면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친위대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은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가장하지 말고 즉각 ‘국민의 힘’ 해체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선일보 글 쓰는 사람과 사돈 안 맺기 ▲조선일보 구독자와 결혼 안 하기 등 ‘국민의 힘’이 추진하고 있는 운동내용을 열거하면서 “혼란이 극심했던 광복 직후에도 이같이 편향적이고 속이 뻔히 보이는 활동을 버젓이 표방한 단체는 찾아보기 힘든 듯하다”고 말했다.』라는 기사가 작성·게재되었고, 2003. 4. 9.자 조선일보의 인터넷판에는 그와 같은 취지의 기사에다가 『황 부대변인은 “독일 나치스 시대의 위르겐스, 중국 모택동 시절의 홍위병들이 얼마나 역사를 후퇴시켰는지 상기해야 한다”며 “선관위와 검찰, 경찰 등 선거관리기관도 초당단체에서부터 이 단체의 불법성에 대해 엄중단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제3기사'라 한다).

마. 조선일보 2003. 4. 23.자 기사

조선일보 2003. 4. 23.자에는 “‘국민의 힘’은 정권의 홍위병”이라는 제목하에 『한나라당 김○○ 사무총장은 22일 “노사모의 과격 불법 정치활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참여한 자칭 ‘국민의 힘’이 창립총회를 열고 공격적인 활동을 선언하고 나섰다”면서, “이 단체는 겉으로는 ‘국민의 힘’을 표방하고 있으나 인적 구성과 활동방향을 보면 야당과 언론탄압을 주목적으로 하는 현정권의 홍위병임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이 단체는 일간지 기사에 점수를 매기고, 조선, 동아, 중앙일보의 사실과 칼럼을 비판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이는 현정권이 추진 중인 언론탄압에 이 단체가 홍위병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이들이 현정권의 전위세력임을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낙선·낙천운동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치테러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사가 작성·게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4기사'라 한다).

##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비법인사단의 정관작성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반드시 서면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임에도 원고의 정관은 그 작성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원고의 회원은 인터넷사이트에 실명인증만 하면 회비납부와 무관하게 회원자격을 얻게 되어 있어 회원의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것과 같으며, 원고의 정관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인터넷투표를 두고 있으나 인터넷투표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인터넷 동호회에 불과할 뿐 우리 법이 일정한 경우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이라

고 할 수 없고, 원고는 2003. 4. 19. 창립총회를 하였다고 하는데 문제된 기사 중 3개는 원고의 창립총회 전에 보도된 것이므로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이전의 보도에 대하여까지 그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비법인사단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총유재산에 관련된 소송에서만 그러한 것이지 단체의 개별 구성원들에게 귀속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단체가 대신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계속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 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비법인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한 각 증거 및 갑제8호증의 1 내지 5,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3, 갑제13 내지 1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창

립총회는 2003. 4. 19. 개최되었지만 원고는 현재의 명칭으로 2003. 2. 17.경부터 인터넷상에 사이트를 개설한 이래 원고의 활동목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원고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2003. 2. 27. 원고의 창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의 자격, 원고의 조직 구성, 사업목표 등을 설정하고, 정식 설립시까지 명○○, 임○○, 정○○ 3인이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로 선임되었으며, 2003. 2. 27. 창립추진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외적인 활동을 시작한 사실, 원고의 정관에는 회원은 정관 제2조에서 정하는 원고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가입시 실명인 증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비는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선출직 선거에 있어 피선거권은 회비 납부 회원에 한하여 부여된다고 정하고 있고(정관 제6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제명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제7·8조),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인터넷투표를 두고 안전상정의 방법과 투표일정의 확정방법, 상정안건의 공지기간,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고(제10조 내지 12조), 대표자 및 운영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3조 내지 17조), 재정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 사실(제18·19조), 인터넷상이기는 하나 2003. 4. 4.에는 2003. 4. 4.부터 2003. 4. 9.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인 대표일꾼을 추천해달라는 공고, 추천된 사람들의 선거운동, 2003. 4. 15.부터 2003. 4. 17.까지의 기간 동안 인터넷투표를 통하여 대표자 선출 및 정관 찬반 투표의 절차를 거쳤고,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은 접속한 회원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원고의 사이트에 공지되어 있는 사실, 그 대표자 선출을 위한 인터넷선거에 선거인단 1919명 중 546명이 투표하여 초대 대표자로 김○○, 이○○, 정○○가 선출되었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03. 10. 16. 2대 대표자로 이○○, 김○○, 심○○이 선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에의 가입을 원하는 개인들은 실명확인이라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원고에 가입함은 물론 그 가입회원들에 의하여 정관이 확정되었으므로 기명날인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관작성 행위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요건인 조직, 대표자의 선출방법, 회원의 자격, 재정의 구성이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을 확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법인의 경우는 물론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타인의 어떠한 표현으로 인하여 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예·신용 등을 침해당하였다면 명예의 주체가 되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완전히 갖추기 전의 명예 등 침해행위와 관련해서도 그 침해행위가 비법인사단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할 것이며,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발행의 앞서 본 조선평보 기사로 인하여 원고라는 단체의 명예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지 그 소속 회원 개개인의 명예 훼손을 청구원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의 본안전 향방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3.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제1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 (1)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원고의 2003. 3. 29. 및 2003. 3. 30. 전국모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언론개혁을 따르는 후보를 내년 총선에서 지지할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1기사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를 노무현 정권의 친위세력 내지는 ‘관변, 어용단체’로 왜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

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기사는 그 기사의 내용, 사용된 어휘의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는 노무현 정권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그에 대해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언론기관에 대하여 낙선·낙천운동을 벌이고, 절독운동 등을 행하는 등 무조건적 비판을 가하는 단체로 인식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단체로서 정치·언론개혁 및 국민통합을 지향한다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전국모임에서 “내년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언론개혁을 따르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발언은 언론개혁 부분 토론회의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으로서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 소속 회원 중 누군가가 이 사건 제1기사의 제목과 같은 내용의 발언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기사 내용과 같이 “노 대통령의 정치·언론개혁 따르는 후보 내년 총선서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기사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14호증의 6, 을제1호증의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전국모임에서 원고 소속의 회원 중 누군가가 이 사건 제1기사에 게재된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언론매체의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정치적 이념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그에 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은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

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강제4호증의 4 내지 7, 강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3. 2. 27. 자 창립제안문에서 “국민참여경선으로 뽑힌 후보가 국민의 성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거운동 덕에 대통령이 된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발성의 승리’였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을 수행하고, 바른 정치인을 위한 팬클럽이 모일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것이며, 언론개혁을 위한 모니터링과 절독운동까지 망라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였고, 원고의 2003. 4. 19. 자 창립선언문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자발적이며 직접적인 지지, 그를 통한 승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였다”는 등의 표현으로 원고의 설립 배경이 되는 정치적 사건이 노사모 등의 활동을 통한 2002년 대선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임을 표명하기도 한 사실, 원고의 구성원들은 주로 인터넷상의 일반 네티즌들이기는 하지만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 부각된 주요 인물들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의 팬클럽으로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활동을 펼쳐 언론 등에 의하여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공헌을 미쳤다고 평가받았던 ‘노사모’의 회장이었던 영화배우 명○○, 회원이었던 영화배우 문○○, 시인 노○○ 등 ‘노사모’와 관련된 사람들이었고, 명○○은 2003. 2. 27. 원고의 창립추진기자간담회에서 “‘노사모’가 각성한 개인들의 느슨한 모임이었다면 ‘국민의 힘’은 회비를 내는 진성 회원 중심의 딱딱한 전사들의 모임”이라고 밝히기도 한 사실, 원고의 정치개혁사업은 선거법 개정운동이나 정당구조 개혁운

동과 더불어 2004년에 있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참여 운동을 수행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었고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른바 낙천·낙선운동 및 개혁인사 당선운동을 펼칠 예정이었고, 그 방법으로 2000년 총선 시민연대의 낙선운동 자료의 분석은 물론 2003년 8월경까지 여러 시민단체에 연대를 제안하여 2003년 10월까지 그를 위한 협의체 구성, 2003년 12월까지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1차 낙선대상자 명단발표, 개혁인사 정치인 팬클럽 활성화, 개혁인사 선정기준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원고가 추진하는 개혁인사 정치인팬클럽의 대상 정치인으로는 강금실, 이○○, 천정배, 김두관, 임종석, 정운재, 이창동, 추미애, 송인배, 조순형, 송영길 등이 거론되었고, 원고의 언론개혁사업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대한매일신문의 각 기사에 점수를 매기는 ‘기사에 ★점주기’, 조선일보의 친일행각, 조선일보비평팩스신문 등을 모으고 정리하는 등의 ‘주간 안타조선’ 활동, 안티조선 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독재협력 조선일보 심판 민간법정, 국사교과서 중 조선일보·동아일보를 민족지로 기술한 부분의 개정과 불채택운동, 안티조선 국민의 힘 신문발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원고의 활동 목표와 내용, 원고가 대외적인 성명 등을 통해 원고 스스로 밝힌 설립 배경과 목적, 원고 소속의 저명인사의 구성 내용, 원고가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정치인의 면면, 그 밖에 통상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가진 어떤 단체의 정치적 성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단체에 소속된 일반인들의 입장보다는 소속 저명인사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 등이 그 평가의 기준이 될 여지도 있는 점, 앞서 본 원고의 설립과정상의 여러 사정상 원고가 추진하는 언론개혁 활동의 주요비판 대상이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거니와 원고의 활동을 언론에 의하여 접할 수밖에 없는 일반 독자들도로서도 원고의 성격을 2002년 대선 당시의 ‘노사모’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고와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정치인 등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로 인식할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표명하고 있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의 이른바 개혁인사 당선운동에 있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그의 정치적 입장에 견해를 같이하거나 그에 대하여 호의적인 정치인들에 대하여 지지활동을 하리라고 예상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제1기사는 원고를 악의적으로 비판하거나 폄하하기 위한 것에 1차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원고의 정치적 입장이 이 사건 제1기사 내용과 같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정치인에 대한 지지활동이나 낙선·낙천 운동 등을 통해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만큼 정치영역에서 일정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타인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하는 만큼 원고 스스로도 상당한 정치적 비판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원고의 활동 중 언론개혁 부분의 주요 비판대상이 피고이고 원고가 설립 당시부터 피고에 대하여 상당한 비판을 가하여 온 만큼 원고로서도 정치적 입장과 시각 등을 달리하는 피고로부터의 비판 내지 평가를 폭넓게 용인하여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제1기사가 게재된 후 원고가 피고를 항의방문하기도 하였고 다른 언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제1기사에 대한 원고의 입장이나 이 사건 제1기사에 대한 반론을 어느 정도 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기사 내용이 비록 원고를 노무현 정권 또는 그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들만을 편들기 위한 단체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정도의 의혹 제기나 주장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기사의 내용과 같이 사실을 적시하고 원고를 평가함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므로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제2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제2기사의 제목과 같은 발언은 원고의 전국모임에서 김○○이 강연 도중에 농담을 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여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원고를 경박한 단체로 인식하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김○○이 원고의 전국모임의 언론개혁분과에서 '조선일보 친일윤전기 철거조치 후 처리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 사건 제2기사의 제목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설립 준비 당시부터 언론개혁활동의 일환으로 피고를 주요 비판대상으로 삼아 왔고 원고 설립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조선일보를 친일·반민족 언론 또는 조폭언론이라고 비판해 온 조아세의 대표인 임○○ 등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제목뿐만 아니라 기사의 본문 내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제2기사는 강연자였던 김○○이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정서적이기 때문에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조선일보 보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기 운동' 같은 것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한가지의 예로 들면서 그와 함께 최○○, 임○○ 등의 발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원고의 전국모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총괄적으로 전달하는 기사로 작성·보도한 것이지 원고가 문제삼는 그 발언만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킨 기사가 아닌 점, 어느 한 입장에서 그와 정치적 견해 등이 대비되는 다른 입장에 관하여 발언을 하는 경우에 그 발언의 취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라도 파악해야 하므로 원고의 주요 비판 대상인 피고로서는 김○○의 그 발언을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한 발언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많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제2기사 게재 후에 다른 언론 등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제2기사와 같은 보도방식에 대하여 상당한 비판을 가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기사의 제목과 기사 내용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를 경박한 단체로 매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하여 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제3·4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의 여부

(1) 원고는, 다른 신문들은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가 오로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로 한나라당 황○○ 부대변인이나 김○○ 사무총장의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여 이 사건 제3·4기사를 작성·게재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나10215,1022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3·4기사는 한나라당의 당직자인 황○○이나 김○○이 원고에 대하여 평가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그것은 피고가 원고를 노사모에 참가하여 불법하고 과격한 정치활동을 한 사람들이 만든 단체로 독일 나치스 시대의 위르겐스, 중국 모택동 시절의 홍위병들처럼 무비관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만을 추종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그를 비판하는 언론을 탄압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정치인들을 무조건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한나라당 소속의 당직자인 황○○이나 김○○이 그와 같은 발언

을 하였다든 사실을 과다한 논평 없이 그대로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그와 같은 기사는 한나라당 당직자가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을 뿐이고 한나라당의 소속의 황○○이나 김○○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든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어 그 보도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발언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황○○이나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발언을 과다한 논평 없이 그대로 게재한 피고의 이 사건 제3·4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원고는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그와 같은 발언은 피고가 원고측의 입장은 전혀 듣지도 않고 2003. 2. 27.부터 2003. 4. 3.까지 원고 자체에 대하여 사실 왜곡과 이미지 왜곡형 기사를 양산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의 그와 같이 왜곡된 정보를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그대로 재생해서 원고에 대해 논평한 것을 다시 피고가 인용보도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도 주장하나, 이 사건 제3·4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상 균  
판사 최 정 인  
판사 강 재 원

〈별 지〉 정정보도문

조선일보는 2003. 4. 3.자 신문에 “노 대통령의 정

치·언론 개혁에 따르는 후보 내년 총선서 지지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 ‘국민의 힘’은 일부 정치인,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언론 개혁을 따르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혀 정치·언론계에 상당한 파문이 일 것

으로 예상된다”라고 게재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주최의 2003. 3. 29. 전국 대번개에서 ‘현 정권이 추구하는 정치·언론 개혁만을 따르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명시적으로 결의하거나 발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

**판결 3**

‘분열적 정신상태’,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이라는 표현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이탈한 불법행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8. 자 판결 (2002가단249152)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6단독부(김복형 판사)는 시스템사회운동본부 지○○이 오마이뉴스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명의의 광고 중 일부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에 대한 반박을 포함하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 해당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인하여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 사건 기사에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분열적 정신상태’,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원색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인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언론의 비판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분열적 정신상태’,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이라는 모멸적인 표현을 한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비판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표명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이탈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자신이 동아일보 2002년 8월 16일자 2면에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지○○과 늑대』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문**

사 건 : 2002가단249152 손해배상(기)  
원 고 : 지 ○ ○

Ⅲ 고 : 1.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대표이사 오 연 호  
2. 권 ○ ○  
피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빌딩 505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세  
담당변호사 김택수, 김광길,  
차현환, 류홍섭, 김성규, 한상혁,  
정대화, 박경홍, 김용재

변론종결: 2004. 4. 13.

판결선고: 2004. 6. 8.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1.부터 2004.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같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종결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같은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16. 시스템사회운동본부 대표(시  
스템공학박사)로서 동아일보 2면에 『대국민경계령! 좌  
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  
다)를 게재하였다.

나. 피고 권○○은, 이 사건 광고에 대한 분노의 표

시로서, 2002. 8. 24. 인터넷상으로 피고 주식회사 오마  
이뉴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지○○과 늑대』  
라는 제목과 『정신질환자들을 순교자로 만들지는 말  
자』라는 부제목 하에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기고하였고, 피고 회사의 편  
집부장 성○○은 같은 날 이 사건 기사에 대해 원고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5.18 관련단체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  
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광고의 비정상적인 논리  
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에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기사를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에  
게재하면서, 피고 권○○을 기자로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2003. 1. 28. 광주  
지방법원 2002고합544호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사건  
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1980. 5. 18.을 전후하여 전라  
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에서 의결, 공표된 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  
별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정립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이 마치 소유  
의 죄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  
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묘사하여 5·18민주화운  
동 유공자들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  
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쌀, 마늘 사건 등으로 농민을  
분노케 해놓고, 거기에 노동세력, 흥위세력 등 좌익들이  
불을 당기면 광주사태의 확대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  
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  
니다.”는 내용의 광고문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  
실을 적시하여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  
함과 동시에 사자인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

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03노10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 3. 2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3도1699호로 상고하였으나 2003. 5.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형제79216호로 피고 권○○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권○○은 2002. 11. 8.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기사가 단순한 반박성 의견개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강제1호증, 강제2호증, 강제12호증, 강제14호증, 강제15호증, 을제2호증의 1, 2, 4,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명예를 저하, 추락시키려는 실행적 악의를 가지고 쓰여진 글로서 원고가 '파괴적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고 '자기가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고 허위사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 우회적으로 공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인격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다만,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또한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광고 중 일부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에 대한 반박을 포함하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 해당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인하여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기사에서 위와 같은 기본적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분열적 정신상태',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원색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인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언론의 비판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분열적 정신상태',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이라는 모멸적인 표현을 한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비판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표명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다.

###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바,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에 대하여

'분열적 정신상태',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적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심히 침해하는 내용인 점, 피고 권○○이 이 사건 기사를 기고하게 된 동기가 이 사건 광고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 회사의 편집부장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게재하였던 점, 원고의 인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언론의 비판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인신공격적 의견표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1. 위자료의 액수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의견표명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되고 게재된 경위, 원고의 사회적 지위, 원고가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죄로 처벌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2.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같은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복형



미국 판결

원고의 과거행적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규정짓거나  
특정한 소견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기사에서 명예훼손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다

【Page v. Los Angeles Times 사건】  
미국 캘리포니아 제2지역 항소법원(未公刊)

Dorriah PAGE (원고 겸 피항소인) v. LOS ANGELES TIMES 등 (피고들 겸 항소인들)  
번호 B162176. 2004년 4월 21일.

Los Angeles County의 제1심 법원 판사 James R. Dunn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

피고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허위의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임. 제1심법원이 피고의 삭제신청(motion to strike)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자 피고가 항소함.

제1심 판결을 파기함(reversed).

항소심 재판장은 Perius. 배석판사는 Johnson과 Woods임.

판사 Johnson :

“거짓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말, 진짜 거짓말 그리고 요약이다.”

원고 Dorriah Page는 Los Angeles Times와 3명의 보도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

로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공적 이력이나 경력 및 업적에 대하여 취재하였다는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거짓, 명예훼손적인 발언 및 명예훼손적인 암시를 담은 기사를 배포하였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SLAPP 소송이라는 이유로 삭제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비록 기사내용의 대부분은 소송거리가 되지 못하지만(소의 이익이 없지만) 그 중 일부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법원은 원고가 SLAPP 명령 하에서 본안에 관한 상당한 승소가능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고 결론내렸다. 그런데 원고는 그 기사에 해악적인 거짓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사실과 절차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문제의 기사가 발간될 당시 원고는 디젤엔진에 사용되는 촉매 컨버터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Ceryx 회사의 최고경영자였다. 피고 신문사는 원고와 Ceryx 회사가 발간한 자료, web site에 등재된 내용, 원고의 이력 및 자금조달을 위한 허가신청서 등을 검토한 다음 이러한 자료에는 Ceryx 회사와 그 최고경영자인 원고의 업적과 관련하여 많은 부정확성, 오류, 과장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신문사가 발견한 차이점에는 원고의 교육배경과 업적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원고는 자신이 UC Davis 대학에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거기서 부교수로서 가르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적부에는 그녀의 전공이 생태학이고, 조교로서 일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청의 기록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특허가 없었다. 원고는 그녀가 엔진부품을 만드는 Turbodyne이라는 또 다른 회사의 설립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문사가 접촉한 Turbodyne 회사의 임원들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신문사의 기사는 또한 Ceryx 회사가 한 허위발언을 보도하였다. 회사는 촉매 컨버터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의 기록에는 그러한 특허가 없었다. Ceryx 회사는 촉매 컨버터가 스웨덴에서 사용승인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위 주장을 부인했다. 그 신문기사는 또한 신설회사의 자금조달에 관하여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원고와 Ceryx 회사의 신용도에 대한 의문이 제품생산을 위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인용구를 실었다.

신문사가 그 기사를 발간하자마자, Dow Automotive 회사는 Ceryx 회사와 체결한 자금조달 및 특허계약을 철회하였고, Ceryx 회사의 촉매 컨버터 개발을 돕기 위한 인가를 해주었던 California의 에너지 위원회는 지원 자금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Ceryx 회사는 결국 파산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최고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잃었다.

원고는 신문사와 그 기사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기사에는 28개의 거짓이면서 명예훼손적인 언급과 5개의 명예훼손적인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사와 기자들은 원고의 소송이 민사소송법 425.16장에 규정된 SLAPP 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신청(motion to strike)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공적사항과 관련된 신문사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행사에 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SLAPP 소송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명예훼손적이라고 주장된 28개의 언급 중 20개는 그 말이 진실이거나, 실질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거나, 면책특권이 인정되거나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법원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된 5개의 암시 중 2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사실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인정' 및 '원고가 일응 특별손해를 입었다는 일응의 추정'에 기초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문사와 기자들(이하 '신문사측'이라고 한다)은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검 토 (DISCUSSION)

### I. 검토의 기준

SLAPP 법령 하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고의 청원권이나 언론자유발언권의 행사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면, 이번에는 원고가 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부담을 넘겨받게 된다. 위 법령 하에서 신문사측은 위와 같은 입증을 충족시켰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로 넘어간다. 여기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입증을 충족시켰다

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II. 원고는 그 기사에 어떠한 해악적인 거짓이 있다는 입증에 실패함

일응 명예훼손사건으로 추정이 되는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① 피고가 명예훼손적인 언급(적시)을 하였을 것, ② 그 언급이 공포되었을 것, ③ 피고가 어느 정도의 과실을 가지고 행동하였을 것, ④ 그 결과 원고가 손해를 입었을 것 등 4가지 요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공적 관심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문제가 된 언급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도 부담한다. 우리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더 나아가 거짓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의 청구원인이 충분히 성립한다는 취지로 제1심법원이 결론내린 그 기사 중의 특정 언급을 아래에서 인용하고자 한다. 먼저 인용을 한 다음에 각 언급에 대한 분석을 차례로 하기로 한다.

(1) "Ceryx 회사는 Ventura 카운티의 경제발전협력회가 원고를 '올해의 기업가'로 선정하였다는 뉴스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었다. 위 협력회의 최고책임자인 Joe McClure는 '우리 협력회에서는 그러한 수상을 한바 없고, 원고가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그 수상을 한 것은 위 협력회가 아니라 Ventura 카운티의 보이스카웃 위원회인데, 위 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이력서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었다."

원고는 이러한 적시(언급)가 실질적으로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경제발전협력회가 원고를 올해의 기업가로 선정하였다'는 뉴스를 Ceryx 회사가 공표한 것은 사실이다. 그 수상은 보이스카웃 위원회가 한 것

이지 위 협력회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는 그 발표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문제의 신문기사가 중요한 사실과 문맥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누락으로 인하여 '원고나 Ceryx 회사가 고의적으로 대중으로 하여금 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직이 아닌, 명망있는 기업조직으로부터 수상을 받은 것으로 믿게 하려고 허위 발표를 한 것'이라는 거짓 암시가 보도된 것이라고 원고는 주장한다. 그 기사는 '위 협력회가 보이스카웃 수상자로 원고를 지명하였고, 수상기념 만찬석상의 주재자가 협력회의 대표임원인 McClure라는 사실'을 누락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이 사건의 주어진 사실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루지 않는다. 적시는 글자 그대로 사실일지라도 문맥상으로 비추어 볼 때는 전반적으로 잘못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언급도 그 배열이나 어법에 따라 야기되는 잘못된 추론 또는 암시에 의하여 명시적인 말만큼이나 해악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1] 원고의 수상 소식을 다룬 그 기사의 일부는 '원고가 고의적으로 수상을 행한 기관을 속이려 했다'는 추론이나 암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반대로 그 기사는 '원고가 협력회로부터 수상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원고의 실수이다'라고 한 협력회의 최고책임자 McClure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원고가 실수를 하였다고 한 McClure의 말은 '원고가 의도적으로 수상을 한 기관을 잘못 말하였다'는 추론이나 암시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더군다나 신문사는 수상에 관한 이야기를 원고에게 좀더 호의적으로 편집할 수도 있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신문에 실을 기사거리의 선택과 기사의 크기나 내용에 대한 결정권

은 편집자의 통제와 권한의 행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문사의 의무는 호의적인 이야기를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이야기를 게재하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법원을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역할인, '신문의 최고편집자(언론 위에서 군림하는 자)'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

결론적으로 McClure나 위 협력회가 원고를 보이스 카웃 수상자로 임명을 하였고, McClure가 수상기념 만찬석상의 주재자였다'는 사실을 더 추가하였다고 하여 그 기사의 문맥이 보다 진실한 것으로 되었으리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McClure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위원회 위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그가 원고를 보이스 카웃 수상자로 추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자신이 노벨상을 수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2) "Ceryx 회사의 발표내용이나 웹 사이트에 등재된 내용에 관하여 신문사측에서 많은 의문제기가 있는 후에 위 회사의 임원은 잘못된 차이점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 언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잘못된 차이점은 여전히 웹 사이트에 남아있었고, 회사의 다른 서류에도 이러한 잠재적인 오류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었다.

제1심법원은,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원고가 그 회사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그 기사가 명백히 하였기 때문에 'Ceryx 회사의 임원들'에 대한 적시는 곧 '원고'에 대한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제1심법원은, 그 기사가 독자들에게 '회사의 웹 사이트와 회사의 서류들에는 여러 가지 다른 잘못된 설명이 산재해 있고,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지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설명이 정정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기사의 적시(언급)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2] 우리는, 이러한 언급이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고 또 이러한 적시가 거짓이라는 일응의 추정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위 언급은 소송거리가 되지 않는다(소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기사에 의하면, 신문사는 회사 임원들에게 회사 웹 사이트에 등재된 내용의 오류에 대한 주의를 상기시켰다. 회사 임원들은 이러한 오류를 시정할 것이라고 신문사에게 말했다. 신문사는 계속적인 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오류가 여전히 웹 사이트에 남아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오류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회사 임원들이 대중을 여전히 속이려고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매니저로서 너무 무능하여 필요한 정정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회사 임원들 스스로가 인정(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는 신문사가 이러한 오류를 지적한 바가 없고 또 자신도 이러한 오류를 정정하겠다고 한 바가 없으므로 기사의 표현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제1수정헌법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그 대상이 된 언급은 명확히 원고를 지칭하거나 원고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시적이거나 분명한 암시에 의하여 누구인지 밝혀지지도 않은 원고로 하여금 그러한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부당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문제가 된 적시는 원고의 이름을 들어 언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는 'Ceryx 회사의 임원들'이라는 표현이 원고에 관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추론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캘리포니아 판례법은, 개인이 그가 속한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판례로는 *Noral v. Hearst Publications, Inc.* 사건의 판결이 있다. 위 판결의 사안은, 노동자동맹의 임원들이 공산당의 직접적인 지시 하에 회비를 공산당 선동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피고가 보

도하였다는 것이다. 노동자동맹의 대표자인 원고는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청구원인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법원은 소장에 첨부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노동자동맹의 임원이 적어도 162명은 된다고 결론지었다. 규모가 큰 단체에 대한 신문기사의 비난은 그 비난이 개인에 대한 것이라는 확실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소송의 적법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단체의 규모가 크고 언급된 내용이 원고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면, 원고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원은 방론에서, 단체에 대한 언급이라도 그 단체의 규모가 작아서 단체의 구성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원고가 명예훼손소송의 청구원인을 입증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적시가 개인에 대한 적시로 되기 위해서 법원은 단체의 규모 이외에 어떤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다른 관할구역의 관례나 법학 잡지에서도 상당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잘 정립된 법적 이론을 선언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법원이나 주석학자들 사이에서는 단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개인)로서는 적어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입증하여야만 승소할 수 있다는 '일치된 견해'가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

(a) 단체의 규모가 26인 이하일 것

대부분의 권위서에서는 법률 문제로서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원칙은 위에서 든 *Noral* 사건에서와 같이 그 단체의 규모가 큰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다.

경험적으로 보아(눈대중으로 보아), 법원은 그 구성원이 26인을 넘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도 *Blatty v. New York Times* 사건에서 '25인 원칙'을 채택하였다.

(b) 그 적시는 단체의 행동이 아닌, 원고 개인의 행동에 대한 것일 것

원고는 자신의 이름이나 명성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단체의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고 개인의 행동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에서 법원은, *Montgomery* 경찰의 행동에 대한 광고의 적시가 *Montgomery* 경찰국장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적시라는 점에 대한 입증으로서 본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유사한 경우를 보면, *Rosenblatt v. Baer* 사건에서 '카운터 행정관인 원고는 그와 카운터 감독관이 공적 시설을 잘못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법원은, 그 기사가 원고 *Baer*와 카운터 감독관에게 공동 관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비난한 것일 뿐 원고 *Baer*에게 개인적인 관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비난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기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원고 개인에 대한 것인지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를 고려함이 없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배심원의 평결을 1심 법원의 판사가 승인하였다면, 1심 법원 판사의 '배심원에 대한 지시사항(instruction)'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우리 주의 항소법원도 *Blatty v. New York Times Co.* 사건에서, '구체적 언급이 필요하다는 요건'은 중상적인 거짓말로 인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 막연한 언급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비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사람들'로 제한한다는 위 견해를 재확인하고

있다.

(c) 그 적시는 적어도 단체 대다수를 포함하는 것일 것

법원은, 단체의 규모가 작고 그 구성원 전부가 명예훼손적인 적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구성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인용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적시가 단체의 일부 구성원에 대한 것이고, 단체의 어떤 구성원들이 그 적시에 포함된 것인지 애매모호할 경우이다. 만일 그 적시가 일부 구성원에 대한 것이라면, 원고는 증거우위법칙(preponderance of evidence)에 따라 그 적시가 자신에 대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단체의 대다수가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면 그 적시가 단체의 특정 개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이 진실이 아니라기보다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면, 우리는 원고가 "Ceryx 회사의 임원들이 회사 웹 사이트의 오류를 정정하지 못했다"고 한 적시가 원고와 개인적으로 관련이 되어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원고는 '단체규모요건(group size requirement)'을 만족시켰다. 그 기사가 발간될 당시 Ceryx 회사는 약 60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우리는 40% 이상의 직원이 기사에서 언급된 회사임원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원고는 '개인행동요건(individual conduct requirement)'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 기사의 적시는 오류를 정정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단체로서의 회사 임원들에 대한 공동책임을 말한 것이지, 특정구성원의 개인적인 책임을 말한 것이 아니다.

제1심법원은, 원고가 그 기사에서 회사의 원동력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Ceryx 회사의 임원들이 회사 웹 사이트의 오류를 정정하지 못했다'고 한 적시는 원고에 대한 적시가 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우리

는 다음의 2가지 이유를 들어 제1심법원의 결론에 반대한다.

단체에서 원고의 지위가 두드러진다는 이유만으로 단체에 대한 언급이 자동적으로 원고에 대한 언급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Sullivan 사건에서 대법원이 경찰국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국장이 경찰국 전반을 책임지고 있고 또 경찰의 행동에 대한 공식적 책임을 진다는 단순한 사실을 더 넘어서 경찰국장 자신이 광고에서 공격을 당하였다고 믿을 근거는 없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Noral 사건에서 법원은, '노동자동맹의 임원들이 회비를 공산당으로 전용하였다'는 적시에 기초한 원고의 소송은 비록 원고가 노동자동맹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원인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Arnold v. Ingram* 사건에서 Wisconsin 대법원은, '술집 수위들의 무감각한 영향 하에 있는 시 공무원들은 공무원 서약을 위반하였다'라는 적시는 원고가 시의 범집행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현지 지방검사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회사나 회사의 운영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언급이 회사 임원 개인에 대한 언급이 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원고가 인용한 바도 없고 우리 재판부가 발견한 바도 없다. 반면 법원은 회사의 유일한 소유자, 의장, 대주주에 의하여 제기된 이러한 소송들을 기각하여 왔다.

소수의견은 "만일 명예훼손적인 언사에 의하여 단체의 각 구성원에게 던져진 의심의 강도가 각 구성원의 명성에 영향을 줄 정도로 단체의 규모가 작고 또 그 구성원이 단체에서 두드러진 인물이라면 개인행동요건(of and concerning element)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Sullivan and Rosenblatt 사건에서 단체행동과 개인행동사이에서의 나타난 차이점을 그럴싸하게 얼버무리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 이론(소수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적시가 원고에 관한 것이라는 제1심법원의 결론이 잘못되었음은 다른 증거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자들이 원고의 행동을 지칭하려고 할 때는 원고의 이름을 붙였지 'Ceryx 회사의 임원'이라는 완곡어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기사에서 명백히 들어난다. 예를 들어 Ceryx 회사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를 다룬 기사의 다른 섹션(section)에서 기자는, "Ceryx 회사의 주장에 대한 오류를 여러 번 반복하여 지적하자, 원고는 '우리는 오류가 있는 서류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것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을 실었다.

원고는 또한 Ceryx 회사의 임원들에 대한 언급이 Ceryx 회사의 임원들 전부나 대다수에 대한 언급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에 실패하였다.

(3) "디젤엔진에 사용되는 촉매 컨버터를 생산하는 Turbodyne 회사에서의 경영신용도에 대한 의문제기는 그 회사의 주식을 폭락하게 하였고, 나스닥 증권거래소에서의 퇴출을 야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러한 적시가 "Turbodyne 회사의 경영진의 일원인 원고의 행동이 Turbodyne 회사의 주가 폭락에 책임이 있다"는 암시를 주었고, 원고는 이러한 암시가 거짓이라는 일응의 추정을 받는데 성공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또한 그 기사와 삭제신청(motion to strike)시 첨부된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Turbodyne 경영진의 일원이고 따라서 그 적시는 원고에 대한 적시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우리 항소심은 반대의 사실인정을 한다.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적시는 원고의 이 사건 명예훼손소송의 소인(誣衊)이 될 수 없다.

[3] 원고는 단체에 대한 적시를 가지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소송의 요건사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Turbodyne 회사 경영진의 규모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25인 원칙(rule-of-25)'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그 적시는 개인구성원의 신용도보다는 전체 경영진의 공동신용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Rosenblatt v. Baer 사건과 유사한데,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전 경영진의 잘못을 지적한 기사내용이 원고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성된 개인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원고는, 그녀가 기사에서 언급된 유일한 사람이고 Turbodyne 회사와 Ceryx 회사의 경영진의 일원이기 때문에 통상의 독자라면 Turbodyne 회사 경영진에 대한 신용도의 문제 제기가 곧 그녀의 개인적 신용도에 대한 비난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그 기사는 Turbodyne 회사를 몰락시켰던 신용도 문제를 원고가 Ceryx 회사에도 전염시켰다는 암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 적시가 그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기사는 회사를 몰락시킨 신용도 문제에 책임이 있는 자로 Turbodyne 회사의 특정임원을 거론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기사는 그 책임을 단체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체로서 조망할 때, Turbodyne 회사와 관련된 원고의 신용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Ceryx 회사와 관련된 원고의 신용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그 기사는 명백히 하고 있다. 기사에 의하면, 원고의 신용도와 관련하여 Turbodyne 회사가 가진 문제점은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 당시 그녀가 자신의 배경과 능력에 관하여 회사에 말한 '잘못된 자기소개'에 관한 것이었다. 기사의 내용이나 다른 증거

들을 살펴봐도 이러한 잘못된 자기소개가 투자자들이나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이 암시되어있지 않다. 대조적으로, Ceryx 회사에서의 원고의 신용도 문제는 그녀의 배경과 업적에 대하여 그녀가 발표한 내용의 오류와 관련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원고가 Turbodyne 회사 경영진의 신용도 문제 제기에 관한 신문사측 언급을 문제 삼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승소할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4) “원고가 Turbodyne 회사의 자금조달을 돕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1994년도에 원고는 Westlake Village 에서 차를 팔고 있었음이 Ventura 카운티에 제출된 2 개의 소송기록 서류에 나타나 있다.”

위 적시는, 원고가 스스로 공언한 것처럼 그녀가 Turbodyne 회사의 설립자 중의 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 원고와 Turbodyne 회사의 전직 임원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을 언급하고 있다. 제1심법원은, 위 기사는 ‘원고가 Turbodyne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을 당시에 그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적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가 그 기사의 거짓에 대한 일응의 추정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다고 결론지었는데, 그 이유는 그 기사에서 인용되었던 소송들의 소장에서 ‘원고는 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1994년 6월 19일부터 같은 해 7월 8일까지 일했고, 1994년 8월에 비로소 Turbodyne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제1심법원은, 그 적시가 민법 47장 (d)절에서 규정된 면책특권상의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전적으로 배심원들에게 달려있다고 판시하였다.

신문보도가 정당하고 공정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점이 대부분 사실인정의 문제라는 점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목한 것은 타당하지만, 그 문제는 어떤 적절한 사안에서는 법적 문제로 해결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한 해결책은 특히 SLAPP 사건에 적절한 것인데, 그 이유는, 부당한 SLAPP 소송이 초기단계에서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입법목적이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란 과정의 본질, 즉 요체 또는 정곡을 잡아챈 보도를 말한다. 보도의 공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문제는, 그 보도가 원고의 관점에서 원고에게 공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도가 그 과정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도의 진실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기자는 말 자체의 엄격한 형식에 얽매어서는 안 되고, 무엇이 공정한 보도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부사항에 있어서 사소한 부정확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 부정확성이 사안의 전체적 윤곽을 변형시켜 독자로 하여금 진실을 다르게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문사측에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문제가 된 보도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독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4] 원고는 Ceryx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그녀가 1994년 초에 Turbodyne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쓰고 있다.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Turbodyne 회사측의 소장에서는 그녀가 1994년 8월부터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소장은 그녀는 그녀가 1994년 7월에 취업과 관련하여 Turbodyne 회사의 임원들과 접촉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전 고용주인 Westlake Motors를 상대로 성희롱을 이유로 제기한 소장에서는 그녀가 1994년 7월 19일부터 같은 해 8월 8일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1994년 7월에 취업을 위하여 Turbodyne

회사의 임원을 만났었고, Turbodyne 회사의 자금조달을 돕고 있었는데, 당시 여전히 자동차판매대리점에 고용된 상태였다. 원고가 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성적회룡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그녀가 1994년 7월 초에 이미 대리점을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현재의 직업을 그만두기 전에 미리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원고가 그녀의 이력서에서 1994년 초에 Turbodyne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그녀가 1994년 7월에 부사장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7월이 그 해의 전반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소장들에 기재된 날짜들에 의하여, '원고가 Turbodyne 회사의 자금조달을 돕고 있었다고 말한 시점에 사실상 원고는 Westlake Village의 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차를 팔고 있었다'는 신문기사의 내용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5) "원고는, '그녀가 받은 허가 때문에 돈을 투자한 잠재적 투자자, 시 공무원 및 납세자들'은 그녀 및 Ceryx 회사에 대한 허위정보에 관하여 전혀 관심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제1심법원에서 사실인정을 한 위 언급은 '원고가 잠재적인 투자자와 주(州)의 대리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책임하고 냉담한 여성사업가'라는 취지의 명예훼손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는데, 원고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여기서의 쟁점은 원고가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명예훼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우리는 1심법원의 사실인정에 반대한다.

[5] 원고의 말이 명예훼손적인 의미를 갖는지를 결

정하는데 있어 제1심법원은 문맥을 도외시하고 그 말을 해석하였다. 문제가 된 말의 다음 문장에서 그 기사는, '투자자들, 주 관리들 그리고 납세자들은 원고의 이력서에 기재된 오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대신에 원고가 일을 잘하는지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원고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나아가 그 기사는, '이력서 및 공적인 발표 내용의 오류를 지적받았을 때 원고의 반응은 무책임하고 냉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원고는 이러한 오류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였고, 그 중 일부는 단순한 착오라고 하였으며, 서류 중 일부에 대하여는 오류 수정조치를 취하였고, 서류를 정리하여 그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기사 속에 나타난 원고의 말은 이 소송에서 원고가 취한 자세, 즉 신문사가 찾아낸 오류는 사소하고도 단순한 실수에 불과한 것이라는 태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문맥상으로 보아 원고가 문제의 적사에서 정말 말하고 있는 것은 "사소한 것에 신경쓰지 말고 큰 그림을 보라"는 것이다.

더욱이 그 적시가 '원고가 무책임하고 냉담하다는 점'을 암시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표현은 거짓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암시는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의견'에 해당한다.

(6) "'신용에 대한 관심은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개인설립회사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기업 및 주식전문가들은 말했다." "'사실 원고가 그녀 자신에 대해 잘못 소개한 사실을 금융자산가들이 알게 된다면, 원고로서는 Ceryx 회사를 상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은행을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디트로이트 Raymond James & Associates의 자동차사업 분석가 Greg Salchow씨는 말했다." "대부분의 일류회사들은 최고경영자가 완벽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Sachow씨는 말했다.”

제1심법원은 그 인용된 적시 그 자체는, '금융투자자들이 원고나 Ceryx 회사의 허위공표사실에 관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견'에 해당할 뿐 '허위의 사실적시'가 아니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위 적시가 '원고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허위의 명예훼손적인 암시를 주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고는 신문기사가 공표될 당시 Ceryx 회사가 상장하려고 하였다거나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반대로 그 암시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고 있지 않다. 제1심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명예훼손이 그 암시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고는 회사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

[6]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이 기사는 의문으로 구성된 것이지, 결론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문의 제기는 이 경우 상대방의 명예훼손소송을 인정할 대상이 되기에 부족하다." 의문제기가 반드시 비난(accusation)이나 비꼴(innuendo)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기사는 신문사가 찾아낸 '원고의 과거행적'에 관한 원고의 소견과 다른 사람이 보고한 소견의 차이점을 지적하였고, 원고에게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기사는 과거 행적에 대한 특정한 소견을 채택하지 않았다. 원고는 서류상 많은 오류가 있음을 시인함으로써 그 차이점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다른 사건에서 원고는 그 오류가 실수이거나 간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적시 중 2가지(올해의 기업가상에 관련된 주장과 Turbodyne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주장)는 이미 위에서 다루었다. 나머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특허가 있다고 주장

한다. 특허청 기록에는 원고에게 인정된 특허가 없다.

- 원고는 UC Davis 대학에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거기서 부교수로 가르친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UC Davis 대학의 기록에는 원고가 생화학 학위를 취득하였고, 조교로서 일했다고 나와 있다.

- 원고는 엔진부품을 만드는 Turbodyne이라는 또 다른 회사의 설립자였다고 주장한다. Turbodyne 회사의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Edward Halami는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말했다.

원고는 이 기사나 이 소송에서 원고의 경력과 업적 중 일부에 관하여는 사실적인 다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그녀는 신문사가 이러한 다툼을 정확히 보도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법원에서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명예훼손적인 의미'는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위에서 인용한 적시에서 "원고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끌어낼 수 없다.

그 기사는 원고의 과거행적사실에 대한 소견을 고의적인 허위를 의미하는 '거짓'이라고 규정짓지 않았다. 사실 그 기사는 과거행적사실에 대한 어떤 소견이 가장 정확한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사는 취재하여 발견한 '차이점'을 진실하고 정확하게 보도하였으며, 이러한 차이점이 거짓인지, 선의의 거짓인지, 부분적으로 진실인지, 단순한 실수와 간과인지 아니면 이들이 섞여있는 것인지 여부를 독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두고 있다.

게다가 그 기사는 원고가 Ceryx 회사를 위하여 자금조달모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실하게 보도하였다. 그 기사는, '원고가 자금조달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경과 업적에 대하여 부정확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말하거나 암시를 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 기사에 나타난 적시가 원고가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이나 허위의 사생활침해

소송의 소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원에게 피고의 삭제신청을 인용하고 피고에게 법에서  
인정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피고들은 항  
소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주 문 (DISPOSITION)

피고의 삭제신청을 기각한 제1심법원의 명령을 파  
기한다. 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제1심법

출 처 : Media Law Reporter Vol. 32, No. 24 pp.1783-1776

번 역 : 윤 경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

## 일본 판결

### 범죄사실을 단정해서 쓰지 않은 보도에 대해 범죄행위 자체의 진실성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다

원고 : 주식회사 A농장

피고 : 大阪府와 지사, 국가, 주식회사 00신문사

大阪지방법원 2001(7) 제4731호, 손해배상청구사건  
2003.9.30 제17민사부 판결. 청구 기각·확정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 비율의 금전을 지급하라.

3. 피고 大阪府 및 피고 주식회사 00신문사는 각자  
大阪府 지역에서 발행되는 朝日신문, 毎日신문, 讀賣  
신문에 별지 기재의 사죄광고를 별지 기재의 조건으  
로 게재하라.

### 사실 및 이유

#### 제1. 청구

1. 피고 국가 및 피고 大阪府는 원고에 대해 각자  
330만엔 및 이에 대한 2001년3월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 비율의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 大阪府 및 피고 주식회사 00신문사는 원고  
에 대해 각자 220만엔 및 이에 대한 2001년3월8일부터

#### 제2.사안의 개요

본건은 원고가 ①大阪府 경찰본부 사법경찰관이 피  
의자 乙山 郎(이하 '乙山'이라 한다)에 대한 범인은  
닉 피의사건과 관련, 大阪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수  
색차압허가장(이하 '본건 허가장'이라 한다)에 근거  
하여 원고 소재지 및 동 지역내에 있는 부속건물(이하  
'원고건물'이라 한다)을 수색, 물품을 차압했으나

수색차압허가장의 청구 및 발부, 차압의 집행은 위법이라는 것이며 ②피고 주식회사 00신문사는 大阪府경찰이 원고도 일본 적군(赤軍)의 국내활동을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했고 또한 경찰의 홍보담당직원은 이 기사와 같은 취지의 발표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피고 00신문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사용자 책임), 피고 大阪府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1조1항에 근거하여 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사안이다.

### 제3. 쟁점에 대한 판단

#### 1. 수색차압허가장 발부

大阪지방법원 재판관은 전후의 공산주의운동, 적군과 결성 및 테러·게릴라 활동, 乙山이 일본적군과의 최고간부 丙谷을 은닉 또는 도피시켰다는 본건 피의사실 등에 관한 수사 진전 상황과 각종 자료에 의거, 피의자 乙山에게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본건 영장청구에 있어서도 수색해야 할 원고의 건물 등에 대해 수색의 필요가 있었으며, 본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압수해야만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본건 허가장을 발부했다.

#### 2. 원고의 건물에 대한 수색과 차압 및 본건 기자발표

(1)大阪府 경찰은 2001년3월8일 원고건물을 수색, 별지 '압수품목록' 기재의 원고의 종업원 戊田 앞으로 된 봉투 7개와 그 내용물을, 본건 피의사실의 조직적 배경을 해명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차압했다.

7개의 봉투안에서 발견된 B신문에는 각 면에 걸쳐 '일본적군·丙谷씨 관련 탄압계속 경계!' '탄압에 대한 엄중한 경계와 단호한 반격!' '단결을 향해, 단결을 무기로!' '일본적군·丙谷花子' '일본적군 성

명 2000년3월18일' '일본정부·공안경찰에 의한 일본적군 멤버4명의 강제송환에 항의하고, 구류·취조에 대한 압도적인 조직적 대중투쟁을!' 등의 제목으로 된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다.

(2)경찰의 홍보담당직원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모에는 '일본적군 지원자의 체포와 수색에 관해' 라는 표제 아래, 피의자 乙山을 범인은닉 및 도피방조혐의 사건으로 체포했다는 사실과 피의자 乙山이, 丙谷이 국제적으로 수배된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일본국내에서의 활동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로 범인을 은피(隱避)시켰다는 등의 사건개요가 기재되어 있었다.

#### 3. 00신문의 석간기사

피고 00신문사는 본건 기자발표 등에서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석간지에 게재, 배포했다.

(1) '피고 丙谷 지원', '적군과 전 간부를 체포', '大阪府경찰 범인 은피 용의', '거액의 자금제공' 등의 제목

(2) '헤이그' 사건등 국제테러사건을 일으킨 일본적군과의 최고간부 피고 丙谷花子 (55·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가 극비 귀국, 大阪사내에 잠복한 사건으로, 경찰은 8일 피고 丙谷의 잠복생활을 도와주고 은닉시켜준 혐의로 용의자 의약품수입판매회사 사장 乙山一郎 (55)를 체포했다. 경찰은 용의자 乙山이 피고 丙谷에 대한 유력한 자금제공자라는 혐의가 짙다고 보고 추궁하고 있다.

(3)경찰은 같은 혐의로 'A농장' 등 관련이 있는 10개소를 수색했다(본건 기사①). 이 농장은 전 공산당계의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으며(본건 기사②), 경찰에서는 이 농장도 일본적군과의 국내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본건 기사③).

(4)조사에 의하면 혐의자 乙山은 丙谷 피고가 국제적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철도역에서 내린 피고 丙谷을 자가용에 태워 다른 장소로 옮긴 혐의가 있다.

경찰에서는 피고 丙谷이 1997년 극비 귀국한 후 아무런 하는 일조차 없으면서도 8번이나 해외로 드나드는 등 지원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제공이 있었다고 보고, 압수자료등을 분석, 1999년 이래 적어도 5만엔의 자금제공이 여러 차례 있었음을 밝혀냈다. 혐의자 乙山은 G대학 재학중 공산적군파의 설립에 가담, 간부로 활약했다.

#### 4. 피고 大阪府 관계

(1)본건 영장청구 및 차압의 위법성에 관하여

##### ①본건 영장청구

본건 영장청구 당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의자 乙山에게 본건 혐의사실이 있었고 강제처분의 필요성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즉, 본건 피의사실과 관련된 별지 '차압해야 할 물건'의 기재물이 일본적군 및 丁谷과의 관련이 엮이는데 원고의 관리하에 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원고의 건물에 별지 '차압해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본건 피의사건은 피의자 乙山の 단독범행이 아니고, 일본적군 및 그 지원자에 의한 조직적 범행의 혐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특히 조직적 배경을 해명할 필요성이 컸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본건 차압물로 기재된 '본건과 관계가 있는 『일본적군』의 조직실태에 관한' 각종 문서류, '피의자 乙山の 조직내 지위·임무·역할 및 조직편성 등과 행동에 관한' 각종 문서류, '연락·협의 등에 제공된'

각종 문서류와 휴대전화기, '접촉 및 행동을 함께 한 사실 및 공범피의자의 인정(人定)등을 밝히는' 각종 문서류나 이러한 문서 등을 기록한 PC등은 이같은 범행의 조직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물건이며, 당해 조직과 관련성이 있는 장소에는 그러한 물건들이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에서는 피의사실에서, 일본적군 및 그 지원자에 의한 조직적 범행이며, 丁谷 및 일본적군과 원고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소명이 되어 있으면 본건 피의사실과 관련한 별지 '차압해야 할 물건' 기재물이 원고의 건물에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의 소명으로서 충분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피의자 乙山과 원고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의 소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 ②본건 차압

④본건 압수물의 본건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한다.

본건 압수물은 모두 원고의 종업원인 戊田에게 보내진 편지봉투이며, 일본적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C련(連)NEWS 및 B신문이 들어있었다. 또한 본건 피의사실은 일본적군 및 그 지원자의 조직적 배경 아래 행해진 조직적 범행으로, 그 내용이 전기 소명자료에 의해 밝혀진 것이므로, 범행의 조직적 배경의 해명에 도움이 될 자료로서 본건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⑤다음 본건 압수물에 대해 압수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해 검토한 바, 상기 ④에서와 같이 본건 압수물과 본건 피의사실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압수물에 대한 차압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는 본건 압수물과 본건 피의사실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성은 피의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④원고는 본건 압수물에 대해 은닉, 변조 등의 위험

성이 없었으므로 차압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은닉, 변조 등의 위험성은 차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한 요소일 뿐 그 유부만으로 차압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⑥따라서 본건 차압이 국가배상법상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본건 기자발표 및 정보제공행위의 위법성

①정보제공행위의 유무와 본건 기자발표 및 정보제공행위의 명예훼손성에 관하여

④원고는 경찰본부의 직원이 피고 ○○신문사 기자에게 본건 기사와 같은 취지의 정보를 전했다고 주장한다.

분명히 본건 기사가 게재된 ○○신문 석간에는 본건 기자발표 이전에 집행된 피의자 乙山의 체포 당시 사진이 게재되었고, 수색차압이 개시되기 전부터 모 보도기관이 원고의 건물부근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 ○○신문사가 본건 피의사실에 관한 수사정보를, 본건 기자발표에 앞서 입수했다는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경찰본부 직원이 본건 기자발표 이외의 장소에서 피고 ○○신문사의 기자에게 본건 기사와 같은 취지의 정보제공행위를 했다고 추인할 수는 없으며 다른 데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⑤본건 기자발표의 명예훼손성을 검토해 보면, 본건 기자발표를 통해 원고가 국제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본적군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②위법성 조각사유의 유무에 관해 검토해 보면, 본건 기자발표는 국제테러집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본적군의 간부 丁谷을 은피(隱避)한 범죄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실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행해졌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피의자 乙山을 丁谷은 피의 혐의로 체포했고, 같은 사건으로 원고의 건물을 수색·차압한다는 등의 발표내용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본건 기자발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③따라서 본건 기자발표 및 정보제공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가배상법상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피고 국가 관계 - 본건 허가장 발부의 위법성에 관하여

소명자료에 의해, 乙山에게 본건 피의사실의 혐의가 있고, 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므로 허가장 발부는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피고 ○○신문사 관계

(1)본건 기사의 명예훼손성에 관하여

①일정한 신문기사의 내용이 사실에 반하고, 명예를 훼손했는지의 여부는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최고재판소 1956년7월20일 제2소법정 판결).

②본건 기사는 원고가 일본적군의 국내활동을 지원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고, 경찰이 그러한 혐의를 갖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데 불과하지만, 일반독자는 경찰이 특정인 또는 법인에 대해 범죄혐의를 두고 있다는 보도에 접하면, 그들에게 범죄혐의가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본건 기사는 丁谷을 은피했다는 범인은피 혐의로 피의자 乙山을 체포한 경찰이, 피의자 乙山을 유력한 자금제공 혐의자로 보고 있다는 내용에 이어 "경찰에서는 동농장(원고) '도' 일본적군의 국내활동을 지원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본건 기사는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으로라면 원고도 범죄행위에 연관된 혐의가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라고 하겠다.

(2) 위법성 조각사유 및 책임 조각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①본건 기사는 국제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본적군의 활동을 자금제공 등의 방법으로 원조한 범죄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을,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한다는 공익목적으로 게재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적시사실에 대해 진실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며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②그렇다면 진실성의 증명대상이 될 사실이 무엇인지에 관해 검토한다.

위에서와 같이 본건 기사는 '원고가 일본적군의 국내활동을 지원했다'고 단정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지원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찰의 견해를 보도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피의자 乙山에 대해서도 丁谷에 대한 유력한 자금제공자였다는 혐의가 강하다는 정도로만 기재했다

이같은 전후의 기사를 종합해 보면, 본건 기사는 일반독자에 대해 원고가 일본적군의 국내활동을 지원한 혐의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을 뿐 원고가 일본적군의 국내활동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단정하는 인상까지는 주지 않고 있다.

본건 기사는 국제적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본적군의 최고간부인 丁谷이 1974년 9월의 이른바 '헤이그' 사건의 체포감금피의사건으로 국제적으로 수배되어, 20여년 동안 해외도피를 하다가 2000년 11월 8일 大阪 시내에서 체포된 중대사건과 관련, 乙山이 丁谷의 잠복생활을 도와주었다는 범인은피 피의사건에 관한 수사보도로, 丁谷의 장기간에 걸친 도피와

국내잠복실태 및 이를 가능하게 한 지원자와 지원조직의 존재까지도 포함하여,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중요성이 큰 사안이다.

그리고 원고는 본건 보도에 앞서 乙山에 대한 범인은피죄의 피의사실에 의해 수색을 받았으며 본건 허가증을 발부한 재판관에 의해, 원고로부터 압수되어야 할 물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에 관해 단정적으로 쓰지 않고 지원혐의가 있다는 한도 내에서 게재된 보도에 대해, 범죄행위 자체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당하지 않다.

따라서 본건에서 진실성의 증명대상이 되어야 할 사실은, '원고가 일본적군의 국내활동을 지원한 일'이 아니고 '본건 기사 게재당시 원고가 일본적군의 국내활동을 지원했다는 합리적인 혐의가 존재했다는 것'이어야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③이 점에 대해 피고 ○○신문사는 경찰이 주관적으로, 활동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갖고 있었다는 증명을 하면 진실성의 증명으로 충분할 것이며 위법성은 조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 기사와 같이 경찰이 특정인에 대해 범죄혐의를 갖고 있다는 형식으로 보도가 되었을 경우라도 일반독자들은 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문사의 이상과 같은 주장은 피보도자의 인격권 보호차원에서라도 상당성이 없으며 채용할 수 없다.

④진실성의 증명은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루어지면 충분할 것이다(최고재판소 1983년 10월 20일 제1소법정 판결). 그렇다면 본건 기사 중 진실성의 증명이 필요한 중요한 부분은, 원고에게 일본적군의 국내활동을 지원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부분이라고 해석된다.

⑤이에 따라 '본건 기사 게재 당시 원고가 일본적군의 국내활동을 지원했다는 합리적인 혐의가 존재했는지'에 관해 진실성이 증명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전기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기사가 ○○신문 석간에 게재된 2001년3월8일 당시, 大阪府 경찰이 소지한 자료에 의하면 ④△山등 일본적군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자금제공등의 방법으로 J'谷의 국내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던 혐의가 강하게 존재했다는 점, ⑤K그룹은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정치적활동도 하고 있는 조직이며 원고는 그 중심적 존재였다는 점, ⑥원고의 설립자인 己畑은 이전부터 J'谷과 의논을 거듭해 온 긴밀한 관계이며 원고대표자도 1999년6월 이후 己畑의 후계자로서 J'谷 과 회의를 갖는등 관계가 있었다는 혐의가 짙었다는 점, ⑦J'谷은 1999년경부터 원고등 K 그룹과 공동으로 정치적 활동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혐의가 있었다는 점, ⑧J'谷이 '동지들이 있을 곳'으로 지목한 H병원의 설립에는 원고 설립에 깊이 관여한 己畑이 중심적 역할을 했고 원고는 H병원의 환자를 받아들이는 등 원고와 H병원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 ⑨J'谷이 체포될 때 갖고 있던 현

금 1백만엔은 K그룹의 한 기업인 F식품 명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F식품 관여하에 건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건 기사가 게재된 2001년3월18일 당시 원고가 일본적군 및 J'谷과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가 J'谷에게 자금을 원조하는 등 국내활동을 지원했다는 합리적인 혐의가 존재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기사 게재 당시 원고가 일본적군의 국내활동을 지원했다는 합리적인 혐의가 존재했다'는 것은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상당하다.

이상과 같이 피고 ○○신문사에 의한 본건 기사의 게재는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고 있어 위법성이 없으므로, 본건 기사의 게재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다른 점에 대해 판단할 필요조차 없으며,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 처 : 『판례타임즈』 1144호 pp. 191~206.

번 역 :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 지역사회 상당수가 결핵감염원인 신청인의 신원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언론이 이를 공표했다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 불만신청내용

PCC는 한 여교사가 The News지 2001. 2. 15자 『학교 교사가 결핵 감염원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불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The News지는 한 지방 학교에서 학생들이 결핵에 감염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2월 13일자에 감염원인 학교 교사의 이름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불만 신청인은 The News지는 그녀의 동의없이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특히 자신이 언론사에 항의를 하고 PCC에 불만 신청을 제기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보도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불만 신청인은 건강문제로

보도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필요하게 거명하여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The News지는 학생들의 결핵감염은 지역사회에서 대단히 우려되는 문제로, 감염원이 6학년 담임교사 중 1명이라는 사실을 관계당국이 공식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불만 신청인은 6학년 담임교사로 당시 명가를 낸 상태였기 때문에 수많은 학부모들이 알고 있었으며, 언론에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밝힘으로써 많은 교사들이 오해에서 풀려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The News지는 첫째, 상당수의 지역 주민들이 그녀임을 알고 있었으며, 둘째 학교에 전염병을 퍼뜨린 그녀는 이에 공중 보건문제의 중심인물이기 때문에 성명을 공개한 것은 그녀의 사생활을 침

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불만 신청인은 학부모, 학생, 이웃 등이 그녀가 결핵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모든 지역 사회 사람들이 자신이 결핵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언론에 그녀의 이름이 보도됨으로써 좀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명백하며, 『6학년 교사』라는 표현이 기사에 삽입됨으로써 기사의 뉴스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평결

PCC는 언론사가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과 그녀의 신원이 이미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보도 기준에 근거해 판단했다.

불행하게도 불만 신청인은 지역사회에서 공중보건 문제의 중심인물이라는 사실은 명백했다. 위원회는 그녀가 학교 교사이고, 학생들에게 결핵을 감염시킨 장본인이

기 때문에 이는 사생활 문제에 국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문제는 곧 공공 토론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PCC는 공공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 고려, 그녀의 신원을 공표한 언론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약속할 것과, 사과문을 게재하고,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 평결

PCC는 기사에 게재된 정보가 법정에서 공개되었으므로,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과, 법원이 불만 신청인의 주소가 언론에 의해 공표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따라서 PCC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편집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가를 검토했다. 그 결과 PCC는 이 사건의 경우 편집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PCC는 관련정보가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할 경우,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생활 권리를 좀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 관련정보가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할 경우,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생활 권리를 좀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불만신청내용

PCC는 스코틀랜드의 한 교도관이 The Perthshire Advertiser지 2001년 2월 10일자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받아』 제하의 기사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불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의 기사는 불만 신청인의 자동차 사고 관련 소송을 기사화 하면서, 불만 신청인이 교도관으로 근무중이라는 사실과 함께, 자동차 번호, 집 주소 등을 보도했다.

불만 신청인은 이러한 정도의 신원 공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족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는 보도된 모든 신원 정보는 법정진술이나 판결문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는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사는 불만 신청

인에게 서한을 보내 사과했다.

불만 신청인은 자신의 신원 정보가 공개 법정에서 공표되었음을 인정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법정에 참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불만 신청인은 자신의 직업이 재소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자리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집 주소가 널리 알려진다면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언론사에 대해 앞으로 안전에 민감한 직업에 종사하는

## 언론사가 사망과 같은 슬픔과 관련된 기사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했으므로 불만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불만신청내용

PCC는 Irene Shubik 씨가 The

Wood and Vale지 2001년 3월 5일자 『유능한 신문기자 사망애도』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The Wood and Vale지는 위 기사에서 신문기자인 Andrew Dickson이 지나친 음주에 의한 알콜성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Dickson의 절친한 친구로 기사에 언급된 불만신청인은 그는 간암과 장질환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으며, 그의 사망에 대한 검시 보고서에는 추락에 의한 사고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불만 신청인은 Dickson 씨의 사망 기사를 정확한 취재를 하지 않고 보도했으며, 그가 알콜중독자임을 시사하거나 아주 쇠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 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자신이 검시관에게 자료를 제공했지만 보도되지 않았어야 할 세세한 내용들이 마치 불만 신청인이 언론에 직접 제보한 것처럼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 신청인은 기자들이 Dickson 씨의 사인이 알콜중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으며, 편집자 또한 이를 확인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사는 문제의 기사는 통신 기사를 전재한 것으로 통신기사는 알콜중독자임을 언급하고 있는 검시보고서와 검시관으로부터 직접 인용한 것으로, 언론

사는 그것을 보도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이를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는 Dickson 씨의 사망 기사를 보도하면서 제목을 붙이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그의 경력에 대한 많은 것을 기사화했다.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는 사과문 게재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불만 신청인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 평 결

PCC는 불만 신청인은 주로 보도실천강령 제5장 「슬픔과 충격 침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5장은 언론사가 슬픔과 관련된 기사

를 취재보도할 경우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검사와 같은 법률적인 절차를 보도할 권리가 언론사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PCC는 문제의 기사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보도했기 때문에, 슬픔에 젖어있는 불만 신청인에 대한 취재는 보도 윤리 강령 제5장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하여, PCC는 전체적으로 충분한 취재를 통해 Dickson 씨의 사망 관련 정보는 검시보고서에서 주로 인용한 것으로, 언론이 이를 보도할 권리가 있음은 보도 윤리 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

## 호주시례 1

### 문제의 보도사진은 불만신청인의 집에 대해 불필요한 주의를 끌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인 지역의회토론과 적절한 관계없다

호주신문평의회는 Mark Westfield 씨가 The Manly Daily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을 일부 지지했다.

Manly Daily지는 Westfield 씨 이웃인 David Murphy 씨의 주택개량

승인 중 사소한 부문에 대한 일부 수정 문제를 다룬 시의회 회의록 "두 시간에 걸친 당파적 토론"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 문제는 의회 도시계획에서 다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 Westfield 씨의 요구에 따라 시 의회에서 논의되어졌다고 보도했다. Westfield 씨와 그 이웃인 David Murphy 씨 간에는 주택의 증축과 구조변경 문제로 상당기간동안 다툼이 있어 왔으며, Murphy 씨는 자유당 소속으로 의원 입후보자였고, Westfield 씨는 그 반대당의 지지자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대해 Westfield 씨는 언론사는 문제의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해 자신에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보도 후 자신이 보낸 기사와 관련된 서한을 전제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는 도시 계획 문제와 관련이 없으며, 또한 자신이 지지한 정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보도와 함께 게재된 사진은 자신의 집이 Murphy 씨의 집을 지나치게 그늘지게 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The Manly Daily지는 문제의 기사는 지역 의회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미룬 채 사소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평의회는 문제의 보도 사진은 Westfield 씨의 집에 대해 불필요한 주의를 끌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회토론과 적절한 관계가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한 Westfield 씨의 불만을 수용했다. □

위 기사는 호주 무정부주의자 사회의 순수성에 대해 부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구체적이지 않은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며 불만을 신청했다. 또한 Herald Sun지는 자신이 편집자에게 보낸 기고문을 게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erald Sun지는 문제의 기사에는 모든 벨버튼 지역 무정부주의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정부주의자 언론협회」는 거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했을 뿐이라고 했다. 또한 Joseph Toscano 박사의 기고문은 해당 기자의 신뢰성을 비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게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문평의회는 언론사가 기고문을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평의회는 설사 언론사가 기고문을 편집했다 하여 불만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기고문을 대폭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게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 호주사례 2

### 기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자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기고문의 게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호주신문평의회는 「무정부주의자 언론협회」가 Herald Sun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erald Sun지는 2004년 2월 16일자에 『경찰 무정부 웹사이트 조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빅토리아

경찰이 다양한 무정부주의자 집단의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별히 「Brunswick Liberation Front」가 조사 대상집단의 하나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무정부주의자 언론협회」의 Joseph Toscano 박사는

# 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 여 ‘악의적 보도에 손해배상’ 추진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22일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폐해구제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행법상 국민 입장에서 아무리 억울한 언론보도 피해를 봐도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언론 피해구제법을 다음달까지 마련한 뒤 당론 확정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과 함께 처리할 계

획이다.

준비위원회가 마련 중인 언론폐해구제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함께 신속한 언론폐해 구제를 위해 현행 21일로 돼 있는 언론 중재기간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일정 액수 이내의 소송일 경우 언론폐해위가 손해배상소송까지 대행해주는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미국 41개주에서 시행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악의의 가해자’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명령,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내 법적 환경이 미국과 다르고 이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준비위원회 소속인 노동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며 “배상액의 한도 등은 시행령 등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내면 비용과 기간이 상당히 업무를 못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론폐해위원회가 소송을 대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언론폐해구제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인 언론단체 관계자들과도 만나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4. 7. 22.

### “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개혁국민행동(공동대표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국민행동)은 언론개혁입법청원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언론개혁 행보에 나섰다.

지난 9일 경기도 양주 MBC 문화공간에서 열린 국민행동 워크숍에서 안상운 변호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는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 제21조 제 4항의 명분조항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피해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그 이유로 △언론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피해자의

심적 부담 △언론보도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의 산재 △상당 및 소송대행 전문기관의 부재 △허위보도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태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단체의 부족 등을 들었다.

특히 전문기관의 부재와 관련해 안 변호사는 “언론폐해위원회가 있으나 직무상 반대당사자인 언론사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올 4월 개설돼 활동하고 있는 민간언론폐해상담센터도 상당에만 그칠 뿐 소송제기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안 변호사는 언론폐해위원회의 권한강화와 언론폐해상담소

신설 등을 담은 언론폐해구제법안을 내놓았다. 오는 8월 입법청원 될 이 법안은 △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인터넷언론에 의한 피해구제방안 마련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보호조항 신설 △선거관련 보도에 대한 중재절차 특칙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예방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쪽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허위보도 반복과 확산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디어오늘 2004. 7. 14.

## 전 국정원간부 ‘한빛은행 사건’ 손해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25일 국민의 정부 시절 이른바 ‘한빛은행 대출의혹 사건’과 관련,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정보원 전 간부 S씨가 당시 민주당 서영훈 대표, 김욱두 의원 등을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대표 등의 발언과 논평에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모임이 한나라당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 등 명예훼손적 사실이 적시돼 있어 해당 회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언과 논평이 한나라당과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이뤄진 점, 명예 훼손적인 사실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

현된 점 등을 고려해서 전 대표 등은 각각 1천5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주당은 당시 논평 등을 통해 ‘이운영 사건은 수배중인 범법자와 사실공작팀을 배후조종해 국법질서를 문란시킨 정치공작’, ‘정보부에서 공작하던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고’, ‘한나라당이 조종 중인 전직 안기부원들의 모임’ 등으로 사건을 표현했고 S씨는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압 수사와 피의사실 공포를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한빛은행 대출의혹 사건은 2000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신보 지점장 이운영 씨가 ‘모 업체의 신

용보증금액 15억원 증액 청탁을 거절해 사직동참 내사를 받게됐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진 뒤 청문회로까지 이어졌다.

S씨는 자신의 대화 동문 몇명과 함께 대학 후배인 이씨의 기자회견을 주선하는 등 이씨를 도와 주면서 이름이 오르내렸다.

재판부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더라도 표현 취지에 비춰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만 있으면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2004. 6. 25.

## 만두제조협회, 방송3사 언론중재위 제소…정정보도 요청

한국만두제조협회(회장 김광철) 소속 200여개 만두제조업체들은 ‘만두 파동’과 관련해 7일 KBS MBC SBS 등 방송3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른바 ‘쓰레기만두’ 파동이 보도된 지난달 6일 이후 한달여 동안 5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입고 수출도 격감했다”며 “조만간 일부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추가 제소하고, 이들과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대해 민

형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광철 회장은 “실제로 불량만두소를 납품받은 업체는 전체 만두제조업체의 2.3%에 불과한데도 경찰이 70.80%의 업체가 납품받았다고 브리핑을 하면서 파문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일부 언론도 불량만두소의 유해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쓰레기만두’라는 용어를 마구잡이로 사용해 만두파동을 불렀다”고 덧붙였다.

다.

이에 앞서 으뜸농산 등 6개 단무지 제조업체로 구성된 한국단무지제조업체(회장 오정호)도 6일 “KBS 등 방송3사가 자투리 단무지가 아닌 쓰레기 단무지로 만두소를 만드는 것처럼 왜곡 보도해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면서 방송3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동아일보 2004. 7. 8.

## “‘한인옥 10억수수설’ 보도, 1억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7일 한나라당이 ‘한인옥 씨 10억 수수설’과 관련, 이OO 전 기양건설 상무와 시사저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1억원을 배상하되 이쪽 5천만원은 시사저널측이 함께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기사는

이회장 후보와 한인옥 씨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중요한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의 명예도 훼손했다”며 “기사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진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씨의 주장에만 의존해 단정적으로 보도해 위법성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11월 시사저널과의 인

터뷰에서 “기양건설이 신양촌 재개발사업으로 만든 비자금 중 10억원이 한인옥 씨에게 전달됐다”고 밝힌 내용이 ‘한인옥 10억원 받았나’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으며 이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04. 7. 7.

## 청와대, SBS·문화일보 상대 정정보도 신청

청와대는 지난 19일 노무현 대통령 명의로 <SBS>와 <문화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청와대브리핑>이 전했다. 특히 <문화일보>의 경우 사실이 청와대의 언론중재 청구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청와대브리핑> 21일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북한이 지난해 3월 남북정상회담을 공식 제의했다는 <SBS> 3일자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최소한 공식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오보"라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는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비처) 설치와 관련, "특별감사제 공약 변질과 고비처 독립성 상실 등으로 보도한 <문화일보>의 5월 25일자 사실도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와 별

도로 공비처 신설을 따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 "(공비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소속으로 설치기로 한 것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단정한 것 역시 잘못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내언론 담당 비서실 관계자는 "그동안 사실, 칼럼 등에서 왜곡보도를 했다라도 언론자유를 고려해 법적 대응은 자제했는데 이번 문화일보 사실의 경우 여러 군데서 사실이 틀린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에 중재청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SBS는 지난 3일 <8시 뉴스>에서 「북한, 지난해 3월 남북 정상회담 제의」라는 제목의 특기사를 내보냈다. SBS는 이 기사에서 "지난해 3월 말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면서 "회담 장소와 시기는 남북 결정에 따르겠다는 공

식 의사를 전달해왔으나 우리 정부가 논의 끝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당시 이를 단독 취재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 25일 「'부방위 소속 공비처'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사실에서 "대통령이 '부방위' 산하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것은 2002 대선 당시 권력형 부패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감사제를 상설화하겠다던 공약을 대통령 소속 위원회 산하의 사정기구 설치로 변질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화일보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및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없고, '제2의 검찰'과 다를 바 없어 반부패 사정의지 자체를 왜곡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2004. 6. 21.

## 전여옥 대변인, 오마이뉴스 상대 5억 손해소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31일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와 관련해 표절 의혹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모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 대변인은 소장에서 "비방 목적의 허위보도, 허위사실 적시로 도덕성과 순수성, 작가로서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일본은 없다」가 자신의 작품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주장이 담긴 재일 르포작가 유도 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는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전씨가 반론 인터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방침"

이라고 밝혔지만 전 대변인측은 "생색 내기식 입장 표명"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93년 출판된 「일본은 없다」는 당시 KBS 도쿄특파원으로 근무하던 전 대변인이 펴낸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며 화제를 모았다.

연합뉴스 2004. 8. 31.

## 민언련 본사상대 손해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한순 판사는 10일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이 자신들이 발표한 조선일보 규탄 결의문 및 성명서 등을 조선일보사가 조선닷컴 홈페이지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와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민언련측에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지털조선일보가 조선일보 규탄 전국대회 참석자 명의로 결의문과 민언련 명의로 성명서를 그대로 게재했다고 해서 민언련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성명서·결의문·선언

문 등은 그 제목이나 내용에 비취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속성상 공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게재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4. 6. 11.

## ‘김훈중위 사망사건’ 오보 “언론사 손해책임 없다”

1998년 ‘김훈 중위 사망사건’ 관련, 당시 JSA(관문점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부소대장 김모 중사를 유력한 살해용의자로 잘못 보도한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公人)이 아니더라도 공적인 관심사에 개입된 개인이라면 인격·명예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일부 사실관계 잘못을 근거로 언론보도에 대해 마구잡이로 중재 및 손해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최근 관행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선을 그은 것으로, 향후 비슷한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30일 김중사와 그 가족들이 “미확인 추측 보도 때문에 ‘북한 지령을 받은 상관 살해범’으로 몰렸다”며 예음문화재단(시사저널의 전 발행사)을 상대로 낸 1억4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원고의 명예

를 훼손한 점과 진실한 보도가 아니었던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JSA 내의 첫 장교 사망 사건이었고 사망 원인에 대한 유족 및 국민적 의혹이 컸던 만큼 공익성이 있는 점, 취재기자가 군 당국과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취재한 결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사건수사의 경우 수사기관이 아니면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이런 경우 이를 과해치고 우리 사회에 의문을 던지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훈 중위는 98년 2월 JSA 지하병커내에서 권총 발사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김 중사는 당시 사망현장 수습을 지휘했으며 수사결과 97년 여름부터 야간경계 근무 도중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 병사들과 고기를 같이 먹는다는 북한 맥주·인삼주 등을 받아들인 사실 등이 밝혀져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당시 시사저널 등은 김 중사의 기이한 행적과 김훈 중위의 사망을 연관지어 “김 중사가 북의 지령을 받고 김중위를 타살했다”는 워양스의 보도를 했다.

이후 김 중사는 김 중위 사망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실명을 거론하며 보도한 경향신문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소송을 내 2000년 7월 총 1억7천5백 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낸 바 있다.

단국대 문재완 교수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일일이 배상토록 함으로써 진실된 기사만을 쓰게 하기보다는 공공 토론을 통해 여론 시장에서 여과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사안은 명예권이 훼손된 한 개인과 언론 사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과 국가기관 간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4. 8. 31.

## “이승복사건 오보주장, 명예훼손 인정돼나 악의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16일 조선일보사가 “이승복 사건 관련 기사를 오보라고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주연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과 김종배 미디어오늘 편집장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전사회와 기사 등을 통해 원고가 언론사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게 해 명예훼손한 점이 인정되고 조선일보 기자들이 당시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취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승복 사건은 분단국가 구성원인 우리 국민 대다수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으로 공익 내지 공적 영역에 관한 사항이며 상식적으로 승복군이 정말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어 피고들의 행동이 악의적인 것이 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언론자유 범위 내 있을 수 있는 의혹 제기”라고 판시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손해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68년 12월 11일자 사회면에 실은 이승복군 관련 기사는 사실보도인데도 김주연 씨는 98년 8~9월 ‘오보 전사회’에 전사했고 김종배 씨도 ‘미디어 오늘’ 등에 ‘사건현장 취재도 않은 작문기사’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99년 7월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 없이 김주연 씨는 징역 6월, 김종배 씨는 징역 10월에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2004. 6. 16.

## “인신공격은 언론 면책대상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복환 판사는 15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기사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마이뉴스와 기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인격이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언론 비판의 자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를 통해 '분열적 정신상태'

'야당이 집권하면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색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해 명예훼손을 자초한 면도 있고 피고가 기사를 쓴 것도 원고의 광고에 대한 분노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피고 역시 기사작성시 명예훼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원은 2002년 8월 10 일간지에 '5.18은 좌익과 북측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냈다가 오마이뉴스가 '지만원과 북측'이란 제목의 기사를 쓰자 소송을 냈으며 5.18 광주민중항쟁 재단체협의회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2004. 6. 15.

## “언론이 검찰 공식발언 진위 확인할 책임 없어”

수사담당 검사의 공식발언이 실제적 진실과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믿고 보도한 언론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최종갑 부장판사)는 15일 박모(51) 전 충북육전경찰서장이 일부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재원이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할 검사들이었다 소정의 발표 형식을 따른 점 등을 참작해

보던 그 진위여부에 관해 별도로 조사·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게재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서장의 실명이 보도된 것과 관련, "공인의 경우 범죄 혐의가 누구인지가 공적인 관심이 될 수 있고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하면 사실상 범죄보도를 하지 못하게 해 국민의 안전리를 대량 충족시켜주는 언론의 공적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서장은 충남경찰청 방법과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부터 2년간 부하직원이 오락실 업주들에게 받은 뇌물 총 3천45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23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2개 언론사와 6명의 기자 및 프로듀서 등을 상대로 총 10억5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4. 7. 15.

## 노 대통령 언론사 상대 손해소 취하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용인 왕 위장 매매거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한국,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4개 언론사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고 문래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당초 대통령 임기 중에 소송 진행할 경우 공정성이 의심될 우려가 있어 법원에 대통령 임기 중 소송 징지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았다"며 "이번 소송이 관련관계 정상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2004. 6. 22.

## 김재홍의원 조선일보 정정보도 요청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8일 자신이 전남 병화방송과 인터뷰에서 '부실 언론사는 비리 때문에 유지된다'고 언급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며 조선일보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병화방송 앵커가 '우리나라 신문사들 수가 너무 많은게 아니다. 신문사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해 '그런 시각이 있다'고 답변한 것일 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한

다는 발언이 아니었다"면서 "정정보도 등 적절한 결과가 보이지 않을 경우 언론과해구에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4. 7. 8.

### 청와대비서관 8명, <주간동아> 상대 정정·손배 청구

청와대 소속 비서관 8명이 자신들의 급여·활동비 보도가 왜곡했다며 <주간동아>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비서관 1인당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이다.

《청와대브리핑》 14일자에 따르면 이윤철 법무비서관 등 청와대 소속 1급 비서관 8명은 <주간동아> 6월 3일자 「대통령 비서관 급여·활동비 월 1천만원 넘어」 제하 기사와 관련해 김희준 동아일보 사장, 김OO 주간동아 편집장, 김OO 기사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지난 11일 청구했다.

이들 비서관들은 소장을 통해 “대통령

1급 비서관의 경우 국가직 1급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 생활 규정에 따라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같이 급여를 지급받고, 월 총수입은 5백만원 내외”라며 “<주간동아> 기사와 같이 급여에 비공기는 예수의 특별활동비까지 받아 경회직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보도는 왜곡이고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비서관들은 “대통령 1급 비서관들에게는 법안번호가 적절하나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변상금이 지나지 않는다”며 “한도금액도 대부분 월 100만원에 불과하고 별도의 특별활동비는 받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간동아> 기사는 청와대통령 비서관들이 급여 외에 특별활동비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주간동아> 기사와 관련 해당 기자에게 “비공립 비서관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3급 이상급 이하 공무원에 속용되는 연봉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확인해 준 바 있다고 《청와대브리핑》을 전했다.

오마이뉴스 2004. 6. 15.

### “정당한 피의사실 공표, 국가 배상책임”

경찰이 충분한 증거없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성급하게 공표했다면 국가는 피의자의 명예훼손 등 피해에 대해 보상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3일 고교생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주부 이모 씨가 “경찰이 하지도 않은 원조교제를 했다고 언론에 공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서 “피고는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발표 범위는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된다”며 “표현 또한 공식질책에 따라 추측이나 예단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경찰은 원조교제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 보장

수사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언론에 수사결과를 빨리 알릴 욕심으로 성급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 자녀를 둔 주부인 이씨는 2000년 12월 고교생과 간통 및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지만 원조교제 주부로 언론에 보도됐으나 검찰에서 원조교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2004. 6. 23.

### 경찰, 문화일보에 정정보도 요청

경찰청은 언론의 ‘명동1부’ 엠바고(보도시점 제한)와 경찰의 수사관행률 비판한 문화일보 9일자 보도와 관련, 문화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이 정정보도를 요청한 부분은 문화일보 기사 중 ‘경찰수사가 시작된 2월말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00여건 동안 국민들의 알권리나 건강권을 침해했다’와 ‘이번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경찰청은 민원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경찰청은 정정보도 요청문에서 “2월말은 수사를 착수한 시점이며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거나 일반 국민들에게 통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발행 민부소를 납품받은 민부·계관업체들이 ‘불량’ 민부소임을 몰랐다. 민부소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

해 사실관계의 정확화 확인이 “필요하다”고 엠바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단독 관련부문에 대해서는 “엠바고가 실시된 4월 27일부터 사실 관계가 있던 6월 4일까지 경찰청 부대위원장 부총화준에서 (회, 직원숙박비) 1회 단위로 민부 식사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4. 6. 11.

### 직원집체연수

위원회는 6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충북 제천의 청동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직원 집체연수교육을 실시했다.



### 정기세미나 개최

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대전 유성호텔에서 『‘언론피해구제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경승 변호사가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류지태 고령대 법대 교수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과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각각 발표했으며 사회

는 김상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서울제3중재부장)가 맡았다.



언론계와 학계, 중재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위원회가 성안한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이 국민 권익과 언론자유 간의 조화와 균형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각계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상반기 내부 회계 감사

200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내부 회계감사가 7월 2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최광일(서울제3중재위원), 임경숙(경남중재위원) 감사는 제반 증빙서류와 예산집행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실행예산 모두 적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었으며, 물품 및 사무실 예치보증금 등의 자산도 적정하게 관리되었다』고 밝혔다.

### 대구지방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9월 17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 서 대구지역 각계 인사 70여명이 참석하 가 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수 위원(변호 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 기성 위원(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인 터넷 시대의 언론영역과 언론중재"라는 주제 논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인터넷으로 언 론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언론중재의 영역 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 다.



### 충북 언론사대표 초청 간담회

박영식 위원장은 7월 8일 충북 청주에서 지 역 언론사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 다. 이 자리에는 지현정 충청일보 사장, 박성규 중

부매일 사장, 유종근 KBS 청주방송총국장, 고창 근 청주MBC 사장 등 언론사 대표와 충북중재위 원들이 참석, 언론피해의 예방과 구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사법연수생 전문분야 실무수습

제34기 사법연수생 2명은 7월 5일부터 16일까 지 12일간 위원회에서 전문분야 실무수습 과정을 밟았다. 연수생들은 언론피해 상담 업무와 중재 심리 등을 참관했으며, 언론중재제도 및 언론피

해구제법 관련 교육을 받았다. 이는 사법연수원 이 연수생들의 전문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시 행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위원회에 의뢰하여 이 뒀다.

### 지방사무소 직원 인사

위원회는 9월 1일자로 광주사무소의 조준원 소 장 직무대리를 소장(3급/차장)으로 승진 발령했 으며, 9월 15일자로 광주사무소 이영호 직원을

대전사무소로, 대전사무소 이진희 직원을 전북사 무소로 각각 전보 발령했다.

- 강상규 (2001, 6월), 방송의 자유와 방송 소송: 방송프로그램의 분쟁사례와 예방, 방송문화 제276호, 2-5.
- 강태영 (2004), 텔레비전 보도와 공정성 기준, 한국방송학회 주최 '텔레비전 저널리즘의 공정성과 정치' 세미나 발제 논문, 2001. 4. 30.
- 권발우 (2001, 6월), 17대 국회의 언론개혁: 쟁점, 여론 통과절 규제의 문제점, 신문과 방송, 제102호, 22-24.
- 김경호 (2004), 의견표현과 사실적시의 이분법적 접근,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정치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세미나 발제논문, 2001. 5. 14.
- (2001), 인터넷 통제의 선: 명예에 관한 의견사예 분석,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주최 '합리적인 독자불만처리제도 운영방안' 세미나 발제논문, 2001. 5. 14.
- (2001, 6월),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조장권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수사기관의 책임은 중점으로서, 언론과 사회 12(2), 68-120.
- 김경호 (2001, 6월), 17대 국회의 언론개혁: '미디어산업조성법' 배경과 바람직한 방향, 신문과 방송, 제102호, 27-30.
- 김도원 (2004), 새로운 방송환경과 민영방송의 공익성 제고방안 방안, 한국방송학회·한국민영방송협회 주최 '방송법 개정방향과 민영방송의 과제' 세미나 발제 논문, 2001. 6. 11.
- 김장훈 (2004), 방송법시행령 중 개정방향 제정규칙 중 중요항목, 방송위원회 주최 '방송법시행령 중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 발제논문 2001. 5. 27.
- (2001, 6월), 방송법 시행령안 : 방송법 시행령 제정할 무언이 담겼나, 방송문화 제276호, 2-5.
- 김장희 (2001, 6월), 방송의 자유와 방송 소송: 방송의 자유와 인격권, 방송문화 제276호, 11-19.
- 김승우 (2001, 6월), 17대 국회의 언론개혁: 쟁점, 언론사 소유자분 제한해야, 신문과 방송, 제102호, 17-19.
- 김영호 (2001), 신문 심의: 선거기사 심의에서 나타난 문제점, 한국언론재단 주최 '2004 총선보도 평가와 개선방향' 세미나 발제논문, 2001. 4. 30-5. 1.
- (2001, 여름), 신문개혁을 위한 법 제정의 정당성 - 소유구조 분산 방해 편집권 독립 확보해야, 열린미디어 열린사회, 통권 제10호, 12-23.
- 김재영 (2001), 인터넷 성 표현물의 규제 법리 분석,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4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5. 14.
- 김재원 (2001, 8월), 패러디의 한계 -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여지없이야, 신문과 방송, 제101호, 60-63.
- 김장룡 (2001), 방송 심의: 17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언론재단 주최 '2004 총선보도 평가와 개선방향' 세미나 발제논문, 2001. 4. 30-5. 1.
- 김주형 (2001, 여름), 인터넷 선거보도의 문제점과 법제 개선, 언론중재, 통권 제9호, 29-30.
- 유한호 (2001), 텔레비전 윤리와 총선보도, 한국방송학회 주최 '텔레비전 저널리즘의 공정성과 정치' 세미나 발제논문, 2001. 4. 30.
- 문재원 (2001), 정치패러디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정치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세미나 발제논문, 2001. 5. 14.
- (2001, 6월), 17대 국회의 언론개혁: 쟁점, 언론사 소유자분 제한 반대, 신문과 방송, 제102호, 64-67.
- 박선영 (2001), 인터넷언론의 개정 선거법에 미친 영향,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4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5. 14.
- 박성희 (2001), 언론의 적분성과 인터넷 윤리, 관혼저널, 통권 제9호, 239-246.
- 상진재 (2001), 인터넷언론상의 저작권 고찰,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4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 5, 11.  
(2001, 여름), 인터넷상의 전기보도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언론중재, 통권 제9호, 31-41.
- 전상범 (2001), 패러디와 네티즌의 정치참여,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정치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세미나 발제논문, 2001, 6, 10.
- 안상훈 (2001, 여름), 단일한 언론피해구제법 제정해야, 열린미디어얼라이언스, 통권 제10호, 41-51.
- 임규호 (2001, 여름), 설리비판결과 미국의 언론자유, 언론중재, 통권 제9호, 60-73.
- 오준근 (2001), 방송심의규정 개정서안의 체계와 주요 쟁점: 총칙 및 심의절차를 중심으로, 방송위원회 주관 '방송심의규정 개정서안 공청회' 발제논문, 2001, 5, 19.
- 유영식 (2001), 텔레비전 폭력물의 현실감 수준에 따른 시청자의 비행경험 및 현실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4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5, 14.
- 유선영 (2001, 8월), 지역신문지원법 논의에 대한 생각과 제언, 신문과 방송, 제104호, 120-125.
- 이상기 (2001, 6월), 17대 국회와 언론개혁: 쟁점, 여론, 특과심, 규제, 당위성, 신문과 방송, 제102호, 25-26.
- 이용강 (2001), 신문개혁 입법의 쟁점과 과제, 언론광장 주최 '신문개혁 입법, 쟁점과 과제' 포럼 발제 논문, 2001, 5, 27.  
(2001, 여름), 신문개혁입법의 쟁점과 과제, 열린미디어얼라이언스, 통권 제10호, 60-79.
- 이재진 (2001), 인터넷언론과 일각위의 허안과 해안방안,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4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5, 14.  
(2001), 직렬회습 영악에 있어서의 알권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2004 봄철 학술대회 발제논문, 2001, 5, 22.
- 이창현 (2001, 7월), 방송심의규정 개정과 그 의미, 신문과 방송, 제103호, 128-131.
- 장철익 (2001, 여름),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하), 언론중재, 통권 제9호, 45-59.
- 선운진 (2001, 6월),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점검, 방송문화 제276호, 21-27.
- 성영구 (2001, 여름), 언론중재에 대한 부가적 조사 결과, 언론중재, 통권 제9호, 80-87.
- 정용준 (2001), 새로운 경쟁구도의 방송관련 법규의 개정 방향, 한국방송학회·한국민영방송협회 주최 '방송법 개정방향과 민영방송의 과제' 세미나 발제 논문, 2001, 5, 11.  
(2001, 7월), 개정방송법과 시행령 개정안, 신문과 방송, 제102호, 124-127.
- 조규승 (2001, 6월), 방송법 시행령안: 방송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방송문화 제276호, 6-9.
- 진원호 (2001, 여름), 신문사회와 정치권, '신문법 제정' 6월 국회 포럼, 열린미디어얼라이언스, 통권 제10호, 52-59.
- 최양복 (2001, 여름), 언론보도와 마켓팅주의 일거위, 언론중재, 통권 제9호, 66-73.
- 최영재·홍성구 (2001),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공정성,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4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5, 11.
- 황상길 (2001, 1월), 개정 방송법 점검, 방송문화 제276호, 22-25.
- 황용석 (2001), 성격 대안으로서 인터넷언론의 개인화와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4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5, 11.  
(2001, 여름), 인터넷상의 전기보도, 현황과 전망, 언론중재, 통권 제9호, 1-19.
- Jerry Kang (2001), 사이버스페이스 프라이버시, 조판 번역, 진한도서.

# On-Line 중계상당실



## 홈페이지자료를 동의 없이...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한마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모든 자료를 퍼갔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 조치를 받으며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지요.

혹시 몰라해 지는 경우도 있는지요. 말만 하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한마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모든 자료를 퍼갔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 조치를 받으며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지요.



## 동의 없는 방송은...

얼마 전 개호 사단법인관계에 대하여 문자편지를 한다고 기사가 잠일취재의 횡단후 제의 불소리를 폭음하여 동의도 없을 뿐 아니라 부분적인 측면만 편향하여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동의 없이 복음 방송한 부분과 편지 등 부분적인 내용만 방송하여 왜곡한 부분과 편지서 발송사유, 정경 보도가 가능한지 알고 소송합니다. 그리고 복음내용을 동의 없이 방송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한마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모든 자료를 퍼갔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 조치를 받으며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한마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모든 자료를 퍼갔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 조치를 받으며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지요.



##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대처방안 문의

지난 8월 4일자 각종 언론에서 대서특필한,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마을 폐광산 관련 언론주린이 "이타이타이" 병이란 질병에 걸린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연합뉴스(8월 3일) 및 각 언론(방송사는 지난 6월초 사수질환경연구소가 병산마을 주민 200여명 중 7명을 혈액검사, 소변검사, 주민 건강말을 실시 한 결과, 중금속(카드뮴) 오염으로 인한 질병인 "이타이타이" 이라고 연합뉴스를 하여 고성군민들은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 언론(방송)사에는 노환으로 인하여 유모차를 보조로 다니는 노인들을 마치 "이타이타이" 환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이에 고성군민들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경남의 모 일간지 6월 4일자 1면 기사에서는 "오염된 쌀 먹은 탓"이라고 보도를 하여 해당마을 지역 쌀은 물론 고성에서 생산되는 전체 쌀과 농수축산물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공식 결과도 발표하기 전에 "펜"이라는 무기로 우리 고성군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언론(방송)사의 보도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건을 바랍니다.





**Q** 정정보도와 "바로잡습니다"의 차이는?

지난 2004. 6. 18(금) 00월보 19면에 실린 "스백억대 이권 소풍물 사업 경찰 청탁 수사 의혹"이라는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며, 2차 심리결과 정정보도를 하라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이 정정보도라는 개념에 속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애초에 엄연히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면 제목 또한 정정보도로 게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본요하신 내용 중 정정보도 기정사실이라는 말보다는 정확히 바로잡습니다라고 해서 정정보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정보도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며, 기정사실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사실에 대한 언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 기자가 실정사실이라고 인정하는 한다면 당연히 정정보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언론이라는 '바로잡습니다'가 아니라 보도내용이 정확함을 인정할 때로는 볼 수 있는데,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할 것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Q** 민사소송 절차를 알려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시는 아버님께서 지방신문의 허위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해당 언론사에서는 명예훼손한 점을 인정해 정정보도 형식의 "바로잡습니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사의 행동은 민법 제29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송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질문하신 내용은 민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에 관한 것으로,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은 후에도 피해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에 관한 것으로,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은 후에도 피해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에 관한 것으로,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은 후에도 피해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에 관한 것으로,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은 후에도 피해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에 관한 것으로,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은 후에도 피해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에 관한 것으로,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은 후에도 피해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난폭한 언론기자에 대한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전화가 와서, 받으니, 다짜고짜 반말하면서 사장과 인터뷰해야 하니깐, 바꿔 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출장중이므로, 안 계사다고 하니깐 끊더군요. 그러더니 다시 전화하더니, 사장에게 전달했느냐 하면서, 뚝했다고 하니깐 갖은 욕설을 퍼붓더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A** 해당 언론기자에 대한 잘못된 언행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정정보도나 헌법보도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요하신 내용 중 기자기자의 욕설 등이 어떤 법적 구상방안으로는 형사상(폭설 등의 혐의가 '방화'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형법에 의해, 민사상(욕설 상도였다면 '명예훼손죄')에 의해 민사상(소송)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의 혐의가 민사상(불법행위)으로 정당한 민사상(소송) 제정 절차에 의해, 민사상(소송)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에서 언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A** 해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행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정정보도나 헌법보도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요하신 내용 중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용어적으로 언론기자의 보도내용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사실과 관계 없이 기정사실 기재로써 명예를 침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보활동에서 언론을 역활에 대한 문의는 홍보장부가 신장 및 홍보하는 것과 관련됨을 기호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http://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 \*중재신청의 종류

#####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

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을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

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지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

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1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직장을 가진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자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

도 또는 정정보도등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직변 기타 상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직합하지 않은 원격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함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1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관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의2(불복절차)** ① 반론보

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절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

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

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 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방 송 법

**제어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 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30일(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재제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제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재제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혐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관자"라 한다)가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관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Netscape: 언론중재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뒤로 앞으로 다시 읽기 홈 검색 안내 이미지 인쇄 보안 중지

찾아가기: <http://www.pac.or.kr/>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상담: (02) 397-3000,  
3010, 3100  
<http://www.pac.or.kr>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서 전문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는 언론중재위원회 내에 설치된 언론보도 관련 종합법률상담기구입니다.
- 중재신청 상담은 물론 명예훼손에 의한 민형사상 법률 상담도 해 드립니다.
- 방문·전화·우편·이메일 상담뿐 아니라 실시간 인터넷 상담도 가능합니다.
- 언론사나 기업, 사회단체가 원할 경우 언론피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중재부·상담 (02)397-3000, 대표(02)397-3114,

경기중재부:(031)211-9027, 강원중재부:(033)255-2878,

부산중재부:(051)759-7083,

충북중재부:(043)286-8083,

대구중재부:(053)763-0020,

전북중재부:(063)288-0010,

광주중재부:(062)676-0360,

경남중재부:(055)263-1787,

대전중재부:(042)525-0778

제주중재부:(064)722-3328